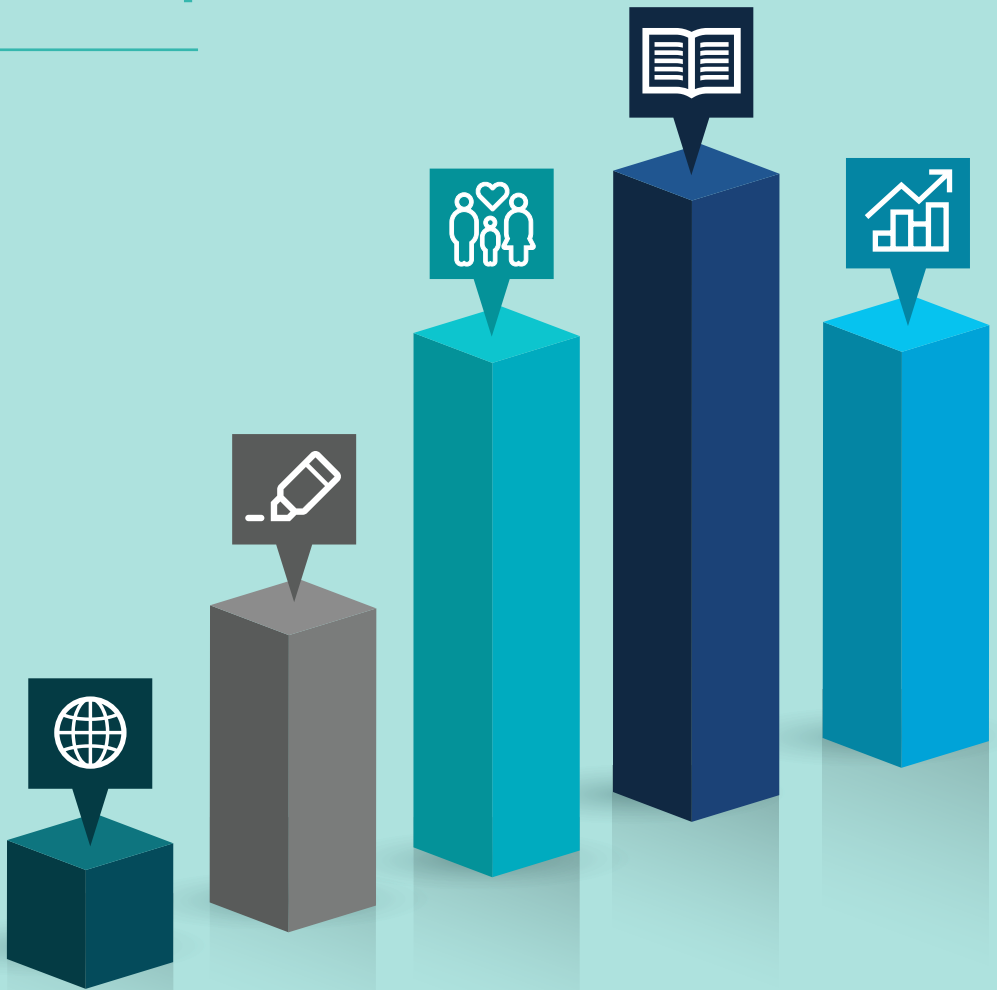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257-10

2016

가정위탁보호 현황 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257-10

2016

가정위탁보호 현황 보고서



아동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동행. 지금, 우리의 역할이며, 책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조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는 법에 의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아동보호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역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가정위탁보호사유는 이혼이 31.7%, 별거 및 가출이 26.6%,
부나 모의 사망이 24.3%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보호필요아동의 발생사유로는
학대로 인한 사유가 33.6%, 이혼 19.7%, 미혼모·부의 아동 18.7%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에 명시된 통계를 근거로 보호필요아동이 보다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아동보호에 있어서 최선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민관이 협력하여 찾아내고,
이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계속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아동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체계와 서비스를 직시하고 아동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동행하는 일.
지금, 우리의 역할이며, 책임입니다.

2017년 7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정 필 현

1. 서론	11
1) 주요내용	11
2) 자료수집	14
3) 자료분석	14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17
1) 보호필요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17
3. 가정위탁보호 아동	29
1) 가정위탁보호 아동	29
2) 신규위탁아동	43
3) 보호연장아동	51
4)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56
4. 위탁가정	73
1) 위탁가정	73
2) 신규위탁가정	84
5. 가정위탁 서비스 현황	95
1) 지원서비스	95
2) 경제적 서비스	97
6. 가정위탁 교육 및 홍보 현황	103
1) 교육	103
2) 홍보	105
7.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109
1) 상담원의 업무량	109
8. 결론 및 제언	115
1) 위탁아동	115
2) 위탁가정	118
3) 가정위탁 서비스	120
4) 가정위탁 교육 및 홍보	122
5)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량	123

표 2-1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17
표 2-2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19
표 2-3	지역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21
표 2-4	지역별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24
표 3-1	연도별 위탁아동 수	29
표 3-2	지역센터별 위탁아동 성별 및 연령	31
표 3-3	가정위탁보호사유	37
표 3-4	위탁아동 형제배치	37
표 3-5	위탁보호결정 시 위탁아동의 성별 및 연령	39
표 3-6	위탁유형별 위탁기간	40
표 3-7	가정위탁보호사유별 위탁기간	42
표 3-8	연도별 신규위탁아동 수	43
표 3-9	지역센터별 신규위탁아동 수	44
표 3-10	신규위탁아동 성별 및 연령	46
표 3-11	신규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사유	47
표 3-12	신규위탁아동 형제배치	49
표 3-13	학대피해아동의 신규위탁	50
표 3-14	지역센터별 보호연장아동 수	51
표 3-15	보호연장아동 성별 및 연령	52
표 3-16	보호연장사유	53
표 3-17	보호연장 배치연도 및 기간	54
표 3-18	신규보호연장아동 보호연장사유	54
표 3-19	신규보호연장아동 위탁유형별 위탁기간	55
표 3-20	연도별 종결아동 수	56
표 3-21	지역센터별 종결아동 수	58
표 3-22	종결아동 성별 및 연령	59
표 3-23	가정위탁종결사유	61
표 3-24	종결사유에 따른 성별 및 연령	62
표 3-25	종결사유별 위탁사유	63
표 3-26	종결아동유형별 위탁기간	64
표 3-27	종결사유별 위탁기간	66
표 3-28	종결 후 배치	67
표 3-29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성별 및 연령	68
표 3-30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위탁사유	69

표 4-1	연도별 위탁가정 수	73
표 4-2	지역센터별 위탁가정 수	75
표 4-3	위탁부모 연령	76
표 4-4	위탁부모 직업	77
표 4-5	위탁부모 학력	78
표 4-6	위탁가정 소득	79
표 4-7	위탁가정 종교	80
표 4-8	위탁가정 참여 동기	81
표 4-9	종결위탁가정 종결사유	83
표 4-10	지역센터별 신규위탁가정 수	84
표 4-11	신규위탁부모 연령	85
표 4-12	신규위탁부모 직업	87
표 4-13	신규위탁부모 학력	88
표 4-14	신규위탁가정 소득	89
표 4-15	신규위탁가정 종교	90
표 4-16	신규위탁가정 참여 동기	91
표 5-1	지역센터별 지원서비스	95
표 5-2	지역센터별 신규위탁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97
표 5-3	지역별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 전세임대 지원	98
표 5-4	지역별 가정위탁보호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 현황	99
표 6-1	지역센터별 교육 현황	103
표 6-2	지역센터별 홍보 현황	105
표 7-1	지역센터별 지원서비스·교육·홍보 업무량	109
표 7-2	지역센터별 상담원 1인당 업무량	110

그림 2-1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18
그림 2-2	최근 5년간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20
그림 2-3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22
그림 2-4	지역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가정보호, 시설입소 비교)	23
그림 2-5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25
그림 3-1	연도별 위탁아동 수	30
그림 3-2	위탁아동 연령	35
그림 3-3	가정위탁보호사유	36
그림 3-4	위탁아동 형제배치	38
그림 3-5	위탁보호결정 시 위탁아동의 연령	40
그림 3-6	위탁유형별 위탁기간	41
그림 3-7	연도별 신규위탁아동 수	44
그림 3-8	신규위탁아동 연령	46
그림 3-9	신규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사유	48
그림 3-10	신규위탁아동 형제배치	49
그림 3-11	연도별 종결아동 수	57
그림 3-12	종결아동 연령	59
그림 3-13	가정위탁종결사유	61
그림 3-14	종결아동유형별 위탁기간	64
그림 3-15	종결 후 배치	67
그림 4-1	연도별 위탁가정 수	74
그림 4-2	위탁부모 연령	76
그림 4-3	위탁부모 학력	78
그림 4-4	위탁가정 소득	79
그림 4-5	위탁가정 종교	80
그림 4-6	위탁가정 참여 동기	82
그림 4-7	종결위탁가정 종결사유	83
그림 4-8	신규위탁부모 연령	86
그림 4-9	신규위탁부모 학력	88
그림 4-10	신규위탁가정 소득	89
그림 4-11	신규위탁가정 종교	91
그림 4-12	신규위탁가정 참여 동기	92

1. 서론

- 1) 주요내용
- 2) 자료수집
- 3) 자료분석



1. 서론

가정위탁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념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 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전국 17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아동, 위탁가정, 친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환경 속에서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아동권리 강화, 아동학대 근절, 보호필요아동의 가정 내 보호, 자립 지원 등 아동들의 안전한 성장과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아동복지서비스 개선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관련 기관들의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체계화된 협력과 지원을 위해서는 보호아동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와 함께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아동복지서비스로서 보다 강력한 토대를 갖추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16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는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로 2016년도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대상별 주요 특성 및 서비스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 보고서를 통해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보호대상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가정위탁 서비스의 질 향상과 더불어 아동복지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연도별 변화추이와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기본사항, 신규종결 현황,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를 분석한 자료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1) 보호필요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 지역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 지역별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 가정위탁보호 아동

1) 가정위탁보호 아동

- 연도별 위탁아동 수
- 지역센터별 위탁아동 성별 및 연령
- 가정위탁보호사유
- 위탁아동 형제배치

- 위탁보호결정 시 위탁아동의 성별 및 연령
- 위탁아동의 위탁기간

2) 신규위탁아동

- 연도별 신규위탁아동 수
- 지역센터별 신규위탁아동 수
- 신규위탁아동 성별 및 연령
- 신규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사유
- 신규위탁아동 형제배치
- 학대피해아동의 신규위탁

3) 보호연장아동

- 지역센터별 보호연장아동 수
- 보호연장아동 성별 및 연령
- 보호연장사유
- 보호연장 배치연도 및 기간
- 신규보호연장아동 보호연장사유
- 신규보호연장아동의 위탁기간

4)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 연도별 종결아동 수
- 지역센터별 종결아동 수
- 종결아동 성별 및 연령
- 가정위탁종결사유
- 종결사유에 따른 성별 및 연령
- 종결사유별 위탁사유
- 종결아동유형별 위탁기간
- 종결사유별 위탁기간
- 종결 후 배치
-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성별 및 연령
-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위탁사유

❖ 위탁가정

1) 위탁가정

- 연도별 위탁가정 수
- 지역센터별 위탁가정 수
- 위탁부모 연령

- 위탁부모 직업
- 위탁부모 학력
- 위탁가정 소득
- 위탁가정 종교
- 위탁가정 참여 동기
- 종결위탁가정 종결사유

2) 신규위탁가정

- 지역센터별 신규위탁가정 수
- 신규위탁부모 연령
- 신규위탁부모 직업
- 신규위탁부모 학력
- 신규위탁가정 소득
- 신규위탁가정 종교
- 신규위탁가정 참여 동기

❖ 가정위탁 서비스 현황

1) 지원서비스

2) 경제적 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 전세임대 지원
- 가정위탁보호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 현황

❖ 가정위탁 교육 및 홍보 현황

1) 교육

2) 홍보

❖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1) 상담원의 업무량

- 지역센터별 지원서비스·교육·홍보 업무량
- 지역센터별 상담원 1인당 업무량

2) 자료수집

본 자료는 17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례관리 중이거나, 배치 및 종결된 사례에 대해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내 입력한 정보와 월별 운영실적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3) 자료분석

위탁아동, 위탁부모 및 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량 등 2016년 현황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였다.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항목에 대해서 유형별 빈도분석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일부항목은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1) 보호필요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1) 보호필요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표 2-1〉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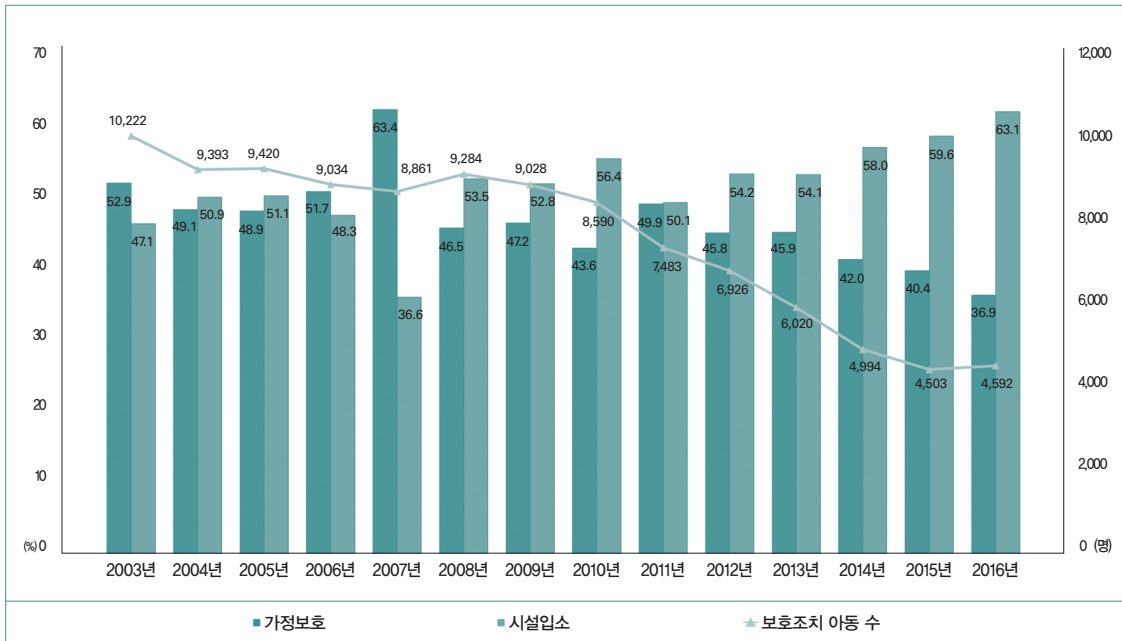
구분 년도	총 발생 아동 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조치내용								
			계	가정보호				시설입소			
				가정위탁	소년소녀 가정	입양	입양 전 위탁	양육시설 등	일시보호 시설	장애아동 시설	공동생활 가정
2016년	5,226	634	4,592	1,024	6	243	425	1,736	541	12	605
			100.0	22.3	0.1	5.3	9.2	37.8	11.8	0.3	13.2
2015년	4,975	472	4,503	1,206	-	239	376	1,412	799	13	458
			100.0	26.8	-	5.3	8.3	31.4	17.7	0.3	10.2
2014년	6,014	1,020	4,994	1,300	13	393	388	1,818	566	10	506
			100.0	26.0	0.3	7.9	7.8	36.4	11.3	0.2	10.1
2013년	6,834	814	6,020	1,749	20	478	516	1,731	801	39	686
			100.0	29.1	0.3	7.9	8.6	28.8	13.3	0.6	11.4
2012년	8,003	1,077	6,926	2,289	117	772	-	2,272	676	25	775
			100.0	33.0	1.7	11.1	-	32.8	9.8	0.4	11.2
2011년	8,436	953	7,483	2,350	128	1,253	-	2,246	862	32	612
			100.0	31.4	1.7	16.8	-	30.0	11.5	0.4	8.2
2010년	9,960	1,370	8,590	2,124	231	1,393	-	2,445	1,751	23	623
			100.0	24.7	2.7	16.2	-	28.4	20.4	0.3	7.3
2009년	10,500	1,472	9,028	2,734	213	1,314	-	2,406	1,640	35	686
			100.0	30.3	2.4	14.5	-	26.6	18.2	0.4	7.6
2008년	11,672	2,388	9,284	2,838	178	1,304	-	2,997	1,261	39	667
			100.0	30.6	1.9	14.0	-	32.3	13.6	0.4	7.2
2007년	11,394	2,533	8,861	3,378	247	1,991	-	3,189	-	39	17
			100.0	38.1	2.8	22.5	-	36.0	-	0.4	0.2
2006년	16,008	6,974	9,034	3,101	308	1,259	-	4,313	-	53	-
			100.0	34.4	3.4	13.9	-	47.7	-	0.6	-
2005년	18,468	9,048	9,420	2,322	407	1,873	-	4,769	-	48	1
			100.0	24.7	4.3	19.9	-	50.6	-	0.5	-
2004년	20,357	10,964	9,393	2,212	299	2,100	-	4,680	-	38	64
			100.0	23.5	3.2	22.4	-	49.8	-	0.4	0.7
2003년	21,882	11,660	10,222	2,392	500	2,506	-	4,747	-	42	35
			100.0	23.5	4.9	24.5	-	46.4	-	0.4	0.3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표 2-1〉은 보호필요아동의 보호조치를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다. 2016년 보호필요아동은 5,226명 발생하였고, 그 중 634명은 귀가 및 연고자 인도하였으며, 4,592명은 보호조치 되었다.

보호조치 내용 중 가정보호와 시설입소 비율은 각각 36.9%, 63.1%로 가정보호에 비해 시설입소가 약 1.7배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가정보호 40.4%, 시설입소 59.6%에 비해서도 가정보호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그림 2-1〉은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아동 수와 가정보호(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입양, 입양 전 위탁), 시설입소(양육시설 등,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 현황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설에 보호조치 된 아동의 비율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해 아동이 가족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가정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및 정부에서는 가정보호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과 정책 개선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표 2-2〉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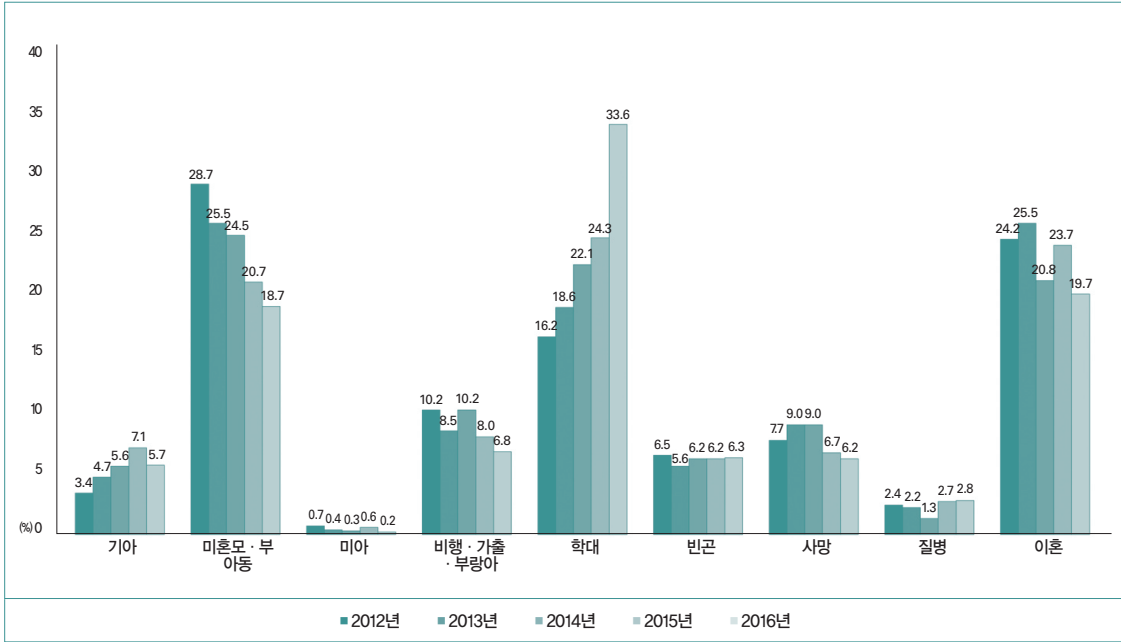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년도	계	기아	미혼모·부 아동	미아	비행·가출 ·부랑아	부모의 빈곤·사망·학대 등					
						계	학대	빈곤	사망	질병	이혼
2016년	4,592	264	856	10	314	3,148	1,540	290	286	126	906
	100.0	5.7	18.7	0.2	6.8	68.6	33.6	6.3	6.2	2.8	19.7
2015년	4,503	321	930	26	360	2,866	1,094	279	301	122	1,070
	100.0	7.1	20.7	0.6	8.0	63.6	24.3	6.2	6.7	2.7	23.7
2014년	4,994	282	1,226	13	508	2,965	1,105	308	450	65	1,037
	100.0	5.6	24.5	0.3	10.2	59.4	22.1	6.2	9.0	1.3	20.8
2013년	6,020	285	1,534	21	512	3,668	1,117	338	545	133	1,535
	100.0	4.7	25.5	0.4	8.5	60.9	18.6	5.6	9.0	2.2	25.5
2012년	6,926	235	1,989	50	708	3,944	1,122	448	533	166	1,675
	100.0	3.4	28.7	0.7	10.2	57.0	16.2	6.5	7.7	2.4	24.2
2011년	7,483	218	2,515	81	741	3,928	1,125	418	536	154	1,695
	100.0	2.9	33.6	1.1	9.9	52.5	15.0	5.6	7.2	2.1	22.6
2010년	8,590	191	2,804	210	772	4,613	1,037	586	772	203	2,015
	100.0	2.2	32.6	2.5	9.0	53.7	12.1	6.8	9.0	2.4	23.4
2009년	9,028	222	3,070	35	707	4,994	1,051	710	763	230	2,240
	100.0	2.5	34.0	0.4	7.8	55.3	11.6	7.9	8.5	2.5	24.8
2008년	9,284	202	2,349	151	706	5,876	891	1,036	732	274	2,943
	100.0	2.2	25.3	1.6	7.6	63.3	9.6	11.2	7.9	2.9	31.7
2007년	8,861	305	2,417	37	748	5,354					
	100.0	3.5	27.3	0.4	8.4	60.4					
2006년	9,034	230	3,022	55	802	4,925					
	100.0	2.5	33.5	0.6	8.9	54.5					
2005년	9,420	429	2,638	63	1,413	4,877					
	100.0	4.5	28.0	0.7	15.0	51.8					
2004년	9,393	481	4,004	62	581	4,265					
	100.0	5.1	42.6	0.7	6.2	45.4					
2003년	10,222	628	4,457	79	595	4,463					
	100.0	6.1	43.6	0.8	5.8	43.7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표 2-2〉는 연도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보호필요아동의 발생사유 중 학대가 2015년부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되면서 신고 건수와 분리보호조치로 결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2〉 최근 5년간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그림 2-2〉는 최근 5년간 보호필요아동의 발생사유별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보호필요아동의 주 발생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학대 33.6%, 이혼 19.7%, 미혼모·부아동 18.7%로 전체 발생사유의 7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학대에 따른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학대로 인한 보호필요아동 발생수가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9.3%로 급속한 증가폭을 나타냈다.

현 실태를 고려하여 학대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아동을 가정 내 보호로 유입하기 위한 체계 마련과 함께 학대피해아동과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표 2-3〉 지역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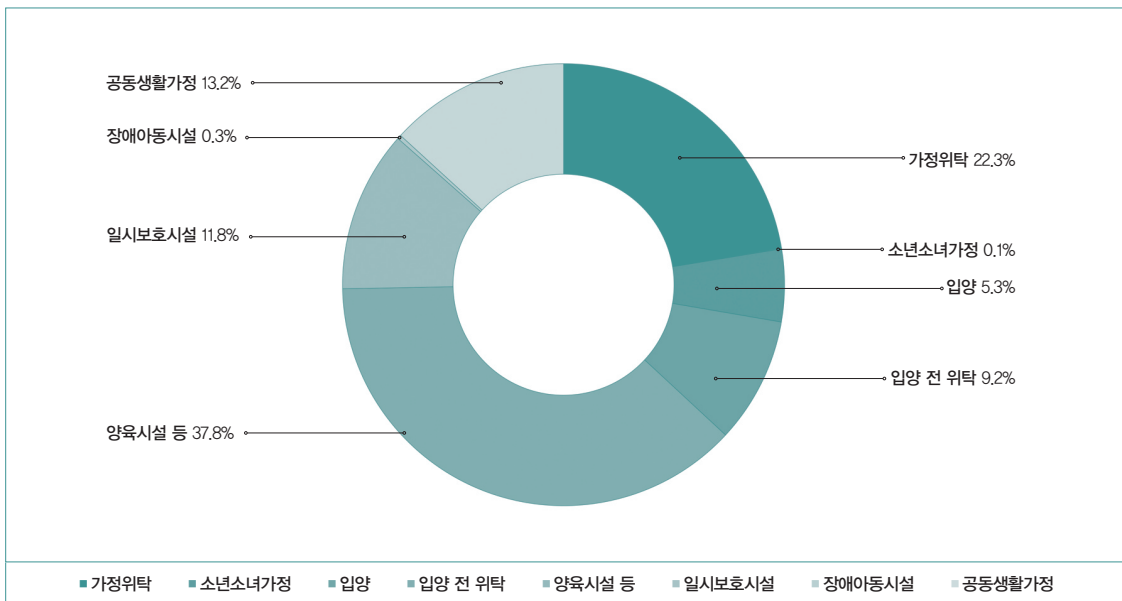
구분 시·도	계	조치내용							
		가정보호				시설입소			
		가정위탁	소년소녀 가정	입양	입양 전 위탁	양육시설 등	일시 보호시설	장애아동 시설	공동생활 가정
계	4,592	1,024	6	243	425	1,736	541	12	605
	100.0	22.3	0.1	5.3	9.2	37.8	11.8	0.3	13.2
서울	1,527	98	3	85	417	591	258	-	75
	100.0	6.4	0.2	5.6	27.3	38.7	16.9	-	4.9
부산	166	60	-	5	-	55	6	-	40
	100.0	36.2	-	3.0	-	33.1	3.6	-	24.1
대구	161	38	-	10	-	89	18	-	6
	100.0	23.6	-	6.2	-	55.3	11.2	-	3.7
인천	189	56	3	22	-	71	28	1	8
	100.0	29.6	1.6	11.7	-	37.6	14.8	0.5	4.2
광주	161	26	-	15	1	61	3	9	46
	100.0	16.1	-	9.3	0.6	37.9	1.9	5.6	28.6
대전	80	19	-	8	-	36	5	-	12
	100.0	23.8	-	10.0	-	45.0	6.2	-	15.0
울산	96	30	-	8	-	40	-	-	18
	100.0	31.3	-	8.3	-	41.7	-	-	18.7
세종	6	-	-	-	-	5	1	-	-
	100.0	-	-	-	-	83.3	16.7	-	-
경기	540	136	-	36	-	114	127	-	127
	100.0	25.2	-	6.7	-	21.1	23.5	-	23.5
강원	272	118	-	24	3	43	30	-	54
	100.0	43.4	-	8.8	1.1	15.8	11.0	-	19.9
충북	241	148	-	3	-	49	9	-	32
	100.0	61.4	-	1.3	-	20.3	3.7	-	13.3
충남	139	24	-	-	-	91	3	-	21
	100.0	17.3	-	-	-	65.5	2.1	-	15.1
전북	278	51	-	8	-	119	24	-	76
	100.0	18.3	-	2.9	-	42.8	8.6	-	27.4
전남	264	60	-	2	4	161	10	-	27
	100.0	22.7	-	0.8	1.5	61.0	3.8	-	10.2
경북	158	46	-	12	-	66	-	2	32
	100.0	29.1	-	7.6	-	41.8	-	1.3	20.2
경남	246	85	-	4	-	117	19	-	21
	100.0	34.6	-	1.6	-	47.6	7.7	-	8.5
제주	68	29	-	1	-	28	-	-	10
	100.0	42.6	-	1.5	-	41.2	-	-	14.7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표 2-3〉은 2016년 발생한 보호필요아동의 보호조치 내용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보호필요아동의 보호조치 내용 중 가정위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 61.4%였으며, 강원 43.4%, 제주 42.6%, 부산 3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된 아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의 경우 가정위탁 비율이 50.0%를 넘는 곳이 3곳이었던 데에 반해 2016년에는 단 1곳만 50.0%를 넘겨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시설입소의 경우, 양육시설 등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의 비율이 50.0% 이상인 곳은 총 4곳으로 세종 83.3%, 충남 65.5%, 전남 61.0%, 대구 55.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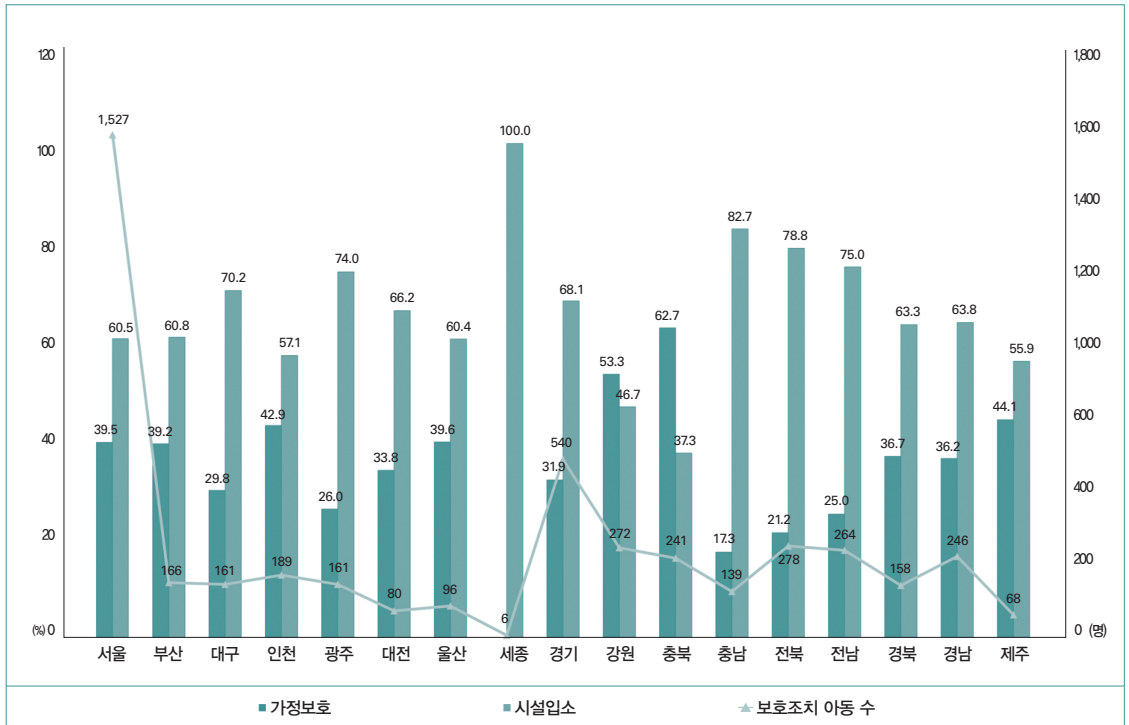
〈그림 2-3〉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그림 2-3〉은 전체 보호필요아동의 보호조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6년에는 양육시설 등에 보호조치 된 아동의 비율이 37.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위탁이 22.3%, 공동생활가정(그림홈) 13.2%, 일시보호시설 11.8% 순이었다. 공동생활가정은 2015년 4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2016년에는 일시보호시설보다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여 보호필요아동이 공동생활가정으로 배치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림 2-4〉 지역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가정보호, 시설입소 비교)



〈그림 2-4〉는 지역별로 가정보호(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입양, 입양 전 위탁)와 시설입소(양육시설 등,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를 구분하여 보호필요아동의 보호조치를 비교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정보호보다 시설입소 비율이 높았으며, 가정보호가 시설입소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53.3%), 충북(62.7%) 총 2곳에 불과했다. 시설입소 비율이 70.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은 대구(70.2%), 광주(74.0%), 세종(100.0%), 충남(82.7%), 전북(78.8%), 전남(75.0%)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조치내용 비율을 보면 가정보호 36.9%, 시설입소 63.1%로 여전히 보호필요아동의 보호조치 시 시설입소에 의존하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 지역별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표 2-4〉 지역별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단위 : 명, %

구분 시·도	계	기아	미혼모·부 아동	미아	비행·가출 ·부랑아	부모학대	부모빈곤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
계	4,592	264	856	10	314	1,540	290	286	126	906
	100.0	5.7	18.7	0.2	6.8	33.6	6.3	6.2	2.8	19.7
서울	1,527	165	558	-	272	293	100	41	4	94
	100.0	10.8	36.5	-	17.8	19.2	6.5	2.7	0.3	6.2
부산	166	11	12	-	1	68	9	21	7	37
	100.0	6.6	7.2	-	0.6	41.0	5.4	12.7	4.2	22.3
대구	161	4	13	-	16	40	8	17	24	39
	100.0	2.5	8.1	-	9.9	24.8	5.0	10.6	14.9	24.2
인천	189	3	30	-	-	67	18	17	4	50
	100.0	1.6	15.9	-	-	35.4	9.5	9.0	2.1	26.5
광주	161	1	44	4	1	45	16	7	5	38
	100.0	0.6	27.3	2.5	0.6	28.0	10.0	4.3	3.1	23.6
대전	80	1	11	-	-	36	2	5	6	19
	100.0	1.3	13.7	-	-	45.0	2.5	6.3	7.5	23.7
울산	96	-	10	-	-	49	3	5	3	26
	100.0	-	10.4	-	-	51.1	3.1	5.2	3.1	27.1
세종	6	-	-	-	-	6	-	-	-	-
	100.0	-	-	-	-	100.0	-	-	-	-
경기	540	44	26	3	5	261	21	57	18	105
	100.0	8.1	4.8	0.6	0.9	48.3	3.9	10.6	3.3	19.5
강원	272	-	30	-	4	86	20	30	8	94
	100.0	-	11.0	-	1.5	31.6	7.4	11.0	2.9	34.6
충북	241	-	23	-	1	53	8	10	7	139
	100.0	-	9.6	-	0.4	22.0	3.3	4.1	2.9	57.7
충남	139	16	5	-	1	70	7	2	-	38
	100.0	11.5	3.6	-	0.7	50.4	5.0	1.4	-	27.4
전북	278	1	17	2	5	175	16	17	6	39
	100.0	0.4	6.1	0.7	1.8	62.9	5.8	6.1	2.2	14.0
전남	264	5	50	-	3	89	29	12	9	67
	100.0	1.9	19.0	-	1.1	33.7	11.0	4.5	3.4	25.4
경북	158	4	8	-	1	76	12	3	10	44
	100.0	2.5	5.1	-	0.7	48.1	7.6	1.9	6.3	27.8
경남	246	7	13	-	3	101	16	35	14	57
	100.0	2.8	5.3	-	1.2	41.1	6.5	14.2	5.7	23.2
제주	68	2	6	1	1	25	5	7	1	20
	100.0	2.9	8.8	1.5	1.5	36.8	7.3	10.3	1.5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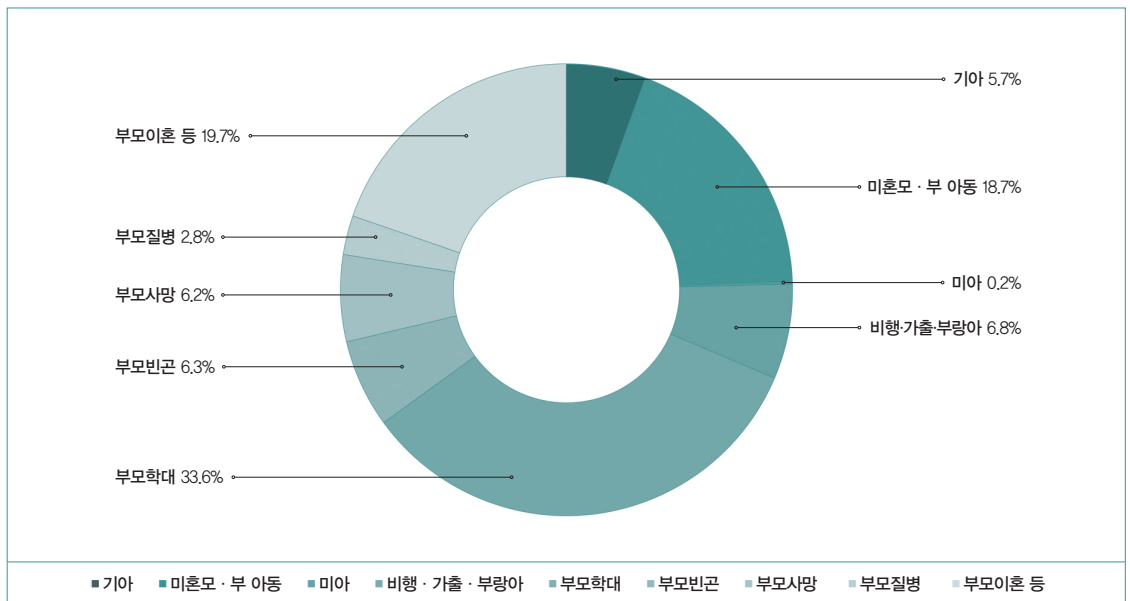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표 2-4〉는 보호필요아동의 발생사유를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보호필요아동의 발생사유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기아는 충남 11.5%, 미혼모·부 아동은 서울 36.5%, 미아 광주 2.5%, 비행·가출·부랑아 서울 17.8%, 부모학대 전북 62.9%, 부모빈곤·실직 전남 11.0%, 부모사망 경남 14.2%, 부모질병 대구 14.9%, 부모이혼 등은 충북이 57.7%로 나타났다.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중 높은 비율을 보인 사유(부모학대(33.6%), 부모이혼 등(19.7%), 미혼모·부 아동(18.7%))와 관련하여 해당 사유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을 살펴보면 부모학대는 부산 41.0%, 대구 24.8%, 인천 35.4%, 광주 28.0%, 대전 45.0%, 울산 51.1%, 세종 100.0%, 경기 48.3%, 충남 50.4%, 전북 62.9%, 전남 33.7%, 경북 48.1%, 경남 41.1%, 제주 36.8%로 서울, 강원, 충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50.0%를 넘는 지역도 4곳으로 부모학대에 의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인된다.

2015년 가장 많은 지역(9곳)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부모이혼 사유가 2016년에는 강원 34.6%, 충북 57.7%로 단 2곳에 그쳤으며, 미혼모·부 아동이 가장 높은 사유를 나타낸 지역은 서울 36.5%였다.

〈그림 2-5〉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그림 2-5〉는 전체 보호필요아동의 발생사유 현황으로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사유는 부모학대 33.6%이다.

3. 가정위탁보호 아동

- 1) 가정위탁보호 아동
- 2) 신규위탁아동
- 3) 보호연장아동
- 4)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3. 가정위탁보호 아동

1) 가정위탁보호 아동

■ 연도별 위탁아동 수

〈표 3-1〉 연도별 위탁아동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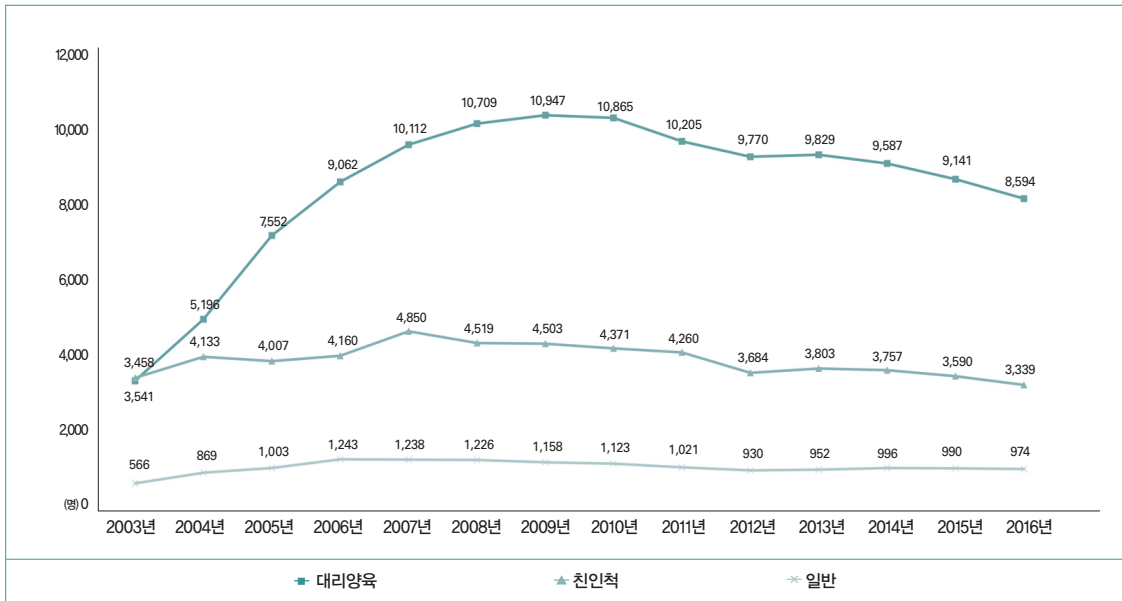
단위 : 명, %

년도	구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2016년		12,907	8,594	3,339	974
		100.0	66.6	25.9	7.5
2015년		13,721	9,141	3,590	990
		100.0	66.6	26.2	7.2
2014년		14,340	9,587	3,757	996
		100.0	66.9	26.2	6.9
2013년		14,584	9,829	3,803	952
		100.0	67.4	26.1	6.5
2012년		14,384	9,770	3,684	930
		100.0	67.9	25.6	6.5
2011년		15,486	10,205	4,260	1,021
		100.0	65.9	27.5	6.6
2010년		16,359	10,865	4,371	1,123
		100.0	66.4	26.7	6.9
2009년		16,608	10,947	4,503	1,158
		100.0	65.9	27.1	7.0
2008년		16,454	10,709	4,519	1,226
		100.0	65.0	27.5	7.5
2007년		16,200	10,112	4,850	1,238
		100.0	62.4	29.9	7.7
2006년		14,465	9,062	4,160	1,243
		100.0	62.6	28.8	8.6
2005년		12,562	7,552	4,007	1,003
		100.0	60.1	31.9	8.0
2004년		10,198	5,196	4,133	869
		100.0	51.0	40.5	8.5
2003년		7,565	3,458	3,541	566
		100.0	45.7	46.8	7.5

〈표 3-1〉은 연도별 가정위탁보호 유형에 따른 위탁아동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2010년부터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에는 총 12,907명으로 나타났다.

〈표 2-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6년 보호조치 되는 아동 수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는 줄어들고 있어 가정위탁보호조치 비율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그림 3-1〉 연도별 위탁아동 수



〈그림 3-1〉은 연도별 위탁유형별 변화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대리양육위탁, 친인척위탁, 일반위탁 모든 유형별 인원수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탁유형별 인원비율은 대리양육위탁 2015년과 2016년 각각 66.6%, 친인척위탁 26.2%, 일반위탁 7.2%, 7.5%로 나타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지역센터별 위탁아동 성별 및 연령

〈표 3-2〉 지역센터별 위탁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 명, %

구분	계	성별		연령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계	대리양육	8,594	4,425	4,169	43	341	563	973	1,998	3,350	1,326
		100.0	51.5	48.5	0.5	4.0	6.6	11.3	23.2	39.0	15.4
	친인척	3,339	1,638	1,701	11	90	189	337	722	1,353	637
		100.0	49.1	50.9	0.3	2.7	5.7	10.1	21.6	40.5	19.1
	일반	974	523	451	65	157	115	157	183	230	67
	100.0	53.7	46.3	6.7	16.1	11.8	16.1	18.8	23.6	6.9	
	소계	12,907	6,586	6,321	119	588	867	1,467	2,903	4,933	2,030
		100.0	51.0	49.0	0.9	4.6	6.7	11.4	22.5	38.2	15.7
서울	대리양육	753	389	364	3	25	50	77	176	297	125
		100.0	51.7	48.3	0.4	3.3	6.6	10.2	23.4	39.5	16.6
	친인척	366	187	179	0	13	19	39	73	153	69
		100.0	51.1	48.9	0.0	3.6	5.2	10.7	19.9	41.8	18.8
	일반	62	35	27	2	13	6	10	12	15	4
	100.0	56.5	43.5	3.2	21.0	9.7	16.1	19.4	24.2	6.4	
	소계	1,181	611	570	5	51	75	126	261	465	198
		100.0	51.7	48.3	0.4	4.3	6.3	10.7	22.1	39.4	16.8
부산	대리양육	425	214	211	4	13	28	44	86	163	87
		100.0	50.4	49.6	0.9	3.1	6.6	10.4	20.2	38.3	20.5
	친인척	216	99	117	1	2	8	15	51	85	54
		100.0	45.8	54.2	0.5	0.9	3.7	6.9	23.6	39.4	25.0
	일반	52	29	23	1	7	7	7	12	13	5
	100.0	55.8	44.2	1.9	13.5	13.5	13.5	23.0	25.0	9.6	
	소계	693	342	351	6	22	43	66	149	261	146
		100.0	49.4	50.6	0.9	3.2	6.2	9.5	21.5	37.6	21.1
대구	대리양육	169	99	70	3	10	16	27	35	49	29
		100.0	58.6	41.4	1.8	5.9	9.5	16.0	20.7	29.0	17.1
	친인척	84	33	51	0	5	6	8	22	26	17
		100.0	39.3	60.7	0.0	6.0	7.1	9.5	26.2	31.0	20.2
	일반	44	24	20	2	5	8	9	9	8	3
	100.0	54.5	45.5	4.5	11.3	18.2	20.5	20.5	18.2	6.8	
	소계	297	156	141	5	20	30	44	66	83	49
		100.0	52.5	47.5	1.7	6.7	10.1	14.8	22.2	28.0	16.5
인천	대리양육	382	198	184	2	29	23	34	92	142	60
		100.0	51.8	48.2	0.5	7.6	6.0	8.9	24.1	37.2	15.7
	친인척	209	103	106	0	3	6	9	46	93	52
		100.0	49.3	50.7	0.0	1.4	2.9	4.3	22.0	44.5	24.9
	일반	62	34	28	1	12	9	13	10	15	2
	100.0	54.8	45.2	1.6	19.4	14.5	21.0	16.1	24.2	3.2	
	소계	653	335	318	3	44	38	56	148	250	114
		100.0	51.3	48.7	0.5	6.7	5.8	8.6	22.7	38.3	17.4

구분	계	성별		연령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광주	대리양육	194	88	106	0	6	10	24	53	68	33
		100.0	45.4	54.6	0.0	3.1	5.2	12.4	27.3	35.0	17.0
	친인척	127	69	58	1	4	10	12	28	50	22
		100.0	54.3	45.7	0.8	3.1	7.9	9.4	22.0	39.4	17.4
	일반	35	18	17	0	8	3	4	10	8	2
100.0		51.4	48.6	0.0	22.9	8.6	11.4	28.5	22.9	5.7	
소계	356	175	181	1	18	23	40	91	126	57	
	100.0	49.2	50.8	0.3	5.0	6.5	11.2	25.6	35.4	16.0	
대전	대리양육	146	78	68	0	8	3	15	40	54	26
		100.0	53.4	46.6	0.0	5.5	2.0	10.3	27.4	37.0	17.8
	친인척	78	39	39	0	0	1	10	16	34	17
		100.0	50.0	50.0	0.0	0.0	1.3	12.8	20.5	43.6	21.8
	일반	41	24	17	1	7	4	8	8	11	2
100.0		58.5	41.5	2.4	17.1	9.8	19.5	19.5	26.8	4.9	
소계	265	141	124	1	15	8	33	64	99	45	
	100.0	53.2	46.8	0.4	5.7	3.0	12.4	24.1	37.4	17.0	
울산	대리양육	168	79	89	1	9	14	15	34	74	21
		100.0	47.0	53.0	0.6	5.4	8.3	8.9	20.2	44.1	12.5
	친인척	89	43	46	0	3	7	11	18	35	15
		100.0	48.3	51.7	0.0	3.4	7.9	12.4	20.2	39.3	16.8
	일반	29	10	19	6	5	1	5	3	6	3
100.0		34.5	65.5	20.7	17.2	3.4	17.2	10.4	20.7	10.4	
소계	286	132	154	7	17	22	31	55	115	39	
	100.0	46.2	53.8	2.5	6.0	7.7	10.8	19.2	40.2	13.6	
경기	대리양육	900	477	423	2	37	52	97	206	369	137
		100.0	53.0	47.0	0.2	4.1	5.8	10.8	22.9	41.0	15.2
	친인척	504	247	257	4	16	24	59	119	198	84
		100.0	49.0	51.0	0.8	3.2	4.7	11.7	23.6	39.3	16.7
	일반	73	35	38	10	13	11	7	10	16	6
100.0		47.9	52.1	13.7	17.8	15.1	9.6	13.7	21.9	8.2	
소계	1,477	759	718	16	66	87	163	335	583	227	
	100.0	51.4	48.6	1.1	4.4	5.9	11.0	22.7	39.5	15.4	
경기 북부	대리양육	491	247	244	2	25	39	70	113	183	59
		100.0	50.3	49.7	0.4	5.1	7.9	14.3	23.0	37.3	12.0
	친인척	215	112	103	0	10	17	30	43	79	36
		100.0	52.1	47.9	0.0	4.7	7.9	14.0	20.0	36.7	16.7
	일반	84	39	45	5	21	5	11	7	28	7
100.0		46.4	53.6	6.0	25.0	6.0	13.1	8.3	33.3	8.3	
소계	790	398	392	7	56	61	111	163	290	102	
	100.0	50.4	49.6	0.9	7.1	7.7	14.1	20.6	36.7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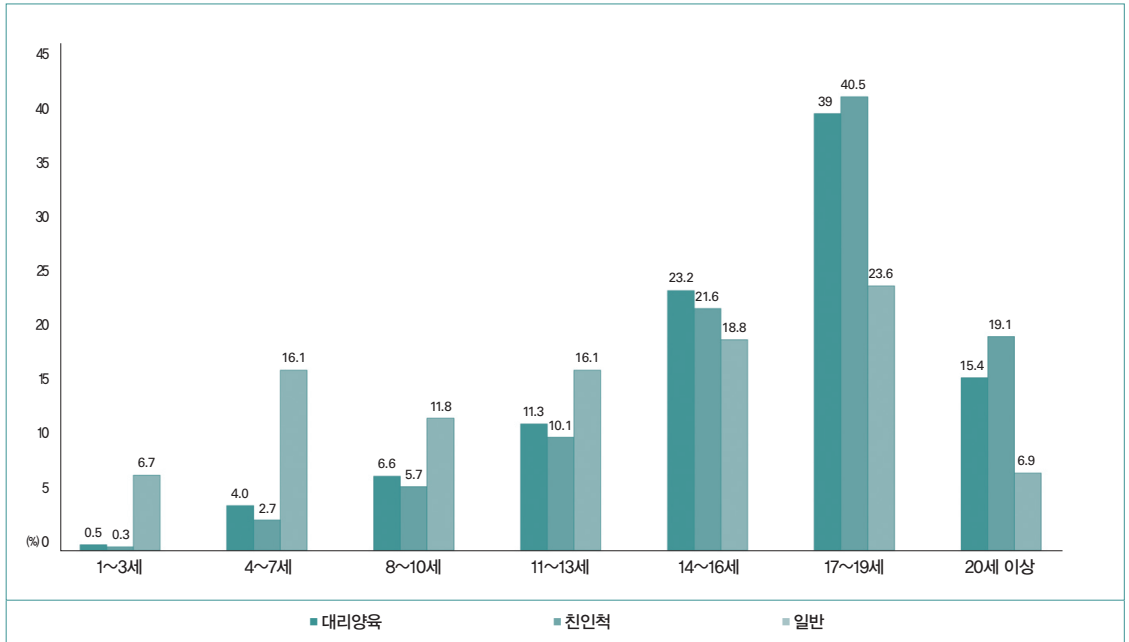
구분	계	성별		연령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강원	대리양육	922	457	465	5	26	52	103	220	349	167
		100.0	49.6	50.4	0.5	2.8	5.6	11.2	23.9	37.9	18.1
	친인척	221	100	121	1	1	16	19	45	96	43
		100.0	45.2	54.8	0.5	0.5	7.2	8.6	20.4	43.4	19.4
	일반	86	42	44	7	10	13	14	18	19	5
100.0		48.8	51.2	8.2	11.6	15.1	16.3	20.9	22.1	5.8	
소계	1,229	599	630	13	37	81	136	283	464	215	
	100.0	48.7	51.3	1.1	3.0	6.6	11.1	23.0	37.7	17.5	
충북	대리양육	411	227	184	2	22	26	44	114	159	44
		100.0	55.2	44.8	0.5	5.4	6.3	10.7	27.7	38.7	10.7
	친인척	130	59	71	2	4	6	12	31	58	17
		100.0	45.4	54.6	1.5	3.1	4.6	9.2	23.9	44.6	13.1
	일반	54	32	22	5	9	5	5	8	19	3
100.0		59.3	40.7	9.3	16.6	9.3	9.3	14.8	35.2	5.5	
소계	595	318	277	9	35	37	61	153	236	64	
	100.0	53.4	46.6	1.5	5.9	6.2	10.2	25.7	39.7	10.8	
충남	대리양육	447	205	242	4	23	36	56	107	171	50
		100.0	45.9	54.1	0.9	5.1	8.1	12.5	23.9	38.3	11.2
	친인척	146	67	79	1	3	16	14	32	60	20
		100.0	45.9	54.1	0.7	2.0	11.0	9.6	21.9	41.1	13.7
	일반	51	32	19	7	9	7	9	10	7	2
100.0		62.7	37.3	13.7	17.7	13.7	17.7	19.6	13.7	3.9	
소계	644	304	340	12	35	59	79	149	238	72	
	100.0	47.2	52.8	1.9	5.4	9.2	12.3	23.1	36.9	11.2	
전북	대리양육	603	316	287	4	18	36	59	146	250	90
		100.0	52.4	47.6	0.7	3.0	6.0	9.8	24.2	41.4	14.9
	친인척	179	95	84	0	6	13	14	43	72	31
		100.0	53.1	46.9	0.0	3.4	7.3	7.8	24.0	40.2	17.3
	일반	61	34	27	1	3	6	13	18	10	10
100.0		55.7	44.3	1.7	4.9	9.8	21.3	29.5	16.4	16.4	
소계	843	445	398	5	27	55	86	207	332	131	
	100.0	52.8	47.2	0.6	3.2	6.5	10.2	24.6	39.4	15.5	
전남	대리양육	1,074	573	501	5	36	58	138	251	436	150
		100.0	53.4	46.6	0.5	3.3	5.4	12.8	23.4	40.6	14.0
	친인척	205	100	105	1	6	9	23	39	90	37
		100.0	48.8	51.2	0.5	2.9	4.4	11.2	19.0	43.9	18.1
	일반	42	23	19	1	8	7	5	6	12	3
100.0		54.8	45.2	2.4	19.0	16.7	11.9	14.3	28.6	7.1	
소계	1,321	696	625	7	50	74	166	296	538	190	
	100.0	52.7	47.3	0.5	3.8	5.6	12.6	22.4	40.7	14.4	

구분	계	성별		연령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경북	대리양육	664	347	317	3	31	60	79	140	258	93
		100.0	52.3	47.7	0.4	4.7	9.0	11.9	21.1	38.9	14.0
	친인척	203	99	104	0	3	13	27	38	88	34
		100.0	48.8	51.2	0.0	1.5	6.4	13.3	18.7	43.4	16.7
	일반	100	57	43	10	13	13	19	21	20	4
100.0		57.0	43.0	10.0	13.0	13.0	19.0	21.0	20.0	4.0	
소계	967	503	464	13	47	86	125	199	366	131	
	100.0	52.0	48.0	1.3	4.9	8.9	12.9	20.6	37.9	13.5	
경남	대리양육	636	324	312	3	18	40	69	145	246	115
		100.0	50.9	49.1	0.5	2.8	6.3	10.8	22.8	38.7	18.1
	친인척	310	155	155	0	8	16	33	65	113	75
		100.0	50.0	50.0	0.0	2.6	5.2	10.6	21.0	36.4	24.2
	일반	77	45	32	4	11	4	14	18	20	6
100.0		58.4	41.6	5.2	14.3	5.2	18.2	23.4	25.9	7.8	
소계	1,023	524	499	7	37	60	116	228	379	196	
	100.0	51.2	48.8	0.7	3.6	5.9	11.3	22.3	37.0	19.2	
제주	대리양육	209	107	102	0	5	20	22	40	82	40
		100.0	51.2	48.8	0.0	2.4	9.6	10.5	19.1	39.3	19.1
	친인척	57	31	26	0	3	2	2	13	23	14
		100.0	54.4	45.6	0.0	5.3	3.5	3.5	22.8	40.3	24.6
	일반	21	10	11	2	3	6	4	3	3	0
100.0		47.6	52.4	9.5	14.3	28.6	19.0	14.3	14.3	0.0	
소계	287	148	139	2	11	28	28	56	108	54	
	100.0	51.6	48.4	0.7	3.8	9.8	9.8	19.5	37.6	18.8	

〈표 3-2〉는 위탁아동의 성별 및 연령을 지역센터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위탁아동의 성별 비율은 남아가 51.0%, 여아가 49.0%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전체 위탁아동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17~19세 38.2%, 14~16세 22.5%, 20세 이상 15.7%, 11~13세 11.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5년과 마찬가지로 2016년에도 자립지원 대상인 고등학생 연령의 아동이 3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중학생 연령의 아동 22.5%, 초등학교생 연령의 아동이 18.1%의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3-2〉 위탁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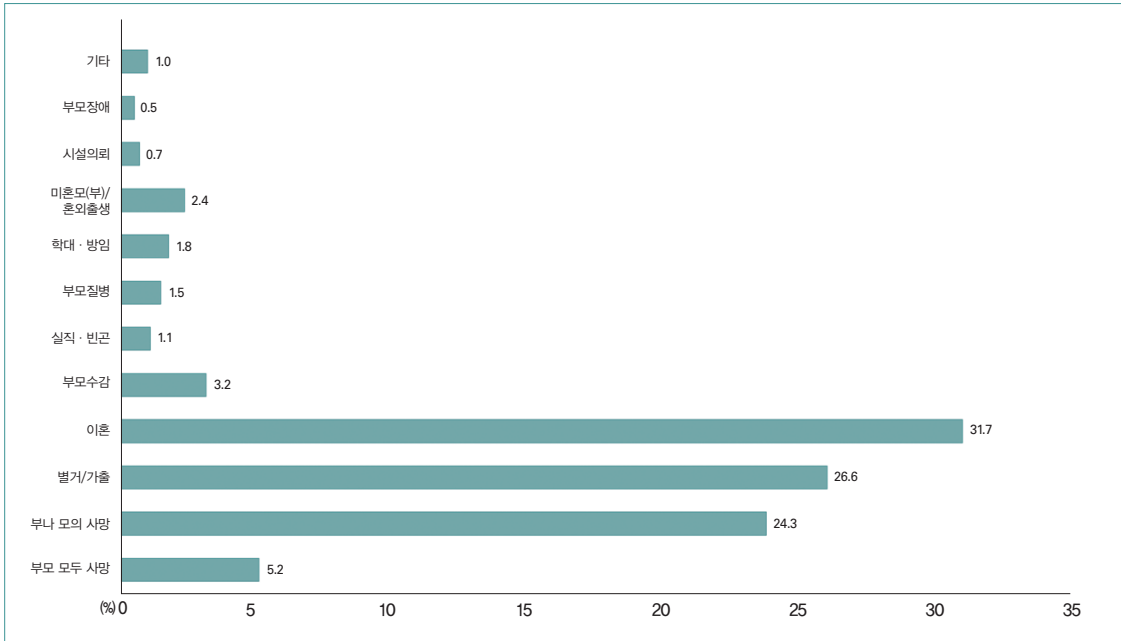


〈그림 3-2〉는 위탁아동의 연령현황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아동의 연령별 분포는 14~19세의 중·고등학생 연령대 아동 비율이 약 62.0% 정도를 차지하고 취학 전 아동은 3.0%~4.5%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위탁아동은 취학 전 22.8%, 초·중·고등학생 연령대 아동의 비율이 각각 27.9%, 18.8%, 23.6%로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일반위탁은 취학 전 연령대의 아동에 대한 위탁률이 높고 1~3세 영유아의 비율이 10.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 4곳(울산, 경기, 충남, 경북)으로 조사되어 일반위탁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제공과 전문교육이 필수적이며, 이외에도 위탁유형별 위탁아동구성 비율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가정위탁보호사유

〈그림 3-3〉 가정위탁보호사유



〈그림 3-3〉은 전체 위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위탁사유 중 부모의 이혼으로 위탁된 아동이 3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모의 별거/가출 26.6%, 부나 모의 사망 2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가정위탁보호사유

단위: 명, %

구분	계	부모 모두 사망	부나 모의 사망	별거/가출	이혼	부모 수감	실직·빈곤	부모 질병	학대·방임	미혼모(부)/혼외출생	사실 의뢰	부모 장애	기타
계	12,907	673	3,142	3,428	4,097	409	138	197	227	314	84	70	128
	100.0	5.2	24.3	26.6	31.7	3.2	1.1	1.5	1.8	2.4	0.7	0.5	1.0
대리양육	8,594	353	1,911	2,450	3,154	252	78	87	76	159	1	19	54
	100.0	4.1	22.2	28.5	36.7	2.9	0.9	1.0	0.9	1.9	0.1	0.2	0.6
친인척	3,339	311	1,133	739	776	124	21	63	49	46	2	36	39
	100.0	9.3	33.9	22.1	23.2	3.7	0.6	1.9	1.5	1.4	0.1	1.1	1.2
일반	974	9	98	239	167	33	39	47	102	109	81	15	35
	100.0	0.9	10.1	24.5	17.1	3.4	4.0	4.8	10.5	11.2	8.3	1.6	3.6

〈표 3-3〉은 위탁유형별 가정위탁보호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표 2-4〉에서 나타난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는 부모학대 33.6%, 부모이혼 등 19.7%, 미혼모·부 아동 18.7%인 반면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위탁사유에서는 미혼모(부)/혼외출생 2.4%, 학대·방임으로 인한 유입은 1.8%에 불과해 학대피해아동의 가정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위탁가정의 확대와 함께 가정 위탁 배치절차의 변화가 요구된다.

위탁유형별 가정위탁보호사유를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의 경우는 이혼이 36.7%, 친인척위탁아동은 부나 모의 사망 33.9%, 일반위탁아동은 별거/가출이 2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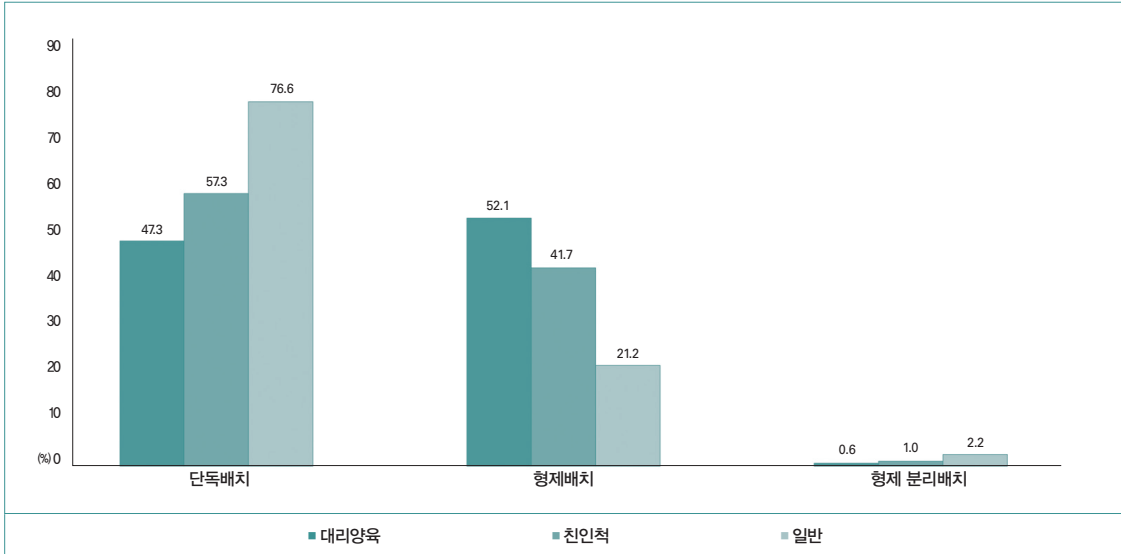
■ 위탁아동 형제배치

〈표 3-4〉 위탁아동 형제배치

단위: 명, %

구분	계	단독배치	형제배치	형제 분리배치
계	12,907	6,727	6,075	105
	100.0	52.1	47.1	0.8
대리양육	8,594	4,069	4,476	49
	100.0	47.3	52.1	0.6
친인척	3,339	1,912	1,392	35
	100.0	57.3	41.7	1.0
일반	974	746	207	21
	100.0	76.6	21.2	2.2

〈그림 3-4〉 위탁아동 형제배치



〈표 3-4〉는 위탁아동의 형제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위탁 중인 아동 중 형제 없이 혼자 가정위탁보호 의뢰되어 배치된 단독배치가 52.1%, 형제가 함께 의뢰되어 같은 가정에 배치된 형제배치는 47.1%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형제가 함께 의뢰됐으나 각각 다른 위탁가정에서 양육되는 형제 분리배치는 0.8%로 형제가 함께 의뢰되는 경우 가능한 같은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탁유형별로는 대리양육위탁아동의 경우 형제배치가 5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친인척위탁아동과 일반위탁아동은 단독배치가 가장 높았으나 수치는 각각 57.3%, 76.6%로, 일반위탁가정에 아동단독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위탁보호결정 시 위탁아동의 성별 및 연령

〈표 3-5〉 위탁보호결정 시 위탁아동의 성별 및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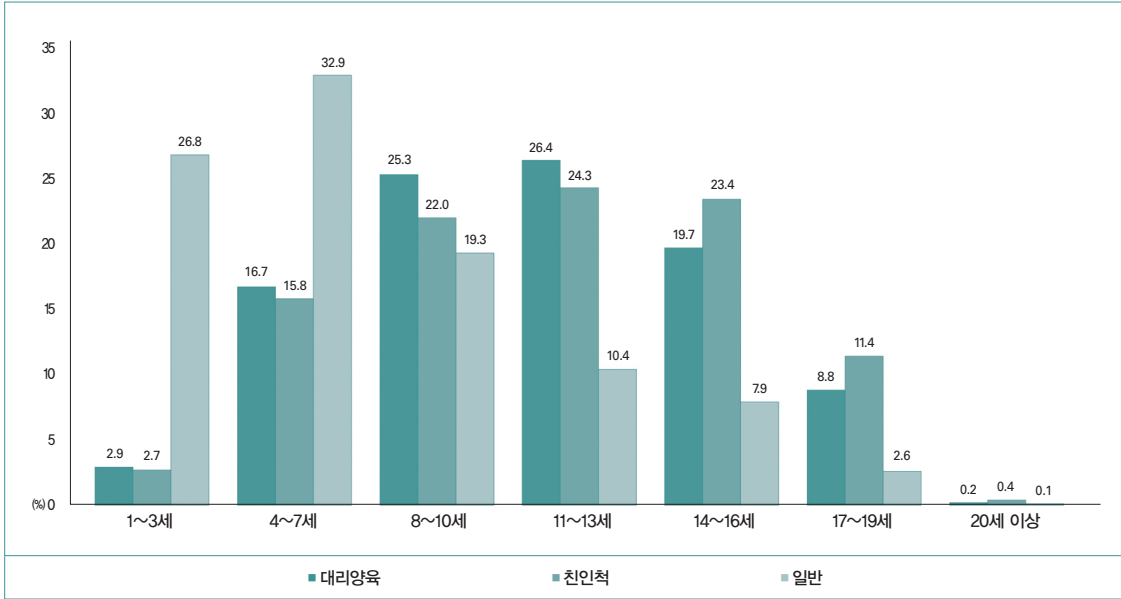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연령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계	남	6,586	324	1,218	1,652	1,609	1,234	533	16
		100.0	4.9	18.5	25.1	24.4	18.7	8.1	0.3
	여	6,321	280	1,063	1,451	1,571	1,318	625	13
		100.0	4.4	16.8	23.0	24.9	20.8	9.9	0.2
	소계	12,907	604	2,281	3,103	3,180	2,552	1,158	29
		100.0	4.7	17.7	24.0	24.6	19.8	9.0	0.2
대리양육	남	4,425	141	763	1,170	1,154	828	359	10
		100.0	3.2	17.3	26.4	26.1	18.7	8.1	0.2
	여	4,169	112	670	1,009	1,114	865	394	5
		100.0	2.7	16.1	24.2	26.7	20.7	9.5	0.1
	소계	8,594	253	1,433	2,179	2,268	1,693	753	15
		100.0	2.9	16.7	25.3	26.4	19.7	8.8	0.2
친인척	남	1,638	44	282	381	403	358	164	6
		100.0	2.7	17.2	23.3	24.6	21.8	10.0	0.4
	여	1,701	46	245	355	408	424	216	7
		100.0	2.7	14.4	20.9	24.0	24.9	12.7	0.4
	소계	3,339	90	527	736	811	782	380	13
		100.0	2.7	15.8	22.0	24.3	23.4	11.4	0.4
일반	남	523	139	173	101	52	48	10	0
		100.0	26.6	33.1	19.3	9.9	9.2	1.9	0.0
	여	451	122	148	87	49	29	15	1
		100.0	27.1	32.8	19.3	10.9	6.4	3.3	0.2
	소계	974	261	321	188	101	77	25	1
		100.0	26.8	32.9	19.3	10.4	7.9	2.6	0.1

〈표 3-5〉는 위탁보호결정 시 아동의 연령을 성별과 함께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위탁보호결정 시 아동의 연령은 11~13세가 2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8~10세 24.0%, 14~16세 19.8%로, 8세에서 16세까지 고른 연령에서 위탁보호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탁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대리양육위탁아동의 경우 8세~13세 아동의 비율이 높고, 친인척위탁아동은 11세~16세, 일반위탁아동은 1세~7세에 위탁보호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5〉 위탁보호결정 시 위탁아동의 연령



〈그림 3-5〉는 위탁유형별로 위탁아동의 보호결정 시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아동은 위탁보호결정 시 연령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위탁아동은 다른 위탁유형에 비해 취학 전 위탁보호 책정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위탁아동의 위탁기간

〈표 3-6〉 위탁유형별 위탁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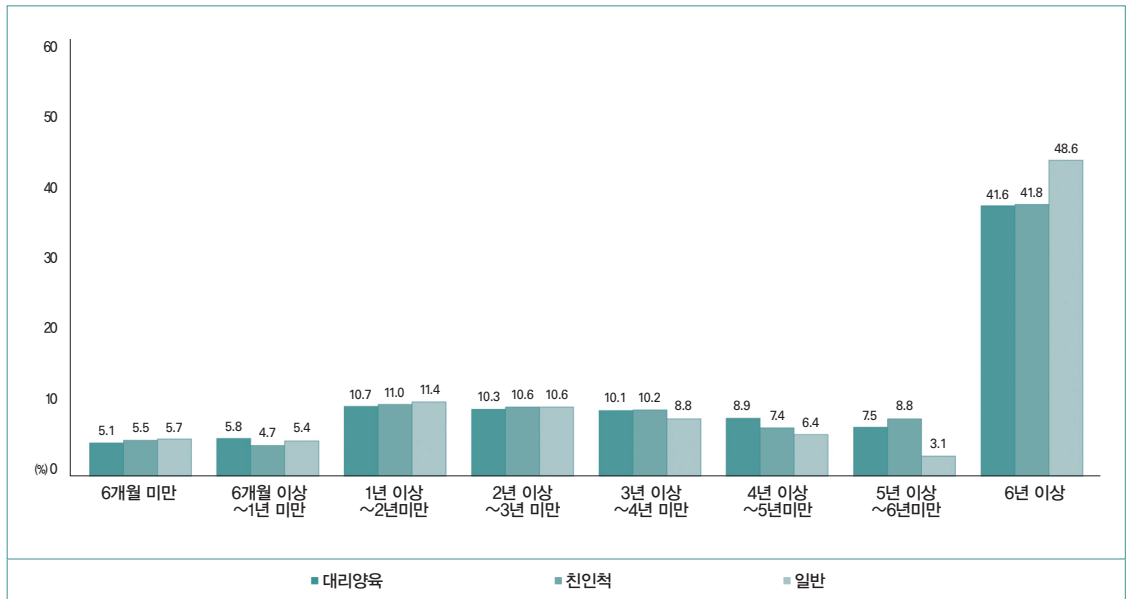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평균 위탁기간
계	12,907	678	704	1,399	1,341	1,297	1,078	965	5,445	5년 6개월
	100.0	5.3	5.5	10.8	10.4	10.0	8.3	7.5	42.2	
대리양육	8,594	439	495	921	882	871	768	642	3,576	5년 5개월
	100.0	5.1	5.8	10.7	10.3	10.1	8.9	7.5	41.6	
친인척	3,339	183	156	367	356	340	248	293	1,396	5년 6개월
	100.0	5.5	4.7	11.0	10.6	10.2	7.4	8.8	41.8	
일반	974	56	53	111	103	86	62	30	473	6년 1개월
	100.0	5.7	5.4	11.4	10.6	8.8	6.4	3.1	48.6	

〈표 3-6〉은 위탁아동의 위탁기간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평균 위탁기간은 5년 6개월 이고, 6년 이상 장기간 위탁된 아동이 42.2%, 1년 이상~2년 미만 10.8%, 2년 이상~3년 미만 10.4%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위탁유형에서 6년 이상 위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평균 위탁기간도 대리양육위탁 아동 5년 5개월, 친인척위탁아동 5년 6개월, 일반위탁아동 6년 1개월로 2015년에 비해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위탁유형별 위탁기간



〈그림 3-6〉을 통해 위탁유형별 위탁기간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 친인척위탁아동, 일반위탁아동 중 위탁기간이 6년 이상인 아동이 각각 41.6%, 41.8%,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위탁기간은 대리양육위탁아동 6개월 미만 5.1%, 친인척위탁아동 6개월 이상~1년 미만 4.7%, 일반위탁아동 5년 이상~6년 미만 3.1%였다.

일반위탁아동의 경우 〈그림 3-5〉의 위탁보호결정 시 위탁아동의 연령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이 대리양육·친인척 위탁아동의 연령에 비해 높지 않음에도 6년 이상 장기간 위탁보호 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높아 일반위탁아동 양육지원, 위탁부모의 법적 대리권 부여 등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표 3-7〉 가정위탁보호사유별 위탁기간

단위 : 명, %

구분	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평균 위탁기간
계	12,907	678	704	1,399	1,341	1,297	1,078	965	5,445	5년 6개월
	100.0	5.3	5.5	10.8	10.4	10.0	8.3	7.5	42.2	
부모 모두 사망	673	41	27	92	96	97	63	61	196	4년 8개월
	100.0	6.1	4.0	13.7	14.3	14.4	9.3	9.1	29.1	
부나 모의 사망	3,142	182	151	314	339	325	245	241	1,345	5년 8개월
	100.0	5.8	4.8	10.0	10.8	10.3	7.8	7.7	42.8	
별거/가출	3,428	130	150	329	284	309	282	221	1,723	6년 2개월
	100.0	3.8	4.4	9.6	8.3	9.0	8.2	6.4	50.3	
이혼	4,097	188	243	424	427	420	379	338	1,678	5년 4개월
	100.0	4.6	5.9	10.3	10.4	10.3	9.3	8.2	41.0	
부모수감	409	48	45	70	64	40	29	31	82	3년 8개월
	100.0	11.7	11.0	17.1	15.6	9.8	7.1	7.6	20.1	
실직·빈곤	138	1	6	12	10	3	4	14	88	7년 5개월
	100.0	0.7	4.4	8.7	7.2	2.2	2.9	10.1	63.8	
부모질병	197	26	11	13	10	11	12	10	104	5년 10개월
	100.0	13.2	5.6	6.6	5.1	5.6	6.1	5.1	52.7	
학대·방임	227	25	23	38	30	18	18	12	63	3년 11개월
	100.0	11.0	10.1	16.8	13.2	7.9	7.9	5.3	27.8	
미혼모(부) /혼외출생	314	23	22	37	40	40	32	26	94	5년 6개월
	100.0	7.3	7.0	11.8	12.7	12.7	10.2	8.3	30.0	
시설의뢰	84	3	7	16	15	8	5	2	28	4년 11개월
	100.0	3.6	8.3	19.0	17.9	9.5	6.0	2.4	33.3	
부모장애	70	3	5	13	9	12	6	7	15	4년 2개월
	100.0	4.3	7.1	18.6	12.9	17.1	8.6	10.0	21.4	
기타	128	8	14	41	17	14	3	2	29	3년 9개월
	100.0	6.3	10.9	32.0	13.3	10.9	2.3	1.6	22.7	

〈표 3-7〉은 위탁아동의 위탁보호사유별 위탁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위탁아동의 수가 많은 위탁사유 순으로 평균 위탁기간을 살펴보면 이혼 5년 4개월, 별거/가출 6년 2개월, 부나 모의 사망 5년 8개월, 부모 모두 사망 4년 8개월로 부나 모, 부모 모두의 부재 또는 가정해체로 인한 사유로 위탁된 아동이 대부분이며, 이 아동들의 위탁기간도 장기적으로 나타났다.

위탁사유 중 평균 위탁기간이 가장 긴 사유는 실직·빈곤으로 7년 5개월의 기간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짧은 평균 위탁기간이 나타는 사유는 부모수감이었다.

2) 신규위탁아동

■ 연도별 신규위탁아동 수

〈표 3-8〉 연도별 신규위탁아동 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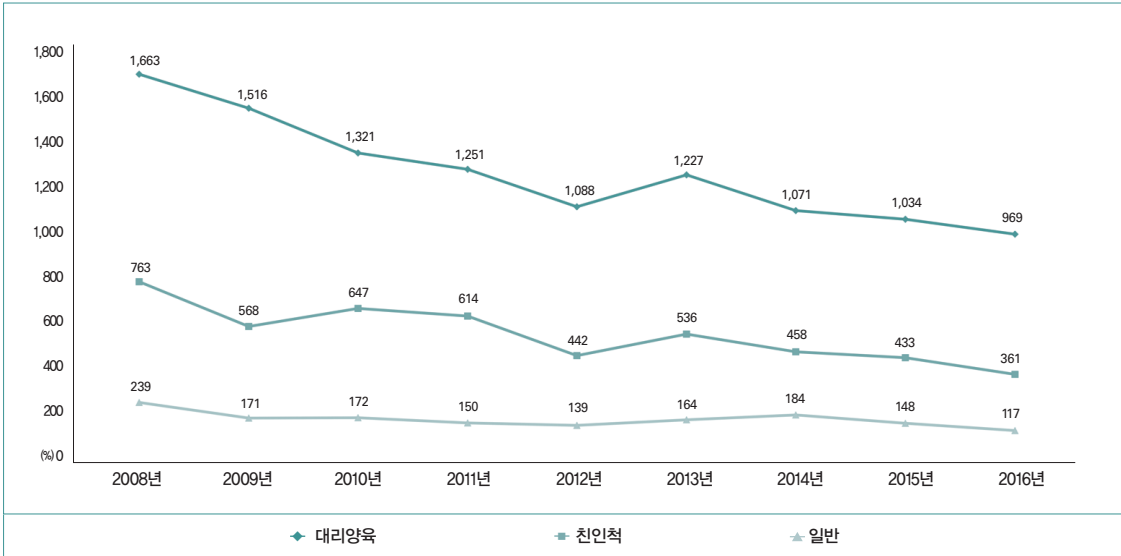
년도	구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2016년		1,447	969	361	117
		100.0	67.0	24.9	8.1
2015년		1,615	1,034	433	148
		100.0	64.0	26.8	9.2
2014년		1,713	1,071	458	184
		100.0	62.5	26.7	10.8
2013년		1,927	1,227	536	164
		100.0	63.7	27.8	8.5
2012년		1,669	1,088	442	139
		100.0	65.2	26.5	8.3
2011년		2,015	1,251	614	150
		100.0	62.1	30.5	7.4
2010년		2,140	1,321	647	172
		100.0	61.7	30.2	8.1
2009년		2,255	1,516	568	171
		100.0	67.2	25.2	7.6
2008년		2,665	1,663	763	239
		100.0	62.4	28.6	9.0

〈표 3-8〉은 연도별 신규위탁아동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2013년(전년대비 15.5% 증가)을 제외하고,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역시 신규위탁아동 수가 1,447명으로 전년대비 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의 경우에는 감소비율이 5.7%에 그친 반면 2016년에는 10.0% 이상의 감소율을 보여 가정위탁보호로 책정되는 아동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신규위탁아동의 위탁유형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만 3.0%p 상승하고 친인척위탁아동과 일반위탁아동은 각각 1.9%p,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016년 신규위탁아동 현황은 다른 센터로 사례이관되거나, 위탁가정이 변경된 아동 250명(대리양육위탁아동 90명, 친인척위탁아동 136명, 일반위탁아동 24명)을 신규아동 수에서 제외하고 집계함.

〈그림 3-7〉 연도별 신규위탁아동 수



■ 지역센터별 신규위탁아동 수

〈표 3-9〉 지역센터별 신규위탁아동 수

단위: 명, %

구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계	1,447	969	361	117
	100.0	67.0	24.9	8.1
서울	118	66	49	3
	100.0	55.9	41.5	2.6
부산	84	62	12	10
	100.0	73.8	14.3	11.9
대구	40	28	8	4
	100.0	70.0	20.0	10.0
인천	57	45	11	1
	100.0	78.9	19.3	1.8
광주	52	23	18	11
	100.0	44.2	34.6	21.2
대전	28	15	8	5
	100.0	53.6	28.6	17.8
울산	31	17	6	8
	100.0	54.8	19.4	25.8
경기	135	75	50	10
	100.0	55.6	37.0	7.4

구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경기북부	90	54	31	5
	100.0	60.0	34.4	5.6
강원	134	92	25	17
	100.0	68.6	18.7	12.7
충북	160	130	23	7
	100.0	81.2	14.4	4.4
충남	70	42	20	8
	100.0	60.0	28.6	11.4
전북	71	58	11	2
	100.0	81.7	15.5	2.8
전남	115	88	22	5
	100.0	76.5	19.1	4.4
경북	115	84	21	10
	100.0	73.0	18.3	8.7
경남	119	72	39	8
	100.0	60.5	32.8	6.7
제주	28	18	7	3
	100.0	64.3	25.0	10.7

〈표 3-9〉는 2016년 지역센터별 신규위탁아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신규위탁아동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 160명, 경기 135명, 강원 134명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 신규위탁아동 비율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의 경우 전북 81.7%, 충북 81.2%, 인천 78.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친인척위탁아동은 서울 41.5%, 경기 37.0%, 광주 34.6% 순이었다. 일반위탁아동은 울산 25.8%, 광주 21.2%, 대전 17.8% 순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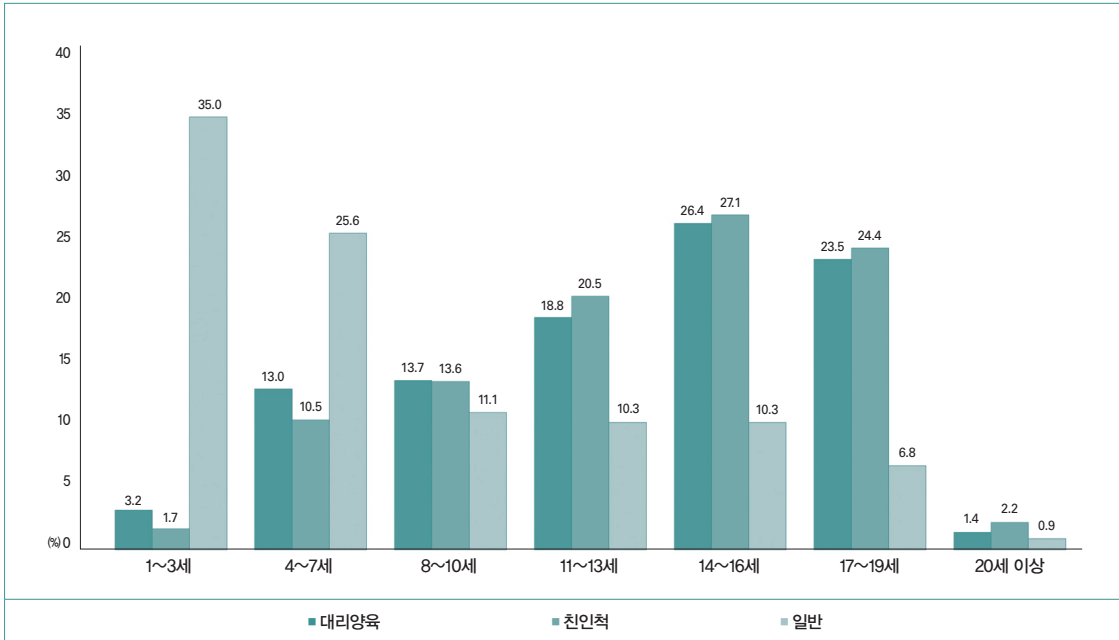
■ 신규위탁아동 성별 및 연령

〈표 3-10〉 신규위탁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 명, %

구분	계	성별		연령							평균 연령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계	1,447	726	721	78	194	195	268	366	324	22	12세
	100.0	50.2	49.8	5.4	13.4	13.5	18.5	25.3	22.4	1.5	
대리양육	969	508	461	31	126	133	182	256	228	13	13세
	100.0	52.4	47.6	3.2	13.0	13.7	18.8	26.4	23.5	1.4	
친인척	361	163	198	6	38	49	74	98	88	8	13세
	100.0	45.2	54.8	1.7	10.5	13.6	20.5	27.1	24.4	2.2	
일반	117	55	62	41	30	13	12	12	8	1	7세
	100.0	47.0	53.0	35.0	25.6	11.1	10.3	10.3	6.8	0.9	

〈그림 3-8〉 신규위탁아동 연령



〈표 3-10〉는 2015년 신규위탁아동의 성별 및 연령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신규위탁아동의 성별 분포는 남아가 726명(50.2%), 여아가 721명(49.8%)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약간 많기는 하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규위탁아동의 성별을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은 남아가 52.4%, 여아가 47.6%로 남아의 비율이 높았으나 친인척위탁아동과 일반위탁아동은 남아가 각각 45.2%, 47.0%, 여아가 각각 54.8%, 53.0%로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많았다.

2016년 신규위탁된 아동의 연령 분포는 14~16세 25.3%, 17~19세 22.4%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의 아동이 47.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다시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과 친인척위탁아동은 14세~16세 아동이 각각 26.4%, 27.1%로 나타났으나 일반위탁의 경우는 1세~3세 아동이 35.0%를 차지하여 일반위탁아동의 대부분은 영유아기에 보호배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규위탁아동의 전체 평균연령은 12세로 일반위탁아동이 7세로 가장 낮은 반면, 대리양육위탁아동 및 친인척위탁아동은 13세로 전체 평균연령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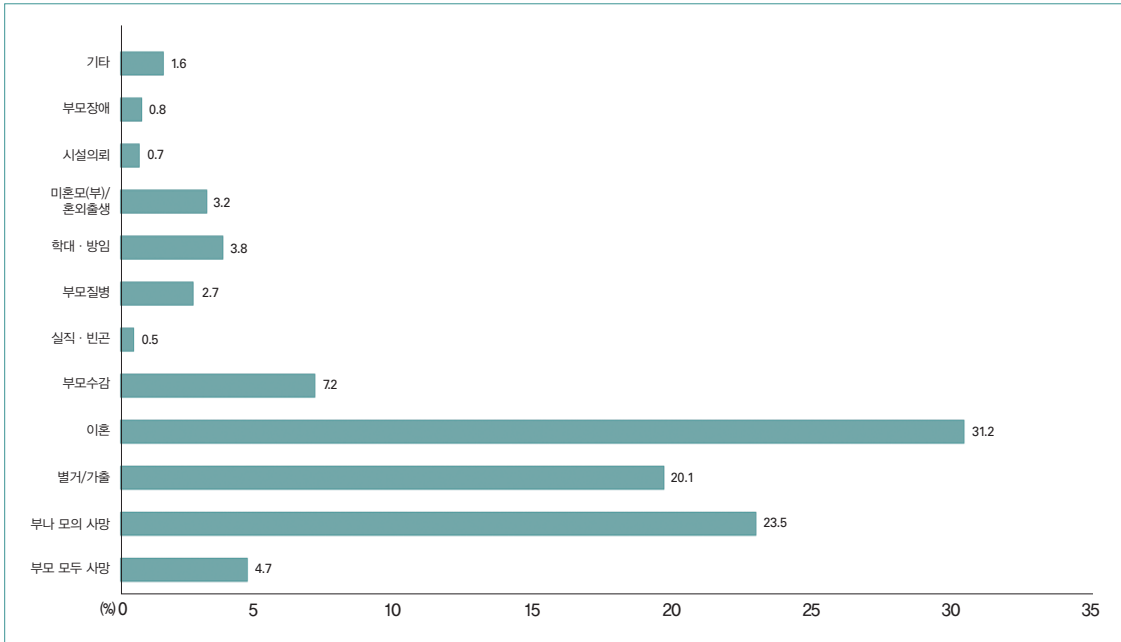
■ 신규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사유

〈표 3-11〉 신규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사유

단위: 명, %

구분	계	부모 모두 사망	부나 모의 사망	별거/가출	이혼	부모 수감	실직·빈곤	부모 질병	학대·방임	미혼모(부)/혼외출생	시설 의뢰	부모 장애	기타
계	1,447	68	341	291	451	104	7	39	55	46	10	12	23
	100.0	4.7	23.5	20.1	31.2	7.2	0.5	2.7	3.8	3.2	0.7	0.8	1.6
대리양육	969	43	213	225	348	63	3	22	19	22	0	0	11
	100.0	4.4	22.0	23.2	35.9	6.5	0.3	2.3	2.0	2.3	0.0	0.0	1.1
친인척	361	25	114	59	80	30	2	10	19	6	0	7	9
	100.0	6.9	31.6	16.3	22.2	8.3	0.5	2.8	5.3	1.7	0.0	1.9	2.5
일반	117	0	14	7	23	11	2	7	17	18	10	5	3
	100.0	0.0	12.0	6.0	19.6	9.4	1.7	6.0	14.5	15.4	8.5	4.3	2.6

〈그림 3-9〉 신규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사유



〈표 3-11〉은 신규위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사유를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신규위탁아동의 위탁사유를 살펴보면, 부모의 이혼이 31.2%, 부나 모의 사망이 23.5%, 부모의 별거/가출이 2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규위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사유 중 이혼이 전체 위탁유형에서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일부 가정위탁보호사유 중 위탁유형별로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위탁아동의 경우 미혼모(부)/혼외출생이 15.4%, 학대·방임 14.5% 등 다른 위탁유형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 가정위탁보호사유가 높게 나타나 위탁유형별 가정위탁보호사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가정위탁보호사유별 위탁기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혼, 부나 모의 사망, 별거/가출 등 부모 부재와 가정해체로 인한 사유로 위탁된 아동의 경우 위탁기간도 장기화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6년에도 위탁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가정위탁보호사유를 가진 아동들이 많이 가정위탁보호로 유입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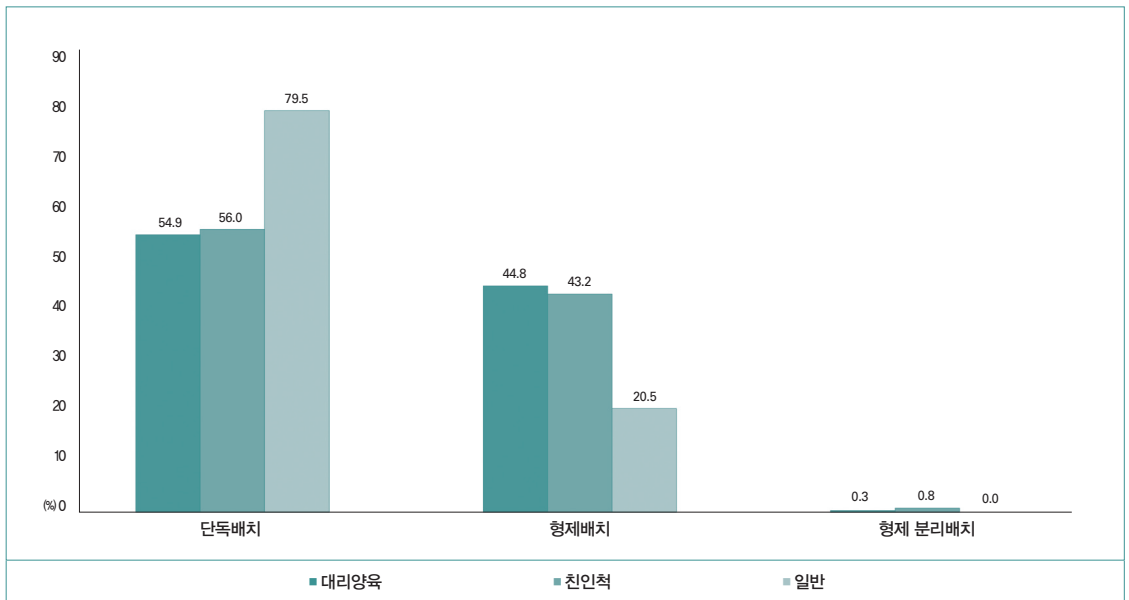
■ 신규위탁아동 형제배치

〈표 3-12〉 신규위탁아동 형제배치

단위: 명, %

구분	계	단독배치	형제배치	형제 분리배치
계	1,447	827	614	6
	100.0	57.2	42.4	0.4
대리양육	969	532	434	3
	100.0	54.9	44.8	0.3
친인척	361	202	156	3
	100.0	56.0	43.2	0.8
일반	117	93	24	0
	100.0	79.5	20.5	0.0

〈그림 3-10〉 신규위탁아동 형제배치



〈표 3-12〉는 신규위탁아동의 형제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신규위탁아동 중 형제없이 혼자 의뢰되어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단독배치가 57.2%, 형제가 함께 의뢰되어 형제가 같은 가정에 배치된 아동은 42.4%, 형제가 함께 의뢰되었으나 형제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가정에 배치된 아동은 0.4%로 나타났다.

형제가 함께 의뢰되었을 경우, 대부분이 동일한 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지만 형제가 함께 의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 비율은 대리양육위탁아동이 0.3%, 친인척위탁아동이 0.8%였으나, 일반위탁아동은 형제 분리배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학대피해아동의 신규위탁

〈표 3-13〉 학대피해아동의 신규위탁

단위: 명, %

구분	계	위탁유형			성별		연령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계	55	19	19	17	24	31	7	11	9	12	8	8
	100.0	34.5	34.5	31.0	43.6	56.4	12.7	20.0	16.5	21.8	14.5	14.5
신체학대	16	8	6	2	5	11	3	3	0	3	5	2
	100.0	50.0	37.5	12.5	31.3	68.7	18.8	18.8	0.0	18.8	31.2	12.4
방임 및 유기	14	4	5	5	8	6	2	3	4	2	1	2
	100.0	28.6	35.7	35.7	57.1	42.9	14.3	21.4	28.6	14.3	7.1	14.3
정서학대	4	1	2	1	2	2	1	1	1	0	1	0
	100.0	25.0	50.0	25.0	50.0	50.0	25.0	25.0	25.0	0.0	25.0	0.0
중복학대	20	5	6	9	9	11	1	4	3	7	1	4
	100.0	25.0	30.0	45.0	45.0	55.0	5.0	20.0	15.0	35.0	5.0	20.0
성학대	1	1	0	0	0	1	0	0	1	0	0	0
	100.0	10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0.0

〈표 3-13〉은 2016년 신규로 가정위탁보호 된 학대피해아동의 위탁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신규위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사유가 학대방임인 아동 55명의 위탁유형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이 19명, 친인척위탁아동이 19명, 일반위탁아동이 17명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가정위탁보호 된 학대피해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43.6%(24명), 여아가 56.4%(31명)으로 여아가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11~13세 21.8%, 4~7세 20.0%로 나타나 14~19세가 대부분을 차지한 2015년에 비해 영유아기 아동의 학대방임으로 인한 위탁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다른 학대를 동반한 중복학대가 20명, 신체학대 16명, 방임 및 유기 14명, 정서학대 4명, 성학대 1명으로 나타났다.

3) 보호연장아동

■ 지역센터별 보호연장아동 수

〈표 3-14〉 지역센터별 보호연장아동 수

단위: 명, %

구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계	2,041	1,343	631	67
	100.0	65.8	30.9	3.3
서울	206	129	71	6
	100.0	62.6	34.5	2.9
부산	149	87	57	5
	100.0	58.4	38.2	3.4
대구	48	28	17	3
	100.0	58.3	35.4	6.3
인천	111	60	48	3
	100.0	54.1	43.2	2.7
광주	56	33	21	2
	100.0	58.9	37.5	3.6
대전	43	24	17	2
	100.0	55.8	39.5	4.7
울산	39	20	15	4
	100.0	51.3	38.5	10.2
경기	216	130	81	5
	100.0	60.2	37.5	2.3
경기북부	102	60	34	8
	100.0	58.8	33.3	7.9
강원	220	171	44	5
	100.0	77.7	20.0	2.3
충북	63	42	18	3
	100.0	66.7	28.6	4.7
충남	72	53	18	1
	100.0	73.6	25.0	1.4
전북	129	93	29	7
	100.0	72.1	22.5	5.4
전남	198	156	39	3
	100.0	78.8	19.7	1.5
경북	135	95	36	4
	100.0	70.4	26.7	2.9
경남	197	119	72	6
	100.0	60.4	36.5	3.1
제주	57	43	14	0
	100.0	75.4	24.6	0.0

〈표 3-14〉는 지역센터별 보호연장아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보호연장아동 수는 2,041명으로 전년 1,873명에 비해 9.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보호연장아동 수는 강원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16명, 서울이 206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연장아동 위탁유형비율은 대리양육위탁아동 65.8%, 친인척위탁아동 30.9%, 일반위탁아동 3.3%로, 전체 가정위탁 보호 아동비율인 대리양육위탁아동 66.6%, 친인척위탁아동 25.9%, 일반위탁아동 7.5%와는 차이를 보였다.

■ 보호연장아동 성별 및 연령

〈표 3-15〉 보호연장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 명, %

구분	계	성별		연령				
		남	여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이상
계	2,041	770	1,271	95	924	571	285	166
	100.0	37.7	62.3	4.6	45.3	28.0	14.0	8.1
대리양육	1,343	526	817	64	616	393	168	102
	100.0	39.2	60.8	4.8	45.9	29.2	12.5	7.6
친인척	631	217	414	24	283	160	107	57
	100.0	34.4	65.6	3.8	44.8	25.4	17.0	9.0
일반	67	27	40	7	25	18	10	7
	100.0	40.3	59.7	10.5	37.3	26.9	14.9	10.4

〈표 3-15〉는 보호연장아동 성별 및 연령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보호연장아동의 성별은 여아가 1,271명(62.3%), 남아가 770명(37.7%)으로 성별에 따른 큰 격차를 보였다. 가정위탁보호책임 시 성별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연장 결정시 성별이 주는 영향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연령별 보호연장아동 비율은 20세가 45.3%로 가장 많았으며, 21세 28.0%, 22세 14.0%, 23세 이상 8.1% 순이었다.

■ 보호연장사유

〈표 3-16〉 보호연장사유

단위 : 명, %

구분	계	대학진학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교육중	20세 미만으로 학원에서 교육중	25세 미만으로 지능지수가 71~84인 자	25세 미만으로 장애	25세 미만으로 질병	취업준비 등으로 1년 연장	복학	기타
계	2,041	1,767	39	21	25	45	8	88	13	35
	100.0	86.6	1.9	1.0	1.2	2.2	0.4	4.3	0.7	1.7
대리양육	1,343	1,160	25	11	15	29	8	61	6	28
	100.0	86.4	1.9	0.8	1.1	2.2	0.6	4.5	0.4	2.1
친인척	631	558	13	7	9	9	0	22	7	6
	100.0	88.4	2.1	1.1	1.4	1.4	0.0	3.5	1.1	1.0
일반	67	49	1	3	1	7	0	5	0	1
	100.0	73.1	1.5	4.5	1.5	10.4	0.0	7.5	0.0	1.5

〈표 3-16〉은 보호연장아동의 연장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보호연장사유로는 대학진학이 1,767명(8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보호연장아동 대부분이 대학진학 사유로 보호연장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아동은 대학진학이 각각 86.4%, 88.4%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취업준비 등으로 1년 연장이 각각 4.5%, 3.5%로 나타났다. 일반위탁아동은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아동과 동일하게 대학진학이 7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25세 미만으로 장애가 10.4%, 취업준비 등으로 1년 연장 7.5% 순이었다.

■ 보호연장 배치연도 및 기간

〈표 3-17〉 보호연장 배치연도 및 기간

단위 : 명, %

구분	계	배치연도				기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계	2,041	133	280	619	1,009	28	981	619	280	133
	100.0	6.5	13.7	30.3	49.5	1.4	48.1	30.3	13.7	6.5
대리양육	1,343	85	162	430	666	15	651	430	162	85
	100.0	6.3	12.1	32.0	49.6	1.1	48.5	32.0	12.1	6.3
친인척	631	42	111	171	307	10	297	171	111	42
	100.0	6.7	17.6	27.1	48.6	1.6	47.0	27.1	17.6	6.7
일반	67	6	7	18	36	3	33	18	7	6
	100.0	9.0	10.4	26.9	53.7	4.5	49.2	26.9	10.4	9.0

〈표 3-17〉은 보호연장 배치연도 및 기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당해년도 보호연장 배치 아동은 2016년 49.5%로 2015년 57.7%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연장기간은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48.1%로 가장 높고, 1년 이상~2년 미만이 30.3%, 2년 이상~3년 미만이 13.7%로 나타났다.

■ 신규보호연장이동 보호연장사유

〈표 3-18〉 신규보호연장이동 보호연장사유

단위 : 명, %

구분	계	대학진학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교육중	20세 미만으로 학원에서 교육중	25세 미만으로 자능지수가 71~84인 자	25세 미만으로 장애	25세 미만으로 질병	취업준비 등으로 1년 연장	복학	기타
계	1,009	838	21	19	9	11	2	75	13	21
	100.0	83.0	2.1	1.9	0.9	1.1	0.2	7.4	1.3	2.1
대리양육	666	555	14	10	5	6	2	51	6	17
	100.0	83.3	2.1	1.5	0.7	0.9	0.3	7.7	0.9	2.6
친인척	307	257	6	6	4	4	0	20	7	3
	100.0	83.7	2.0	2.0	1.3	1.3	0.0	6.5	2.3	0.9
일반	36	26	1	3	0	1	0	4	0	1
	100.0	72.2	2.8	8.3	0.0	2.8	0.0	11.1	0.0	2.8

〈표 3-18〉은 2016년 보호연장이 결정된 신규보호연장이동의 연장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높게 나타난 보호연장사유는 대학진학 83.0%로 이는 전체 보호연장이동의 보호연장사유와 동일하다.

대학진학 사유 다음으로는 취업준비 등으로 1년 연장 7.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중 2.1%, 기타 2.1%, 20세 미만으로 학원에서 교육중 1.9%로 전체 보호연장아동의 보호연장사유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16년에는 대학진학, 취업준비, 직업훈련, 교육이 신규보호연장아동의 주 보호연장사유로 나타났으며 보호연장기간 동안 아동의 자립지원과 더불어 보호종료 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자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신규보호연장아동 위탁유형별 위탁기간

〈표 3-19〉 신규보호연장아동 위탁유형별 위탁기간

단위 : 명, %

구분	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1,009	11	137	228	384	249
	100.0	1.1	13.6	22.6	38.0	24.7
대리양육	666	7	79	142	269	169
	100.0	1.0	11.9	21.3	40.4	25.4
친인척	307	3	55	80	106	63
	100.0	1.0	17.9	26.1	34.5	20.5
일반	36	1	3	6	9	17
	100.0	2.8	8.3	16.7	25.0	47.2

〈표 3-19〉는 신규보호연장아동의 위탁기간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상기의 위탁기간은 위탁기간과 보호연장기간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신규보호연장아동의 위탁기간은 6년 이상~10년 미만 38.0%, 10년 이상 24.7%, 3년 이상~6년 미만 22.6%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 및 친인척보호연장아동의 위탁기간은 6년 이상~10년 미만이 각각 40.4%, 34.5%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보호연장아동의 위탁기간은 10년 이상이 47.2%로 가장 많았다.

4)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 연도별 종결아동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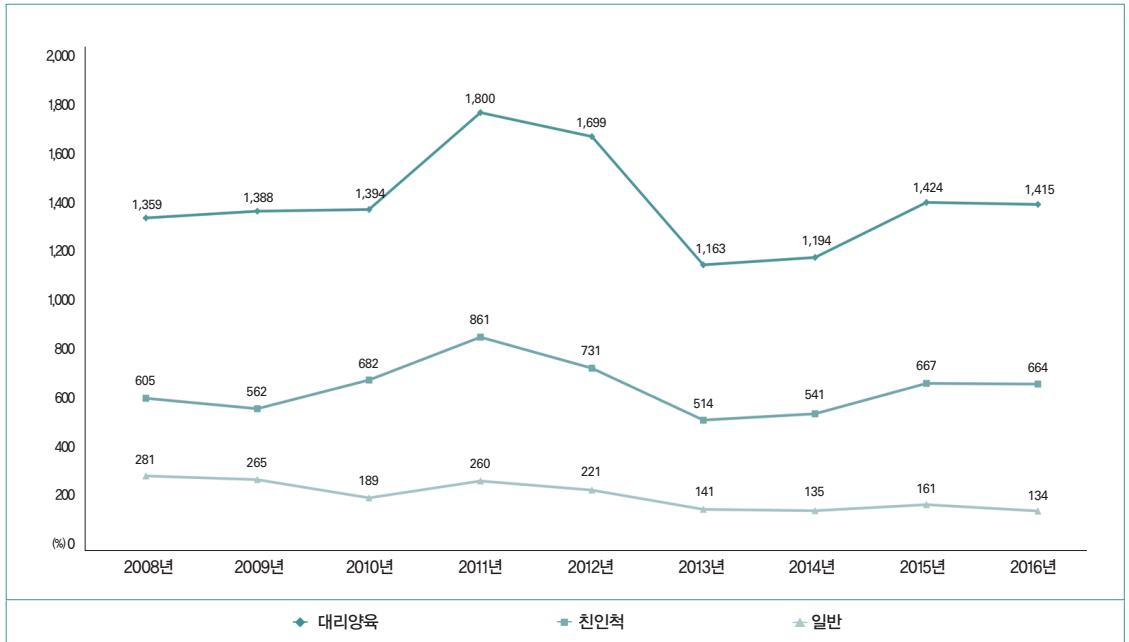
〈표 3-20〉 연도별 종결아동 수

단위 : 명, %

구분 년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2016년	2,213	1,415	664	134
	100.0	63.9	30.0	6.1
2015년	2,252	1,424	667	161
	100.0	63.2	29.6	7.2
2014년	1,870	1,194	541	135
	100.0	63.9	28.9	7.2
2013년	1,818	1,163	514	141
	100.0	64.0	28.3	7.7
2012년	2,651	1,699	731	221
	100.0	64.1	27.6	8.3
2011년	2,921	1,800	861	260
	100.0	61.6	29.5	8.9
2010년	2,265	1,394	682	189
	100.0	61.6	30.1	8.3
2009년	2,215	1,388	562	265
	100.0	62.7	25.4	11.9
2008년	2,245	1,359	605	281
	100.0	60.5	27.0	12.5

1) 2016년 종결아동 현황은 전출로 인해 다른 센터에 사례 이관된 아동 180명(대리양육위탁아동 108명, 친인척위탁아동 58명, 일반위탁아동 14명)과 위탁가정이 변경된 133명(대리양육위탁아동 73명, 친인척위탁아동 41명, 일반위탁아동 19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정위탁보호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총 313명을 종결 위탁아동 수에서 제외함.

〈그림 3-11〉 연도별 종결아동 수



〈표 3-20〉은 연도별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6년 종결아동 수는 2,213명으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 종결아동 비율은 대리양육위탁아동이 63.9%, 친인척위탁아동이 30.0%, 일반위탁아동이 6.1%로 2015년 대비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아동 비율은 높아지고 일반위탁아동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 지역센터별 종결아동 수

〈표 3-21〉 지역센터별 종결아동 수

단위 : 명, %

구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계	2,213	1,415	664	134
	100.0	63.9	30.0	6.1
서울	180	102	67	11
	100.0	56.7	37.2	6.1
부산	158	85	64	9
	100.0	53.8	40.5	5.7
대구	46	22	19	5
	100.0	47.8	41.3	10.9
인천	128	72	40	16
	100.0	56.2	31.3	12.5
광주	44	26	18	0
	100.0	59.1	40.9	0.0
대전	39	13	18	8
	100.0	33.3	46.2	20.5
울산	41	29	9	3
	100.0	70.7	22.0	7.3
경기	253	147	98	8
	100.0	58.1	38.7	3.2
경기북부	109	66	38	5
	100.0	60.5	34.9	4.6
강원	212	157	46	9
	100.0	74.1	21.7	4.2
충북	107	79	16	12
	100.0	73.8	15.0	11.2
충남	114	69	36	9
	100.0	60.5	31.6	7.9
전북	134	87	35	12
	100.0	64.9	26.1	9.0
전남	226	182	41	3
	100.0	80.5	18.2	1.3
경북	175	120	43	12
	100.0	68.6	24.6	6.8
경남	199	122	65	12
	100.0	61.3	32.7	6.0
제주	48	37	11	0
	100.0	77.1	22.9	0.0

〈표 3-21〉은 지역센터별 종결아동 수를 나타낸 것이다. 종결아동 수는 경기도가 2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226명, 강원 212명, 경남 199명, 서울 180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종결아동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전 39명, 울산 41명, 광주 44명이었다.

지역별 종결아동의 위탁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은 전남이 80.5%, 친인척위탁아동과 일반위탁아동은 대전이 각각 46.2%, 20.5%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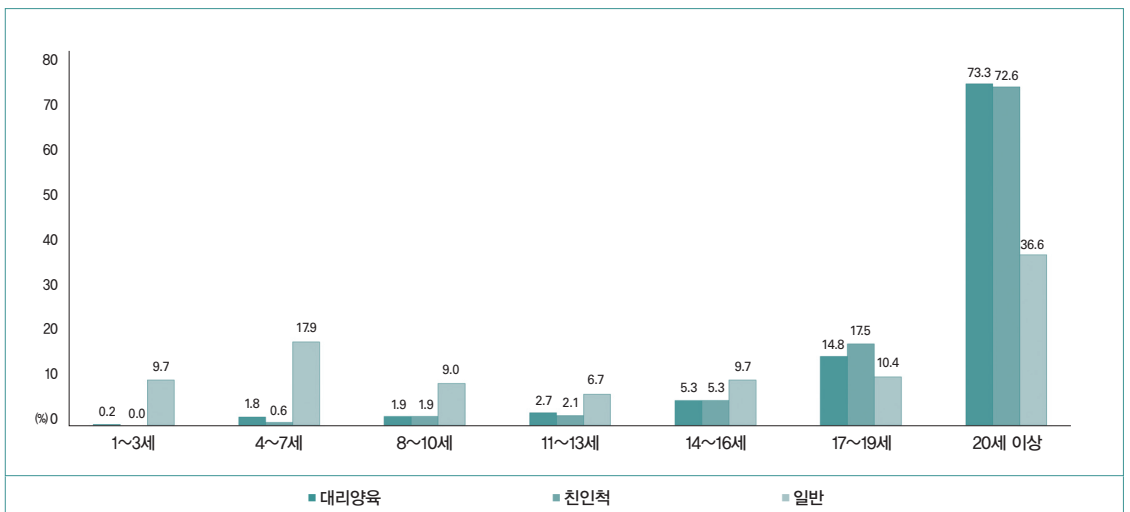
■ 종결아동 성별 및 연령

〈표 3-22〉 종결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 명, %

구분	계	성별		연령							평균 연령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계	2,213	1,267	946	16	54	52	61	123	339	1,568	19세
	100.0	57.3	42.7	0.7	2.4	2.3	2.8	5.6	15.3	70.9	
대리양육	1,415	820	595	3	26	27	38	75	209	1,037	19세
	100.0	58.0	42.0	0.2	1.8	1.9	2.7	5.3	14.8	73.3	
친인척	664	375	289	0	4	13	14	35	116	482	20세
	100.0	56.5	43.5	0.0	0.6	1.9	2.1	5.3	17.5	72.6	
일반	134	72	62	13	24	12	9	13	14	49	14세
	100.0	53.7	46.3	9.7	17.9	9.0	6.7	9.7	10.4	36.6	

〈그림 3-12〉 종결아동 연령



〈표 3-22〉는 종결아동의 성별 및 연령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종결아동 중 남아가 1,267명(57.3%), 여아가 946명(42.7%)으로 남아의 종결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종결아동 중 20세 이상이 70.9%로 거의 대부분의 위탁아동들이 20세 이상 연령에서 가정위탁보호를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종결아동 연령의 상승은 보호연장 도입 후 해당 혜택을 누리는 위탁아동이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위탁유형별로는 대리양육위탁 종결아동은 평균연령이 19세로 전체 종결아동 평균연령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20세 이상 아동이 73.3%로 가장 많았다. 친인척위탁 종결아동의 평균연령은 20세였으며, 일반위탁 종결아동의 평균연령은 14세로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 종결아동에 비해 낮았으나 20세 이상이 36.6%로 2015년 26.7%에 비해 증가했으며, 4~7세에 종결하는 아동비율도 17.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위탁종결사유

〈표 3-23〉 가정위탁종결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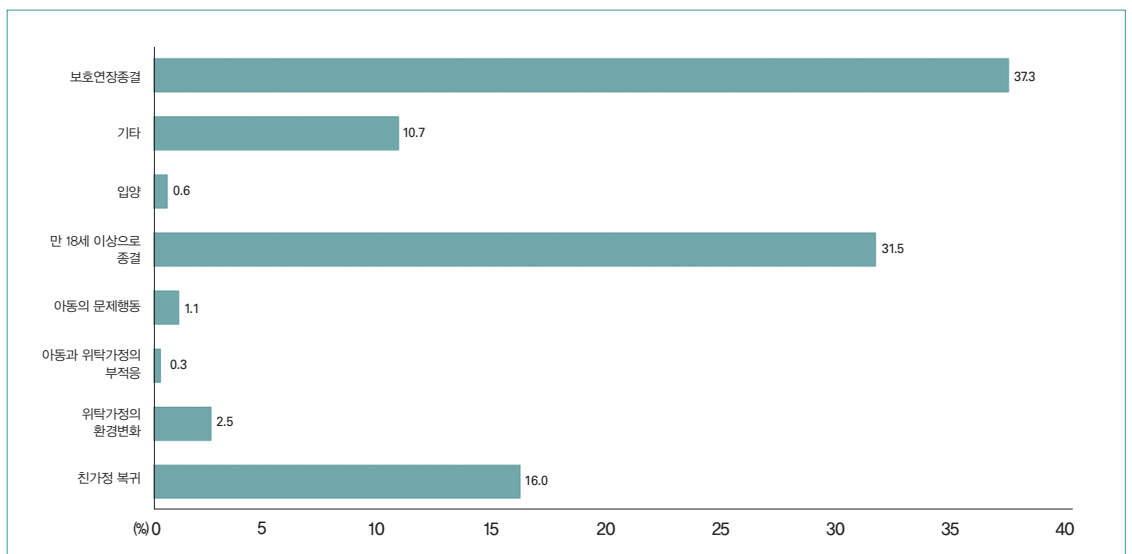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친가정 복귀	위탁가정의 환경변화	위탁가정과 친가정의 문제	아동과 위탁가정의 부적응	아동의 문제행동	만 18세 이상으로 종결	입양	기타	보호연장 종결
계	2,213	355	56	0	7	25	696	12	236	826
	100.0	16.0	2.5	0.0	0.3	1.1	31.5	0.6	10.7	37.3
대리양육	1,415	221	37	0	0	17	468	1	142	529
	100.0	15.6	2.6	0.0	0.0	1.2	33.1	0.1	10.0	37.4
친인척	664	83	15	0	5	4	209	1	79	268
	100.0	12.5	2.3	0.0	0.7	0.6	31.5	0.1	11.9	40.4
일반	134	51	4	0	2	4	19	10	15	29
	100.0	38.0	3.0	0.0	1.5	3.0	14.2	7.5	11.2	21.6

〈표 3-23〉은 위탁유형별 종결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종결아동 중 보호연장종결로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37.3%로 가장 많아 종결아동의 평균연령이 19세로 나타난 것과 연관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만 18세 이상으로 종결이 31.5%, 친가정 복귀가 16.0%로 그 뒤를 이었다.

2015년에는 만 18세 이상으로 종결이 가장 높고 보호연장종결이 두 번째로 높은 사유였으나, 2016년에는 위탁아동의 연령 상승과 동반하여 종결사유도 뒤바뀌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3-13〉 가정위탁종결사유



■ 종결사유에 따른 성별 및 연령

〈표 3-24〉 종결사유에 따른 성별 및 연령

단위 : 명, %

구분	계	성별		연령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계	2,213	1,267	946	16	54	52	61	123	339	1,568
	100.0	57.3	42.7	0.7	2.4	2.3	2.8	5.6	15.3	70.9
친가정 복귀	355	176	179	13	39	38	48	82	103	32
	100.0	49.6	50.4	3.7	11.0	10.7	13.5	23.1	29.0	9.0
위탁가정의 환경변화	56	28	28	1	2	4	4	7	24	14
	100.0	50.0	50.0	1.8	3.6	7.1	7.1	12.5	42.9	25.0
아동과 위탁가정의 부적응	7	3	4	0	0	0	1	4	2	0
	100.0	42.9	57.1	0.0	0.0	0.0	14.3	57.1	28.6	0.0
아동의 문제행동	25	16	9	0	0	0	0	5	20	0
	100.0	64.0	36.0	0.0	0.0	0.0	0.0	20.0	80.0	0.0
만 18세 이상으로 종결	696	412	284	0	0	0	0	0	128	568
	100.0	59.2	40.8	0.0	0.0	0.0	0.0	0.0	18.4	81.6
입양	12	7	5	2	6	3	1	0	0	0
	100.0	58.3	41.7	16.7	50.0	25.0	8.3	0.0	0.0	0.0
기타	236	134	102	0	7	7	7	25	54	136
	100.0	56.8	43.2	0.0	3.0	3.0	3.0	10.6	22.8	57.6
보호연장종결	826	491	335	0	0	0	0	0	8	818
	100.0	59.4	40.6	0.0	0.0	0.0	0.0	0.0	1.0	99.0

〈표 3-24〉는 종결사유에 따른 아동의 성별 및 연령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종결사유 중 성별을 기준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남아 64.0%, 여아 36.0%의 비율로 나타나 28.0%p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종결되는 경우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17~19세가 80.0%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연령대의 아동과 위탁부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결사유 중 입양의 경우 영유아 및 취학 전 연령의 아동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친가정 복귀는 전 연령에서 고루 나타났다.

■ 종결사유별 위탁사유

〈표 3-25〉 종결사유별 위탁사유

단위 : 명, %

구분	계	부모 모두 사망	부나 모의 사망	별거/ 가출	이혼	부모 수감	실직· 빈곤	부모 질병	학대· 방임	미혼모(부) /혼외출생	시설 의뢰	부모 장애	기타
계	2,213	95	582	570	709	83	23	38	39	36	9	11	18
	100.0	4.3	26.3	25.8	32.0	3.8	1.0	1.7	1.8	1.6	0.4	0.5	0.8
친가정 복귀	355	0	29	88	112	49	9	18	27	13	0	5	5
	100.0	0.0	8.2	24.8	31.5	13.8	2.5	5.1	7.6	3.7	0.0	1.4	1.4
위탁가정의 환경변화	56	2	14	12	20	3	1	2	0	0	1	1	0
	100.0	3.6	25.0	21.4	35.7	5.3	1.8	3.6	0.0	0.0	1.8	1.8	0.0
아동과 위탁가정의 부적응	7	0	2	1	1	2	0	0	0	0	0	1	0
	100.0	0.0	28.6	14.3	14.3	28.5	0.0	0.0	0.0	0.0	0.0	14.3	0.0
아동의 문제행동	25	0	3	6	12	1	0	0	0	0	2	0	1
	100.0	0.0	12.0	24.0	48.0	4.0	0.0	0.0	0.0	0.0	8.0	0.0	4.0
만 18세 이상으로 종결	696	41	201	188	229	6	4	9	2	8	3	1	4
	100.0	5.9	28.9	27.0	32.9	0.9	0.6	1.3	0.3	1.1	0.4	0.1	0.6
입양	12	1	0	3	0	0	0	0	2	4	2	0	0
	100.0	8.3	0.0	25.0	0.0	0.0	0.0	0.0	16.7	33.3	16.7	0.0	0.0
기타	236	10	68	57	71	9	3	3	3	4	1	2	5
	100.0	4.2	28.8	24.2	30.1	3.8	1.3	1.3	1.3	1.7	0.4	0.8	2.1
보호연장종결	826	41	265	215	264	13	6	6	5	7	0	1	3
	100.0	5.0	32.1	26.0	32.0	1.6	0.7	0.7	0.6	0.8	0.0	0.1	0.4

〈표 3-25〉는 종결아동의 종결사유별 위탁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친가정 복귀, 위탁가정의 환경변화, 아동의 문제행동, 만 18세 이상으로 종결, 기타의 사유로 종결된 아동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위탁사유를 살펴보면 부모의 이혼으로 각각 31.5%, 35.7%, 48.0%, 32.9%, 30.1%였다.

아동과 위탁가정의 부적응, 보호연장종결의 사유로 종결된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난 위탁사유는 부나 모의 사망으로 각각 28.6%, 32.1%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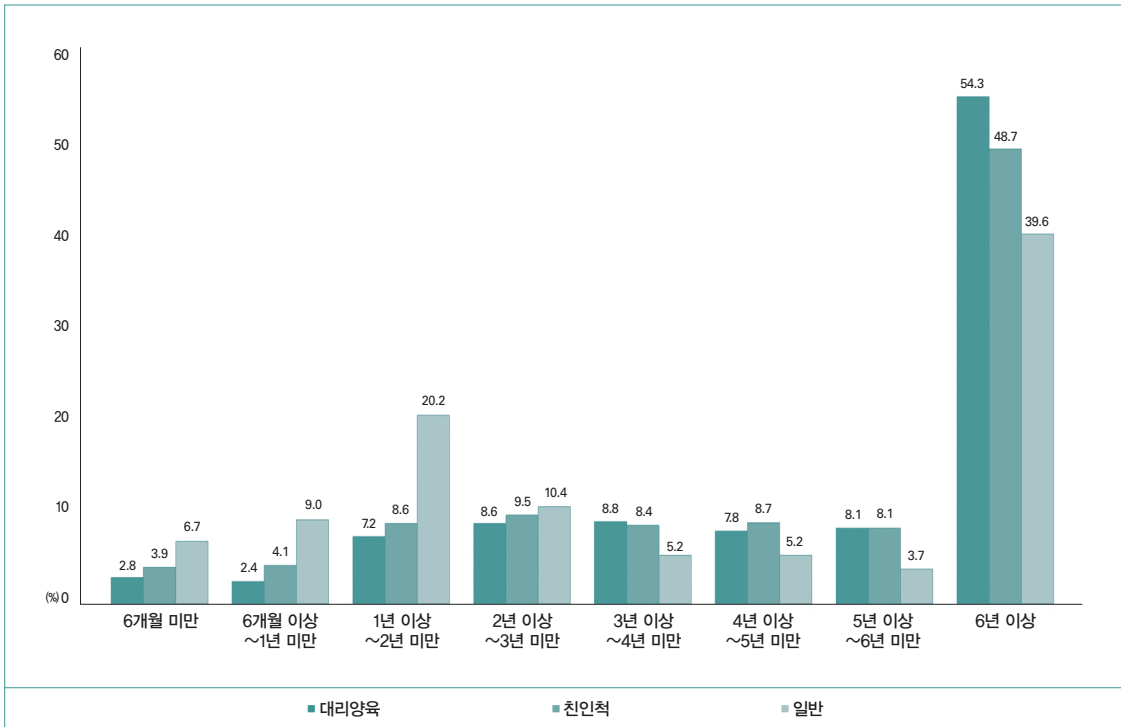
■ 종결아동유형별 위탁기간

〈표 3-26〉 종결아동유형별 위탁기간

단위 : 명, %

구분	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평균 위탁기간
계	2,213	74	73	186	198	188	175	174	1,145	6년 5개월
	100.0	3.4	3.3	8.4	8.9	8.5	7.9	7.9	51.7	
대리양육	1,415	39	34	102	121	125	110	115	769	6년 7개월
	100.0	2.8	2.4	7.2	8.6	8.8	7.8	8.1	54.3	
친인척	664	26	27	57	63	56	58	54	323	6년 4개월
	100.0	3.9	4.1	8.6	9.5	8.4	8.7	8.1	48.7	
일반	134	9	12	27	14	7	7	5	53	5년 4개월
	100.0	6.7	9.0	20.2	10.4	5.2	5.2	3.7	39.6	

〈그림 3-14〉 종결아동유형별 위탁기간



〈표 3-26〉은 종결아동의 위탁유형별 위탁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종결아동의 평균 위탁기간이 6년 5개월로 2015년 6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위탁아동은 6년 7개월, 친인척위탁아동은 6년 4개월로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아동은 6년 이상 위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위탁아동의 경우는 평균 5년 4개월로 조사됐으나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아동 위탁기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종결아동위탁유형별 위탁기간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 친인척위탁아동, 일반위탁아동 모두 6년 이상 위탁되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리양육위탁아동의 경우는 3년 이상~4년 미만인 8.8%, 친인척위탁아동은 2년 이상~3년 미만 9.5%, 일반위탁아동은 1년 이상~2년 미만이 20.2%로 높게 조사되어 대리양육위탁아동, 친인척위탁아동, 일반위탁아동 순으로 위탁기간이 짧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종결사유별 위탁기간

〈표 3-27〉 종결사유별 위탁기간

단위 : 명, %

구분	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평균 위탁기간
계	2,213	74	73	186	198	188	175	174	1,145	6년 5개월
	100.0	3.4	3.3	8.4	8.9	8.5	7.9	7.9	51.7	
친가정 복귀	355	47	32	72	37	32	22	18	95	3년 10개월
	100.0	13.2	9.0	20.3	10.4	9.0	6.2	5.1	26.8	
위탁가정의 환경변화	56	1	5	5	14	4	3	2	22	5년 4개월
	100.0	1.8	8.9	8.9	25.0	7.1	5.4	3.6	39.3	
아동과 위탁 가정의 부적응	7	2	3	1	0	0	0	0	1	1년 5개월
	100.0	28.6	42.8	14.3	0.0	0.0	0.0	0.0	14.3	
아동의 문제행동	25	3	4	3	3	1	1	0	10	4년 8개월
	100.0	12.0	16.0	12.0	12.0	4.0	4.0	0.0	40.0	
만 18세 이상으로 종결	696	9	14	55	71	63	53	64	367	6년 7개월
	100.0	1.3	2.0	7.9	10.2	9.1	7.6	9.2	52.7	
입양	12	3	1	2	2	0	2	1	1	2년 8개월
	100.0	25.0	8.3	16.7	16.7	0.0	16.7	8.3	8.3	
기타	236	7	10	26	18	21	19	13	122	6년 2개월
	100.0	3.0	4.2	11.0	7.6	8.9	8.1	5.5	51.7	
보호연장종결	826	2	4	22	53	67	75	76	527	7년 8개월
	100.0	0.2	0.5	2.7	6.4	8.1	9.1	9.2	63.8	

〈표 3-27〉은 종결아동의 종결사유별 위탁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 위탁기간이 5년 이상인 종결사유는 위탁가정의 환경변화, 만 18세 이상으로 종결, 기타, 보호연장종결로 조사됐다.

반면 친가정 복귀, 아동과 위탁가정의 부적응, 입양은 각각 3년 10개월, 1년 5개월, 2년 8개월로 비교적 짧게 나타났다. 이는 입양 및 친가정 복귀와 같이 아동이 영구적으로 생활할 가정이 생긴 경우 위탁기간이 타 사유에 비해 짧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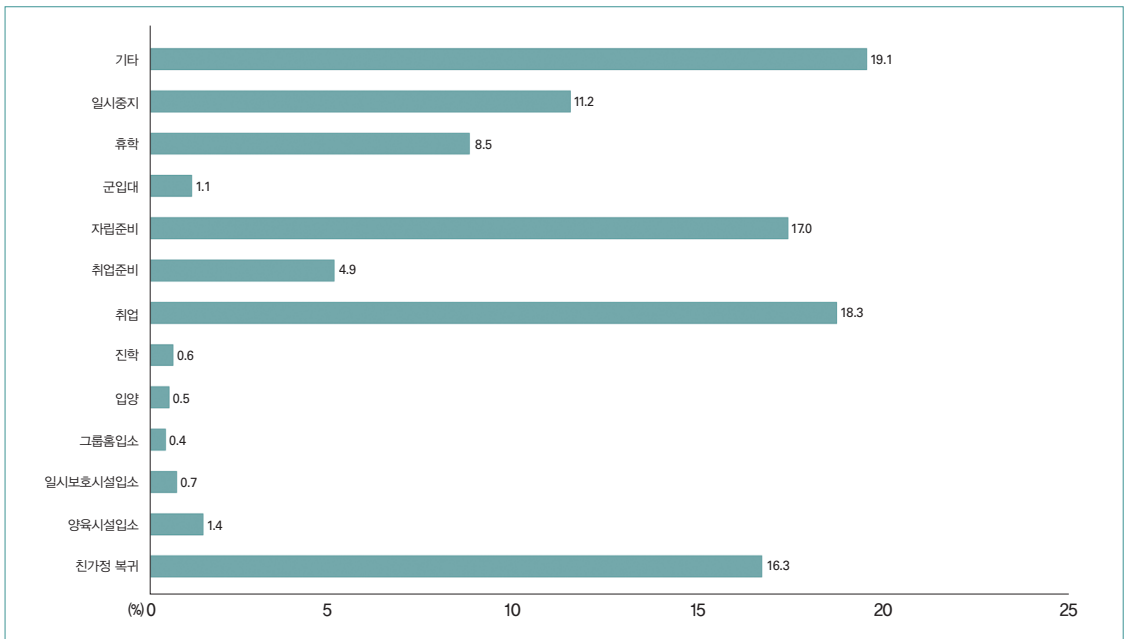
■ 종결 후 배치

〈표 3-28〉 종결 후 배치

단위: 명, %

구분	계	친가정 복귀	양육 시설입소	일시 보호시설 입소	그룹홈 입소	입양	진학	취업	취업 준비	자립 준비	군입대	휴학	일시 중지	기타
계	2,213	361	31	15	8	12	13	405	109	376	25	188	247	423
	100.0	16.3	1.4	0.7	0.4	0.5	0.6	18.3	4.9	17.0	1.1	8.5	11.2	19.1
대리양육	1,415	225	11	9	2	1	6	257	64	263	20	119	162	276
	100.0	15.9	0.8	0.6	0.1	0.1	0.4	18.2	4.5	18.6	1.4	8.4	11.5	19.5
친인척	664	84	13	6	0	1	5	133	41	108	4	66	75	128
	100.0	12.6	2.0	0.9	0.0	0.2	0.7	20.0	6.2	16.3	0.6	9.9	11.3	19.3
일반	134	52	7	0	6	10	2	15	4	5	1	3	10	19
	100.0	38.8	5.2	0.0	4.5	7.5	1.5	11.2	3.0	3.7	0.7	2.2	7.5	14.2

〈그림 3-15〉 종결 후 배치



〈표 3-28〉은 종결아동의 위탁유형별 종결 후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위탁아동의 종결 후 배치는 기타가 19.1%, 취업 18.3%, 자립준비 17.0%, 친가정 복귀가 16.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는 대리양육위탁아동 기타 19.5%, 친인척위탁아동 취업 20.0%, 일반위탁아동 친가정 복귀 38.8%가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성별 및 연령

〈표 3-29〉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성별 및 연령

단위 : 명, %

구분	계	성별		연령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계	2,213	1,267	946	16	54	52	61	123	339	1,568
	100.0	57.3	42.7	0.7	2.4	2.3	2.8	5.6	15.3	70.9
친가정 복귀	361	181	180	13	39	38	48	85	105	33
	100.0	50.1	49.9	3.6	10.8	10.5	13.3	23.6	29.1	9.1
양육시설입소	31	11	20	1	4	4	6	8	8	0
	100.0	35.5	64.5	3.2	12.9	12.9	19.4	25.8	25.8	0.0
일시보호시설 입소	15	8	7	0	0	0	0	5	10	0
	100.0	53.3	46.7	0.0	0.0	0.0	0.0	33.3	66.7	0.0
그룹홈입소	8	2	6	0	0	2	1	4	1	0
	100.0	25.0	75.0	0.0	0.0	25.0	12.5	50.0	12.5	0.0
입양	12	7	5	2	6	3	1	0	0	0
	100.0	58.3	41.7	16.7	50.0	25.0	8.3	0.0	0.0	0.0
진학	13	5	8	0	0	0	0	1	2	10
	100.0	38.5	61.5	0.0	0.0	0.0	0.0	7.7	15.4	76.9
취업	405	213	192	0	0	0	1	0	62	342
	100.0	52.6	47.4	0.0	0.0	0.0	0.3	0.0	15.3	84.4
취업준비	109	52	57	0	0	0	0	0	1	108
	100.0	47.7	52.3	0.0	0.0	0.0	0.0	0.0	0.9	99.1
자립준비	376	220	156	0	0	0	0	0	74	302
	100.0	58.5	41.5	0.0	0.0	0.0	0.0	0.0	19.7	80.3
군입대	25	25	0	0	0	0	0	0	1	24
	100.0	100.0	0.0	0.0	0.0	0.0	0.0	0.0	4.0	96.0
일시중지	188	103	85	0	0	0	0	0	1	187
	100.0	54.8	45.2	0.0	0.0	0.0	0.0	0.0	0.5	99.5
휴학	247	239	8	0	0	0	0	0	3	244
	100.0	96.8	3.2	0.0	0.0	0.0	0.0	0.0	1.2	98.8
기타	423	201	222	0	5	5	4	20	71	318
	100.0	47.5	52.5	0.0	1.2	1.2	0.9	4.7	16.8	75.2

〈표 3-29〉는 종결아동의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성별 및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종결아동의 종결 후 배치 연령 현황을 살펴보면, 진학, 취업, 취업준비, 자립준비, 군입대, 일시중지, 휴학, 기타의 경우는 20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친가정 복귀는 17~19세가 가장 많았다.

2016년 보호필요아동의 보호조치로 상승률을 나타낸 양육시설입소, 그룹홈입소의 경우 두 곳 모두 14~16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위탁사유

〈표 3-30〉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위탁사유

단위 : 명, %

구분	계	부모 모두 사망	부나 모의 사망	별거/ 가출	이혼	부모 수감	실직· 빈곤	부모 질병	학대· 방임	미혼모(부)/ 혼외출생	사실 의뢰	부모 장애	기타
계	2,213	95	582	570	709	83	23	38	39	36	9	11	18
	100.0	4.3	26.3	25.8	32.0	3.8	1.0	1.7	1.8	1.6	0.4	0.5	0.8
친가정 복귀	361	0	29	89	117	49	9	18	27	13	0	5	5
	100.0	0.0	8.0	24.6	32.4	13.6	2.5	5.0	7.5	3.6	0.0	1.4	1.4
양육시설입소	31	0	4	7	9	2	3	1	1	0	1	2	1
	100.0	0.0	12.9	22.6	29.0	6.5	9.7	3.2	3.2	0.0	3.2	6.5	3.2
일시보호시설 입소	15	0	4	6	2	3	0	0	0	0	0	0	0
	100.0	0.0	26.7	40.0	13.3	20.0	0.0	0.0	0.0	0.0	0.0	0.0	0.0
그룹홈입소	8	0	1	0	1	2	0	0	2	0	2	0	0
	100.0	0.0	12.5	0.0	12.5	25.0	0.0	0.0	25.0	0.0	25.0	0.0	0.0
입양	12	1	0	3	0	0	0	0	2	4	2	0	0
	100.0	8.3	0.0	25.0	0.0	0.0	0.0	0.0	16.7	33.3	16.7	0.0	0.0
진학	13	0	2	4	5	0	0	0	0	1	0	0	1
	100.0	0.0	15.4	30.8	38.4	0.0	0.0	0.0	0.0	7.7	0.0	0.0	7.7
취업	405	21	136	94	136	3	2	3	0	5	3	1	1
	100.0	5.2	33.6	23.2	33.6	0.7	0.5	0.7	0.0	1.2	0.7	0.3	0.3
취업준비	109	6	27	32	35	5	1	0	2	1	0	0	0
	100.0	5.5	24.8	29.4	32.1	4.6	0.9	0.0	1.8	0.9	0.0	0.0	0.0
자립준비	376	21	108	103	127	4	1	5	2	3	0	0	2
	100.0	5.6	28.7	27.4	33.8	1.1	0.3	1.3	0.5	0.8	0.0	0.0	0.5
군입대	25	3	4	6	10	0	1	1	0	0	0	0	0
	100.0	12.0	16.0	24.0	40.0	0.0	4.0	4.0	0.0	0.0	0.0	0.0	0.0
일시중지	247	7	90	61	76	4	2	4	1	2	0	0	0
	100.0	2.8	36.5	24.7	30.8	1.6	0.8	1.6	0.4	0.8	0.0	0.0	0.0
휴학	188	6	56	52	62	2	2	1	2	1	0	1	3
	100.0	3.2	29.8	27.6	33.0	1.1	1.1	0.5	1.1	0.5	0.0	0.5	1.6
기타	423	30	121	113	129	9	2	5	0	6	1	2	5
	100.0	7.1	28.6	26.7	30.5	2.1	0.5	1.2	0.0	1.4	0.2	0.5	1.2

〈표 3-30〉은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위탁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종결 후 친가정 복귀가 된 경우와 양육시설입소, 진학, 취업, 취업준비, 자립준비, 군입대, 휴학, 기타 등으로 배치된 아동의 경우 이혼으로 위탁된 사유가 각각 32.4%, 29.0%, 38.4%, 33.6%, 32.1%, 33.8%, 40.0%, 33.0%, 30.5%로 가장 많았다.

4. 위탁가정

- 1) 위탁가정
- 2) 신규위탁가정



4. 위탁가정

1) 위탁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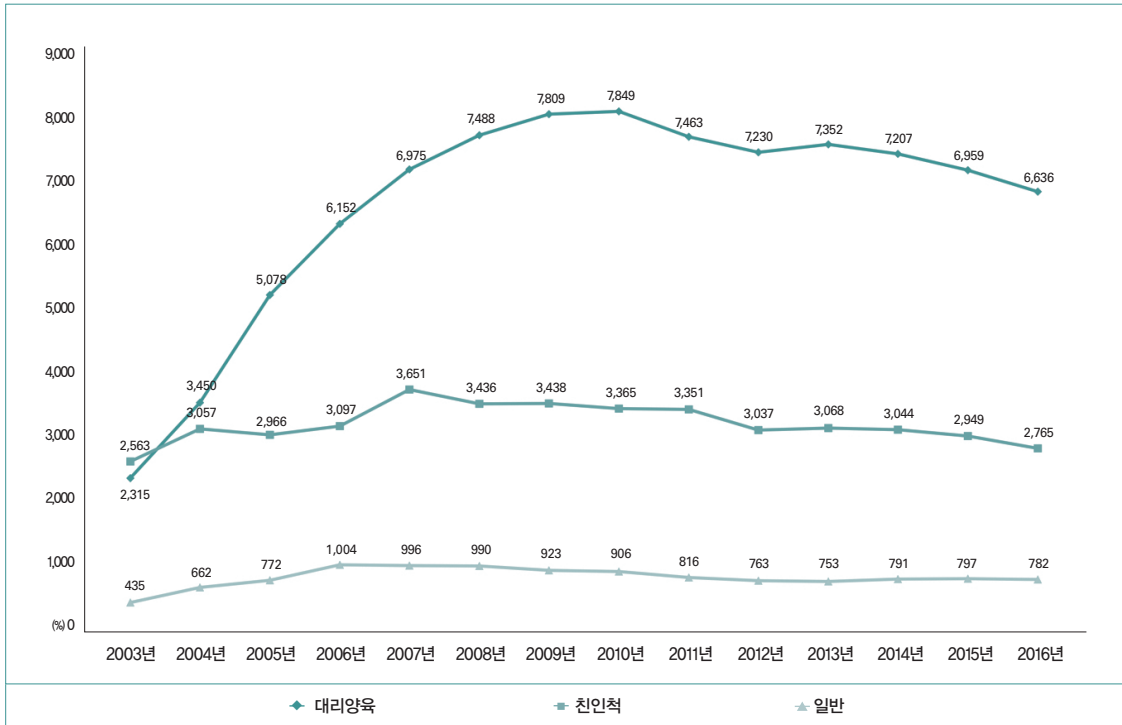
■연도별 위탁가정 수

〈표 4-1〉 연도별 위탁가정 수

단위 : 세대, %

구분 년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2016년	10,183	6,636	2,765	782
	100.0	65.2	27.1	7.7
2015년	10,705	6,959	2,949	797
	100.0	65.0	27.6	7.4
2014년	11,042	7,207	3,044	791
	100.0	65.3	27.6	7.1
2013년	11,173	7,352	3,068	753
	100.0	65.8	27.5	6.7
2012년	11,030	7,230	3,037	763
	100.0	65.6	27.5	6.9
2011년	11,630	7,463	3,351	816
	100.0	64.2	28.8	7.0
2010년	12,120	7,849	3,365	906
	100.0	64.7	27.8	7.5
2009년	12,170	7,809	3,438	923
	100.0	64.2	28.2	7.6
2008년	11,914	7,488	3,436	990
	100.0	62.9	28.8	8.3
2007년	11,622	6,975	3,651	996
	100.0	60.0	31.4	8.6
2006년	10,253	6,152	3,097	1,004
	100.0	60.0	30.2	9.8
2005년	8,816	5,078	2,966	772
	100.0	57.6	33.6	8.8
2004년	7,169	3,450	3,057	662
	100.0	48.1	42.7	9.2
2003년	5,313	2,315	2,563	435
	100.0	43.6	48.2	8.2

〈그림 4-1〉 연도별 위탁가정 수



〈표 4-1〉은 연도별 위탁가정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6년 위탁가정 세대는 총 10,183세대이며, 전년대비 4.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위탁아동의 감소에 따라 위탁가정의 수도 동반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2016년도 위탁유형별 비율은 대리양육위탁가정 65.2%, 친인척위탁가정 27.1%, 일반위탁가정 7.7%였다. 2015년도에 비해 대리양육위탁가정과 일반위탁가정의 비율은 각각 0.2%p, 0.3%p 증가하였고, 친인척위탁가정은 0.5%p 감소했다.

위탁가정 유형별 가정 수는 2004년부터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위탁가정 순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위탁가정의 92.3%가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가정이고 일반위탁가정은 7.7%에 불과하다.

■ 지역센터별 위탁가정 수

〈표 4-2〉 지역센터별 위탁가정 수

단위 : 세대, %

구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계	10,183	6,636	2,765	782
	100.0	65.2	27.1	7.7
서울	952	593	305	54
	100.0	62.3	32.0	5.7
부산	585	348	193	44
	100.0	59.5	33.0	7.5
대구	239	131	73	35
	100.0	54.8	30.5	14.7
인천	531	300	181	50
	100.0	56.5	34.1	9.4
광주	275	142	102	31
	100.0	51.6	37.1	11.3
대전	200	111	62	27
	100.0	55.5	31.0	13.5
울산	216	125	71	20
	100.0	57.9	32.9	9.2
경기	1,195	710	417	68
	100.0	59.4	34.9	5.7
경기북부	611	369	176	66
	100.0	60.4	28.8	10.8
강원	960	704	187	69
	100.0	73.3	19.5	7.2
충북	476	321	111	44
	100.0	67.4	23.3	9.3
충남	493	329	119	45
	100.0	66.7	24.2	9.1
전북	635	448	146	41
	100.0	70.5	23.0	6.5
전남	1,026	836	160	30
	100.0	81.5	15.6	2.9
경북	747	499	166	82
	100.0	66.8	22.2	11.0
경남	802	499	245	58
	100.0	62.2	30.6	7.2
제주	240	171	51	18
	100.0	71.2	21.3	7.5

〈표 4-2〉는 지역센터별 위탁가정 수를 보여준다. 위탁가정 세대 수는 경기도가 1,195세대, 전남 1,026세대, 강원 960세대, 서울 952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경우는 1,000세대가 넘는 곳이 경기, 전남, 강원, 서울 총 4곳이었으나 2016년에는 경기와 전남 2곳만 1,000세대 이상이었다.

위탁가정의 유형별 분포를 상위 3지역 순으로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가정은 전남 81.5%, 강원 73.3%, 제주 71.2%, 친인척 위탁가정은 광주 37.1%, 경기 34.9%, 인천 34.1%, 일반위탁가정은 대구 14.7%, 대전 13.5%, 광주 11.3%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위탁가정이 10.0%가 넘는 곳은 위 세 곳 외 경기북부(10.8%), 경북(11.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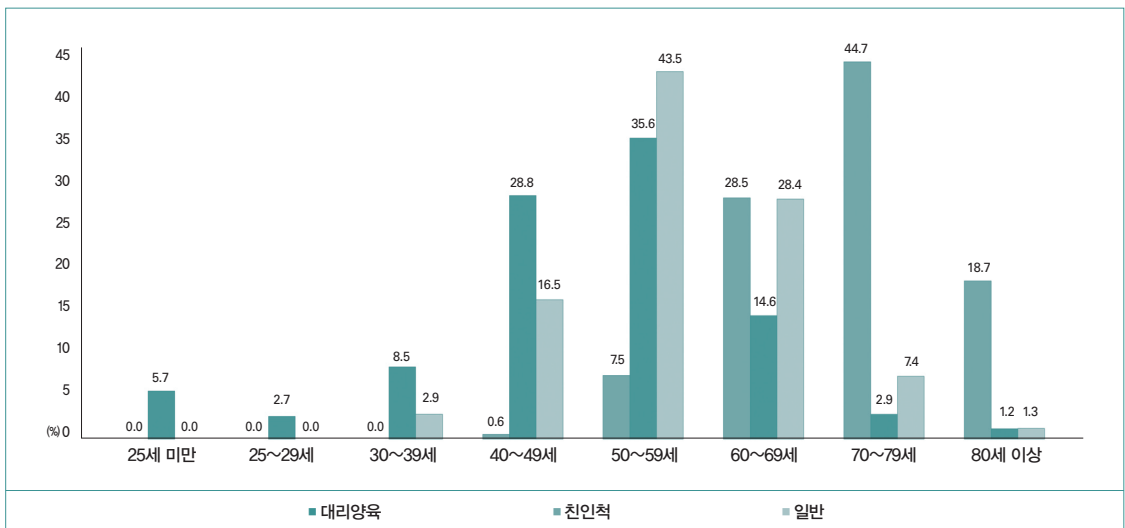
■위탁부모 연령

〈표 4-3〉 위탁부모 연령

단위 : 명, %

구분	계	25세 미만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10,183	157	73	259	964	1,826	2,517	3,102	1,285
	100.0	1.5	0.7	2.6	9.5	17.9	24.7	30.5	12.6
대리양육	6,636	0	0	0	38	501	1,893	2,963	1,241
	100.0	0.0	0.0	0.0	0.6	7.5	28.5	44.7	18.7
친인척	2,765	157	73	236	797	985	402	81	34
	100.0	5.7	2.7	8.5	28.8	35.6	14.6	2.9	1.2
일반	782	0	0	23	129	340	222	58	10
	100.0	0.0	0.0	2.9	16.5	43.5	28.4	7.4	1.3

〈그림 4-2〉 위탁부모 연령



〈표 4-3〉은 위탁부모 연령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며, 위탁가정의 부모 중 주 양육자 한 명의 연령이다. 70~79세 3,102명(30.5%), 60~69세 2,517명(24.7%), 50~59세 1,826명(17.9%), 80세 이상 1,285명(12.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위탁부모가 전체의 6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가정 유형별 위탁부모 연령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는 70~79세가 2,963명(44.7%)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60~69세 1,893명(28.5%), 80세 이상 1,241명(18.7%) 순으로 나타났다.

친인척위탁부모의 연령은 50~59세 985명(35.6%), 40~49세 797명(28.8%), 60~69세 402명(14.6%), 30~39세 236명(8.5%), 25세 미만이 157명(5.7%) 순으로 나타났다. 25세 미만의 친인척위탁부모는 18세 이상으로 보호종결되어 자립한 형제 자매가 위탁부모로 책정된 사례이다.

일반위탁부모는 50~59세 340명(43.5%), 60~69세 222명(28.4%), 40~49세 129명(1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탁가정 유형별로 대리양육위탁부모는 60~79세에 73.2%, 친인척위탁부모는 40~59세에 64.4%, 일반위탁부모는 50~69세에 71.9%로 가장 많은 인원이 포진되어 있어 위탁부모의 연령대가 친인척, 일반, 대리양육위탁부모 순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위탁부모 직업

〈표 4-4〉 위탁부모 직업

단위: 명, %

구분	계	공무원	군인	기계 장치 조작원	농·어·임·축산업	단순 노무직	비정규직	사무직	서비스직	자영업	전문직	종교인	전업 주부	판매직	학생	무직	기타	파악 안됨
계	10,183	30	5	19	473	319	133	194	215	260	99	145	769	34	64	2,440	1,745	3,239
	100.0	0.3	0.1	0.2	4.6	3.1	1.3	1.9	2.1	2.6	1.0	1.4	7.6	0.3	0.6	24.0	17.1	31.8
대리양육	6,636	4	0	4	366	233	71	22	54	74	6	9	236	13	9	2,155	1,119	2,261
	100.0	0.1	0.0	0.1	5.5	3.5	1.1	0.3	0.8	1.1	0.1	0.1	3.5	0.2	0.1	32.5	16.9	34.1
친인척	2,765	12	5	13	89	77	55	140	119	123	33	21	272	18	55	246	509	978
	100.0	0.4	0.2	0.5	3.2	2.8	2.0	5.1	4.3	4.4	1.2	0.8	9.8	0.6	2.0	8.9	18.4	35.4
일반	782	14	0	2	18	9	7	32	42	63	60	115	261	3	0	39	117	0
	100.0	1.8	0.0	0.2	2.3	1.2	0.9	4.1	5.4	8.0	7.7	14.7	33.4	0.4	0.0	5.0	14.9	0.0

〈표 4-4〉는 위탁부모의 직업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위탁부모의 직업은 주민센터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하기 위해 방문한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위탁가정의 주 수입원과는 다를 수 있다. 주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부모의 경우 파악되지 않은 인원이 각각 34.1%, 35.4%로 나타났다.

직업이 파악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타를 제외하고 위탁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의 경우 무직이 32.5%로 가장 높았으며, 농·어·임·축산업 5.5%, 단순노무직과 전업주부가 각각 3.5%였다.

친인척위탁부모는 전업주부 9.8%, 무직 8.9%, 사무직 5.1%, 자영업 4.4%, 서비스직 4.3%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위탁부모는 전업주부가 33.4%로 가장 높았고, 종교인 14.7%, 자영업 8.0%, 전문직 7.7%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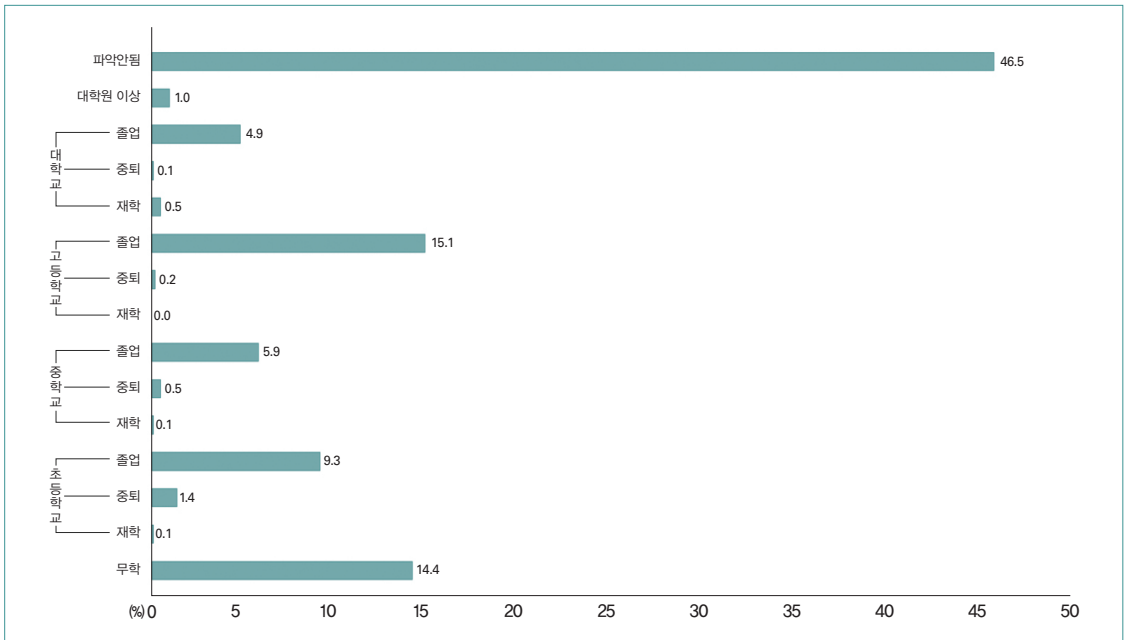
■ 위탁부모 학력

〈표 4-5〉 위탁부모 학력

단위 : 명, %

유형	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파악 안됨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계	10,183	1,465	9	147	952	7	47	600	5	23	1,542	54	7	496	98	4,731
	100.0	14.4	0.1	1.4	9.3	0.1	0.5	5.9	0.0	0.2	15.1	0.5	0.1	4.9	1.0	46.5
대리양육	6,636	1,285	9	129	836	4	31	442	1	8	469	0	1	29	11	3,381
	100.0	19.4	0.1	1.9	12.6	0.1	0.5	6.7	0.0	0.1	7.1	0.0	0.0	0.4	0.2	50.9
친인척	2,765	154	0	13	88	3	12	116	4	12	772	52	2	174	13	1,350
	100.0	5.6	0.0	0.5	3.2	0.1	0.4	4.2	0.1	0.4	27.9	1.9	0.1	6.3	0.5	48.8
일반	782	26	0	5	28	0	4	42	0	3	301	2	4	293	74	0
	100.0	3.3	0.0	0.6	3.6	0.0	0.5	5.4	0.0	0.4	38.5	0.2	0.5	37.5	9.5	0.0

〈그림 4-3〉 위탁부모 학력



〈표 4-5〉는 위탁부모의 학력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며, 주 양육자의 학력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이 파악된 인원은 전체의 53.5%이다. 전체적인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5.1%로 가장 높았으며, 무학 14.4%, 초등학교 졸업 9.3%, 중학교 졸업 5.9%로 그 뒤를 이었다.

학력을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의 경우 무학 19.4%, 초등학교 졸업 12.6%, 고등학교 졸업 7.1%, 중학교 졸업 6.7% 순으로 나타났다.

친인척위탁부모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이 27.9%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 6.3%, 무학 5.6% 순이었다. 친인척위탁가정 부모의 대학교 졸업 비율이 재작년 3.9%, 작년 5.1%로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위탁부모는 100.0%가 조사에 참여했는데 고등학교 졸업이 38.5%, 대학교 졸업이 37.5%로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대학원 이상도 9.5%로 나타나 다른 유형의 위탁부모에 비해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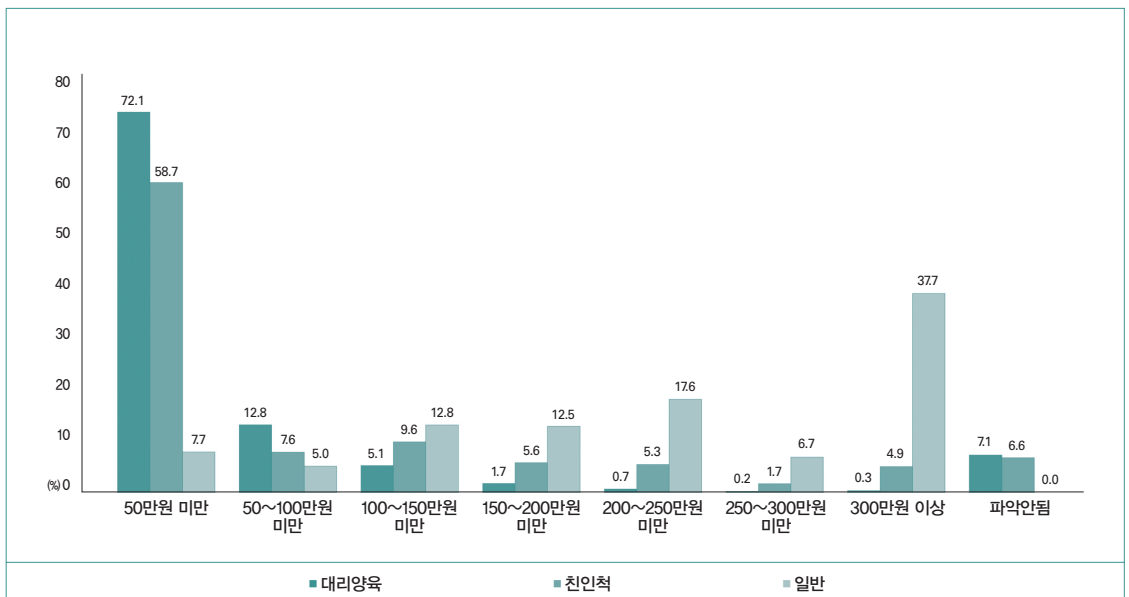
■위탁가정 소득

〈표 4-6〉 위탁가정 소득

단위 : 세대, %

구분	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파악안됨
계	10,183	6,467	1,100	702	367	328	109	453	657
	100.0	63.5	10.8	6.9	3.6	3.2	1.1	4.4	6.5
대리양육	6,636	4,783	850	337	113	44	11	23	475
	100.0	72.1	12.8	5.1	1.7	0.7	0.2	0.3	7.1
친인척	2,765	1,624	211	265	156	146	46	135	182
	100.0	58.7	7.6	9.6	5.6	5.3	1.7	4.9	6.6
일반	782	60	39	100	98	138	52	295	0
	100.0	7.7	5.0	12.8	12.5	17.6	6.7	37.7	0.0

〈그림 4-4〉 위탁가정 소득



〈표 4-6〉은 위탁가정의 소득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위탁가정 전체 중 파악안됨(6.5%)을 제외하면 50만원 미만이 63.5%로 가장 높았으며, 50~100만원 미만이 10.8%, 100~150만원 미만 6.9%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 파악된 위탁가정의 소득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가정은 50만원 미만이 72.1%로 조사됐으며, 50~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12.8%를 차지했다. 친인척위탁가정 역시 50만원 미만이 58.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100~150만원 미만 9.6%였다.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 3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일반위탁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대리양육위탁가정 순으로 소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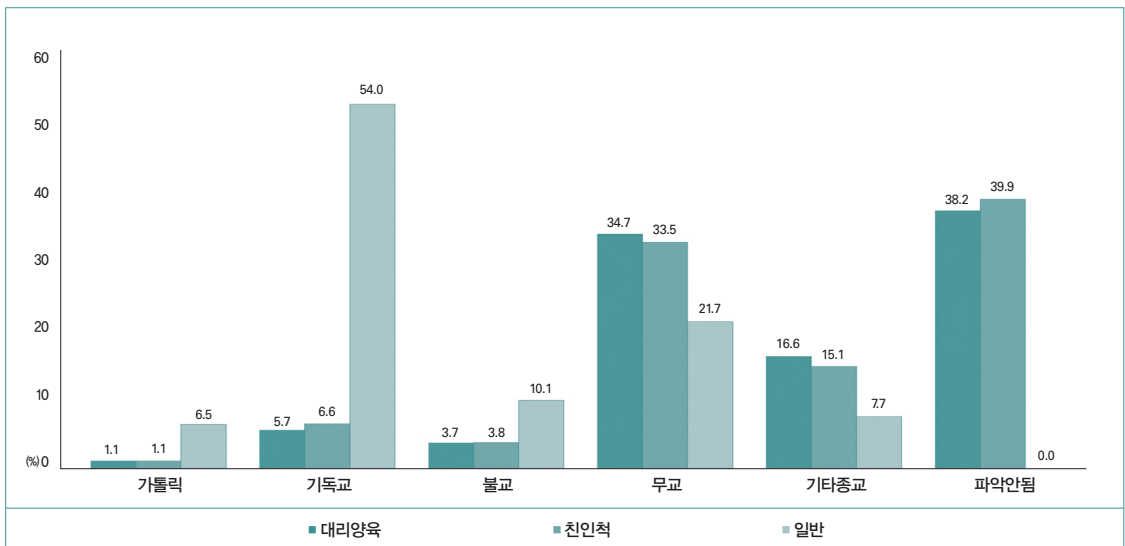
■위탁가정 종교

〈표 4-7〉 위탁가정 종교

단위 : 세대, %

구분	계	가톨릭	기독교	불교	무교	기타종교	파악안됨
계	10,183	154	979	433	3,402	1,578	3,637
	100.0	1.5	9.6	4.3	33.4	15.5	35.7
대리양육	6,636	73	376	248	2,305	1,100	2,534
	100.0	1.1	5.7	3.7	34.7	16.6	38.2
친인척	2,765	30	181	106	927	418	1,103
	100.0	1.1	6.6	3.8	33.5	15.1	39.9
일반	782	51	422	79	170	60	0
	100.0	6.5	54.0	10.1	21.7	7.7	0.0

〈그림 4-5〉 위탁가정 종교



〈표 4-7〉은 위탁가정의 종교를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종교가 파악되지 않은 3,637세대(35.7%)를 제외하고 위탁가정의 종교분포를 살펴보면 무교가 33.4%로 가장 높았고, 기타종교 15.5%, 기독교 9.6%, 불교 4.3%, 가톨릭 1.5%였다.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가정은 유사한 종교분포를 보이는데 무교가 각각 34.7%, 3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종교는 각각 16.6%, 15.1%, 기독교는 각각 5.7%, 6.6%, 불교는 각각 3.7%, 3.8%, 가톨릭은 각각 1.1%로 조사됐다.

일반위탁가정은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절반 이상인 54.0%가 기독교였으며, 무교 21.7%, 불교 10.1%, 기타종교 7.7%, 가톨릭 6.5%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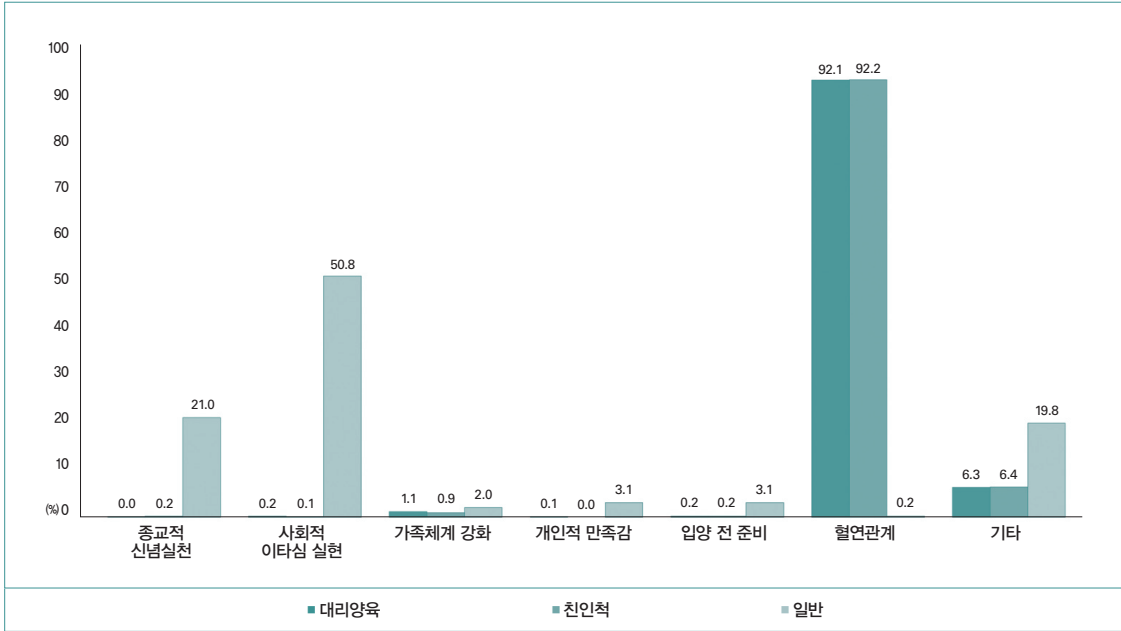
■ 위탁가정 참여 동기

〈표 4-8〉 위탁가정 참여 동기

단위 : 세대, %

구분	계	종교적 이념실천	사회적 이타심 실현	가족체계 강화	개인적 만족감	입양 전 준비	혈연관계	기타
계	10,183	173	411	117	28	45	8,660	749
	100.0	1.7	4.0	1.2	0.3	0.4	85.0	7.4
대리양육	6,636	3	12	75	4	14	6,110	418
	100.0	0.0	0.2	1.1	0.1	0.2	92.1	6.3
친인척	2,765	6	2	26	0	7	2,548	176
	100.0	0.2	0.1	0.9	0.0	0.2	92.2	6.4
일반	782	164	397	16	24	24	2	155
	100.0	21.0	50.8	2.0	3.1	3.1	0.2	19.8

〈그림 4-6〉 위탁가정 참여 동기



〈표 4-8〉은 위탁가정의 참여 동기를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며, 최초 동기 기준이다.

위탁가정 참여 동기를 살펴보면,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가정은 당위적으로 혈연관계가 각각 92.1%, 92.2%로 조사됐고, 일부 기타, 가족체계 강화의 동기로 가정위탁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위탁가정은 사회적 이타심 실현이 50.8%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 이념 실천(21.0%)이었다. 그 다음은 기타(19.8%)였다.

2015년 일반위탁가정의 참여 동기는 사회적 이타심 실현, 기타, 종교적 이념실천 순으로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기타보다 종교적 이념실천의 비중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가정위탁 참여에 종교적인 이유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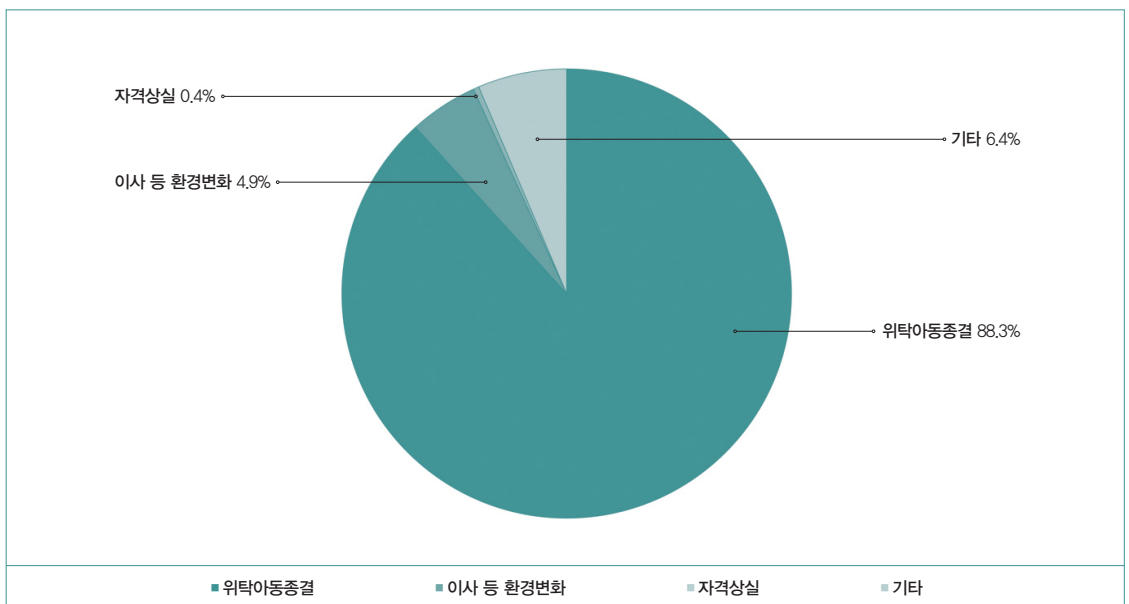
■ 종결위탁가정 종결사유

〈표 4-9〉 종결위탁가정 종결사유

단위 : 세대, %

구분	계	위탁아동종결	이사 등 환경변화	자격상실	기타
계	1,704	1,505	84	7	108
	100.0	88.3	4.9	0.4	6.4
대리양육	1,039	913	46	4	76
	100.0	87.9	4.4	0.4	7.3
친인척	547	488	36	1	22
	100.0	89.2	6.6	0.2	4.0
일반	118	104	2	2	10
	100.0	88.1	1.7	1.7	8.5

〈그림 4-7〉 종결위탁가정 종결사유



〈표 4-9〉는 위탁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없거나 위탁양육을 할 수 없는 위탁가정의 유형별 종결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자격상실 및 기타의 세부 내용은 위탁부모의 고령화(질병), 사례관리 시 발견된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미달, 가족구성원의 반대, 아동학대로 인한 자격 박탈 등이다.

위탁가정의 종결사유는 88.3%가 위탁아동종결로, 위탁아동이 종결되어 자연적으로 위탁가정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차이 없이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위탁가정 모두 위탁아동종결이 각각 87.9%, 89.2%, 88.1%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대리양육과 일반위탁가정의 경우는 위탁아동종결 다음으로 기타(각각 7.3%, 8.5%) 사유가 그 뒤를 이었으나,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는 이사 등 환경변화 6.6%, 기타 4.0% 순이었다.

2) 신규위탁가정

■ 지역센터별 신규위탁가정 수

〈표 4-10〉 지역센터별 신규위탁가정 수

단위 : 세대, %

구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계	1,124	739	284	101
	100.0	65.7	25.3	9.0
서울	93	52	38	3
	100.0	55.9	40.9	3.2
부산	70	52	11	7
	100.0	74.3	15.7	10.0
대구	30	20	7	3
	100.0	66.7	23.3	10.0
인천	46	35	10	1
	100.0	76.1	21.7	2.2
광주	41	17	14	10
	100.0	41.5	34.1	24.4
대전	21	11	6	4
	100.0	52.4	28.6	19.0
울산	26	14	5	7
	100.0	53.9	19.2	26.9
경기	103	58	36	9
	100.0	56.3	35.0	8.7
경기북부	70	42	23	5
	100.0	60.0	32.9	7.1
강원	108	72	21	15
	100.0	66.7	19.4	13.9
충북	127	99	21	7
	100.0	78.0	16.5	5.5
충남	52	31	14	7
	100.0	59.6	26.9	13.5
전북	54	41	11	2
	100.0	75.9	20.4	3.7
전남	90	67	19	4
	100.0	74.5	21.1	4.4
경북	85	61	16	8
	100.0	71.8	18.8	9.4
경남	87	53	27	7
	100.0	60.9	31.0	8.1
제주	21	14	5	2
	100.0	66.7	23.8	9.5

1) 2016년 신규위탁가정 현황은 다른 센터로 사례이관 되거나, 위탁가정이 변경된 192세대(대리양육위탁가정 63세대, 친인척위탁가정 109세대, 일반위탁가정 20세대)를 신규위탁가정 수에서 제외하고 집계함.

〈표 4-10〉은 지역센터별 신규위탁가정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신규위탁가정은 1,124세대이며 대리양육위탁가정이 739세대(65.7%)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위탁가정 284세대(25.3%), 일반위탁가정 101세대(9.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규위탁가정의 수는 충북이 127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108세대, 경기 103세대 순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표 3-9〉에 나타난 2016년 지역센터별 신규위탁아동과도 거의 일치하는데 신규위탁아동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 160명, 경기 135명, 강원 134명 순이었다.

위탁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가정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충북 78.0%(99세대), 인천 76.1%(35세대), 전북 75.9%(41세대)로 나타났으며, 친인척위탁가정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40.9%(38세대), 경기 35.0%(36세대), 광주 34.1%(14세대)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위탁가정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 26.9%(7세대), 광주 24.4%(10세대), 대전 19.0%(4세대) 순으로 조사됐다.

■ 신규위탁부모 연령

〈표 4-11〉 신규위탁부모 연령

단위 : 명, %

구분	계	25세 미만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1,124	25	10	55	137	238	321	275	63
	100.0	2.2	0.9	4.9	12.2	21.2	28.5	24.5	5.6
대리양육	739	0	0	0	13	118	283	266	59
	100.0	0.0	0.0	0.0	1.7	16.0	38.3	36.0	8.0
친인척	284	25	9	47	82	80	31	6	4
	100.0	8.8	3.2	16.5	28.9	28.2	10.9	2.1	1.4
일반	101	0	1	8	42	40	7	3	0
	100.0	0.0	1.0	7.9	41.6	39.6	6.9	3.0	0.0

〈그림 4-8〉 신규위탁부모 연령



〈표 4-11〉은 신규위탁부모의 연령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신규위탁부모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60~69세가 321명(28.5%)으로 가장 많았으며, 70~79세가 275명(24.5%), 50~59세가 238명(21.2%)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 구체적인 연령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는 60세 이상(60~69세, 70~79세, 80세 이상)이 82.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친인척위탁부모는 40~49세가 28.9%로 가장 많았고, 50~59세 28.2%, 30~39세 16.5%, 60~69세 10.9%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연령대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위탁부모도 친인척위탁부모와 마찬가지로의 분포도를 나타냈는데 40~49세가 41.6%로 가장 많았으며, 50~59세 39.6%, 30~39세 7.9% 순으로 많았다.

전반적으로 대리양육위탁가정은 고령(60세 이상)의 위탁부모가 많은 반면, 친인척위탁부모 및 일반위탁부모는 40~59세가 각각 57.1%, 81.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신규위탁부모 직업

〈표 4-12〉 신규위탁부모 직업

단위 : 명, %

구분	계	공무원	기계장치 조작원	농·어·임·축 산업	단순 노무직	비정규직	사무직	서비스직	자영업	전문직	종교인	전업주부	판매직	학생	무직	기타	파악안됨
계	1,124	2	7	83	44	29	26	39	44	25	16	131	10	11	299	112	246
	100.0	0.2	0.6	7.4	3.9	2.6	2.3	3.5	3.9	2.2	1.4	11.7	0.9	1.0	26.6	9.9	21.9
대리양육	739	1	2	66	34	19	1	14	22	1	1	60	5	1	267	58	187
	100.0	0.1	0.3	9.0	4.6	2.6	0.1	1.9	3.0	0.1	0.1	8.1	0.7	0.1	36.1	7.9	25.3
친인척	284	0	4	14	10	9	23	19	13	8	2	38	5	10	31	39	59
	100.0	0.0	1.4	4.9	3.5	3.2	8.1	6.7	4.6	2.8	0.7	13.4	1.8	3.5	10.9	13.7	20.8
일반	101	1	1	3	0	1	2	6	9	16	13	33	0	0	1	15	0
	100.0	1.0	1.0	3.0	0.0	1.0	2.0	5.9	8.9	15.8	12.9	32.7	0.0	0.0	1.0	14.8	0.0

〈표 4-12〉는 위탁유형별 신규위탁부모 중 주 양육자의 직업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신규위탁부모 1,124명 중 246명(21.9%)은 직업이 파악되지 않았다.

직업이 파악된 신규위탁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이 26.6%로 가장 높았고 전업주부 11.7%, 기타 9.9%, 농·어·임·축 산업 7.4%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위탁부모의 직업을 다시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는 무직이 36.1%로 가장 높았으며, 농·어·임·축 산업 9.0%, 전업주부 8.1%, 기타 7.9% 순으로 나타났다.

친인척위탁부모의 경우 기타 13.7%, 전업주부 13.4%, 무직 10.9%, 사무직 8.1% 순으로 높았다. 일반위탁부모의 경우에는 전업주부가 32.7%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직 15.8%, 기타 14.8%, 종교인 12.9%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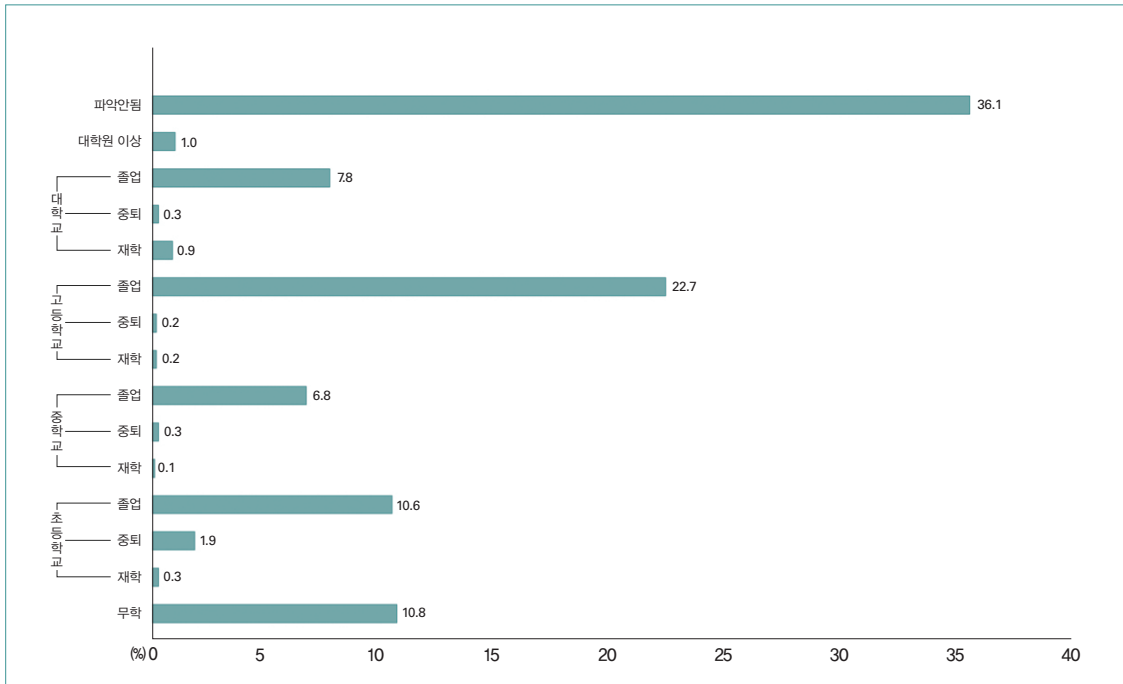
■ 신규위탁부모 학력

〈표 4-13〉 신규위탁부모 학력

단위 : 명, %

구분	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파악 안됨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계	1,124	122	3	21	119	1	3	77	2	2	255	10	3	88	12	406
	100.0	10.8	0.3	1.9	10.6	0.1	0.3	6.8	0.2	0.2	22.7	0.9	0.3	7.8	1.0	36.1
대리양육	739	104	3	18	106	1	3	69	0	1	121	0	0	4	0	309
	100.0	14.1	0.4	2.4	14.3	0.2	0.4	9.3	0.0	0.2	16.4	0.0	0.0	0.5	0.0	41.8
친인척	284	16	0	3	11	0	0	7	2	0	102	10	2	33	1	97
	100.0	5.6	0.0	1.1	3.9	0.0	0.0	2.5	0.7	0.0	35.9	3.5	0.7	11.6	0.4	34.1
일반	101	2	0	0	2	0	0	1	0	1	32	0	1	51	11	0
	100.0	2.0	0.0	0.0	2.0	0.0	0.0	1.0	0.0	1.0	31.6	0.0	1.0	50.5	10.9	0.0

〈그림 4-9〉 신규위탁부모 학력



〈표 4-13〉은 신규위탁부모의 학력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신규위탁부모 1,124명 중 대리양육·친인척위탁부모 406명(36.1%)의 학력이 파악되지 않았다. 전체적인 위탁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22.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무학 10.8%, 초등학교 졸업 10.6%, 대학교 졸업 7.8%로 나타났다.

신규위탁부모의 학력을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파악된 대리양육위탁부모 중 고등학교 졸업이 16.4%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졸업 14.3%, 무학 14.1% 순이었다. 2015년의 경우 무학이 가장 높았던 데에 반해 대리양육위탁부모의 학력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학력이 파악된 친인척위탁부모 중 고등학교 졸업이 35.9%로 가장 높았고, 일반위탁부모의 경우는 대학교 이상이 5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고등학교 졸업 31.6%, 대학원 이상 10.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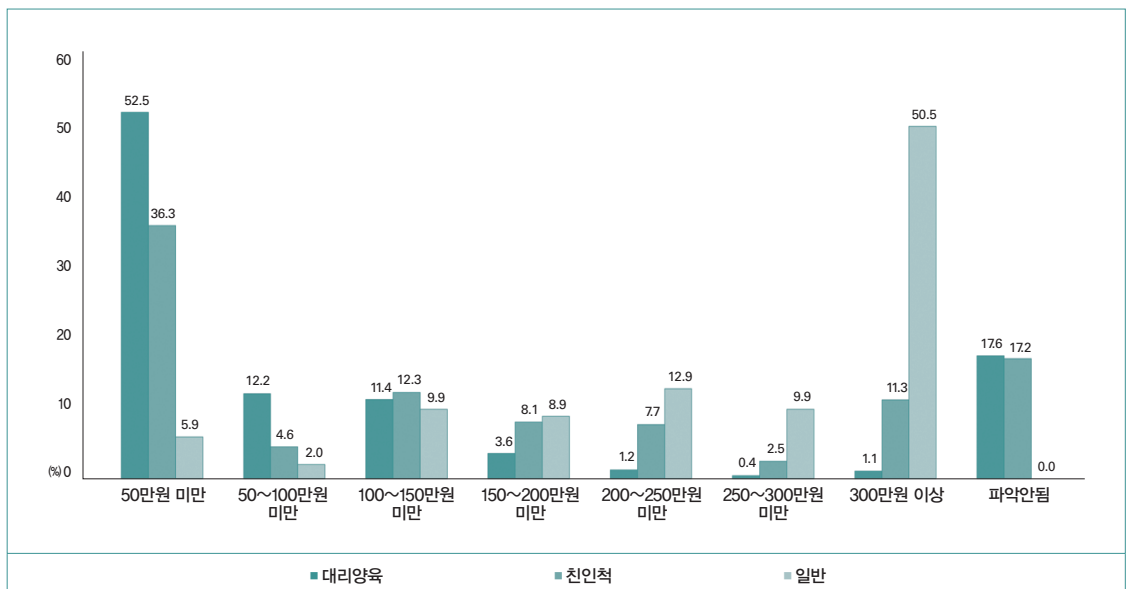
■ 신규위탁가정 소득

〈표 4-14〉 신규위탁가정 소득

단위 : 세대, %

구분	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파악안됨
계	1,124	497	105	129	59	44	20	91	179
	100.0	44.2	9.3	11.5	5.3	3.9	1.8	8.1	15.9
대리양육	739	388	90	84	27	9	3	8	130
	100.0	52.5	12.2	11.4	3.6	1.2	0.4	1.1	17.6
인척	284	103	13	35	23	22	7	32	49
	100.0	36.3	4.6	12.3	8.1	7.7	2.5	11.3	17.2
일반	101	6	2	10	9	13	10	51	0
	100.0	5.9	2.0	9.9	8.9	12.9	9.9	50.5	0.0

〈그림 4-10〉 신규위탁가정 소득



〈표 4-14〉는 신규위탁가정의 소득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신규위탁가정 1,124세대 중 소득이 파악되지 않은 가정은 179세대였으며, 150만원 미만인 가정이 731세대,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91세대였다.

소득이 파악되지 않은 세대를 제외하고 위탁유형으로 구분하여 신규위탁가정의 소득을 살펴보면, 소득이 파악된 대리양육위탁가정 중 388세대(52.5%)가 5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소득이 파악된 103세대(36.3%)의 친인척위탁가정도 5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파악됐다.

일반위탁가정의 경우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정이 51세대(50.5%), 200~25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정이 13세대(12.9%)로 나타나 일반위탁가정은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과는 다른 소득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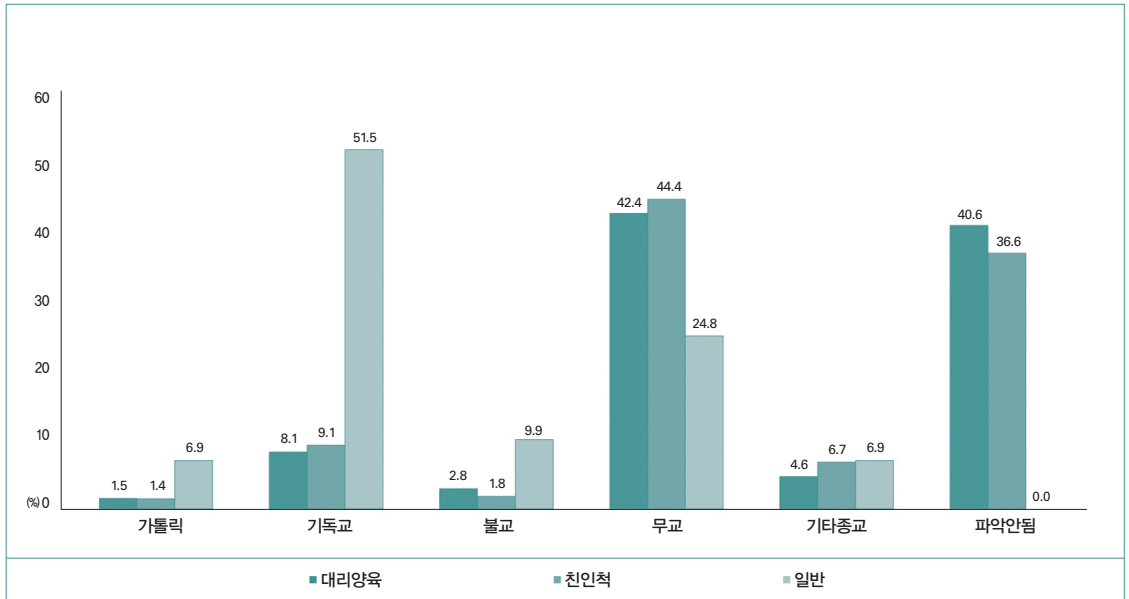
■신규위탁가정 종교

〈표 4-15〉 신규위탁가정 종교

단위 : 세대, %

구분	계	가톨릭	기독교	불교	무교	기타종교	파악안됨
계	1,124	22	138	36	464	60	404
	100.0	2.0	12.3	3.2	41.3	5.3	35.9
대리양육	739	11	60	21	313	34	300
	100.0	1.5	8.1	2.8	42.4	4.6	40.6
친인척	284	4	26	5	126	19	104
	100.0	1.4	9.1	1.8	44.4	6.7	36.6
일반	101	7	52	10	25	7	0
	100.0	6.9	51.5	9.9	24.8	6.9	0.0

〈그림 4-11〉 신규위탁가정 종교



〈표 4-15〉는 신규위탁가정의 종교를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신규위탁가정 중 종교가 파악되지 않은 가정 404세대를 제외하고 종교가 파악된 가정 중 무교가 464세대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138세대, 기타종교 60세대, 불교 36세대, 가톨릭 22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위탁가정의 유형별 종교분포는 대리양육위탁가정 및 친인척위탁가정이 무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기독교가 52세대(51.5%)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며, 무교 25세대(24.8%), 불교 10세대(9.9%), 가톨릭과 기타종교 각각 7세대(6.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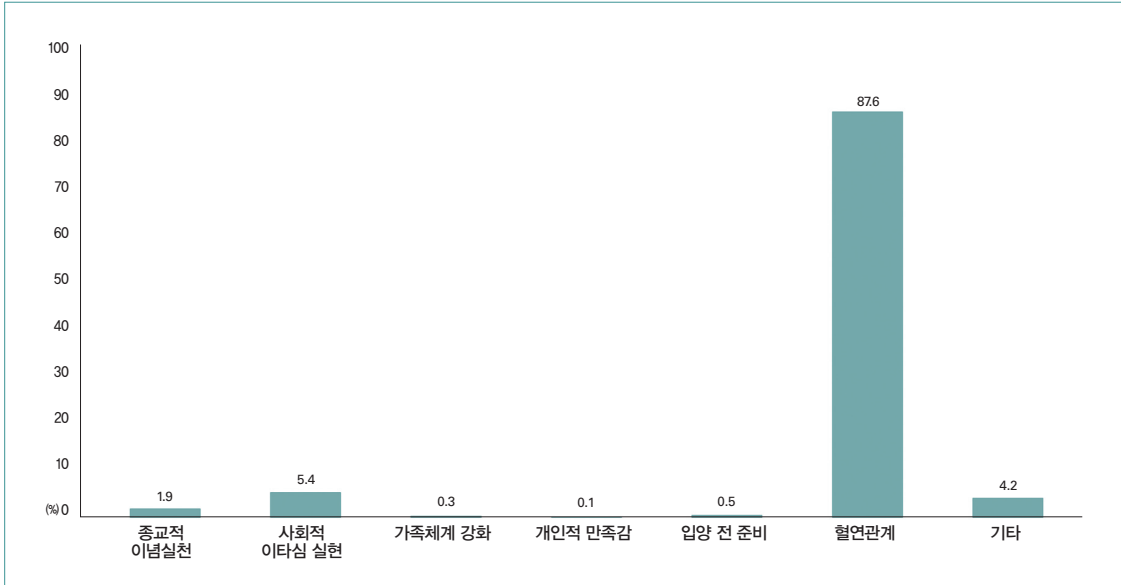
■ 신규위탁가정 참여 동기

〈표 4-16〉 신규위탁가정 참여 동기

단위 : 세대, %

구분	계	종교적 이념실현	사회적 이타심 실현	가족체계 강화	개인적 만족감	입양 전 준비	혈연관계	기타
계	1,124	21	61	3	1	6	985	47
	100.0	1.9	5.4	0.3	0.1	0.5	87.6	4.2
대리양육	739	1	0	2	0	0	714	22
	100.0	0.1	0.0	0.3	0.0	0.0	96.6	3.0
친인척	284	0	0	0	0	0	271	13
	100.0	0.0	0.0	0.0	0.0	0.0	95.4	4.6
일반	101	20	61	1	1	6	0	12
	100.0	19.8	60.4	1.0	1.0	5.9	0.0	11.9

〈그림 4-12〉 신규위탁가정 참여 동기



〈표 4-16〉은 신규위탁가정의 참여 동기를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신규위탁가정 1,124세대 중 87.6%가 혈연관계로 인해 가정위탁보호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리양육위탁가정 및 친인척위탁가정의 참여 동기가 각각 약 9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위탁가정의 참여 동기를 살펴보면, 사회적 이타심 실현이 61세대(60.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종교적 이념실천이 20세대(19.8%), 기타가 12세대(11.9%) 순으로 나타났다.

5. 가정위탁 서비스 현황

- 1) 지원서비스
- 2) 경제적 서비스



5. 가정위탁 서비스 현황

1) 지원서비스

〈표 5-1〉 지역센터별 지원서비스

단위: 명, 건, %

구분	계		위탁아동 서비스		대리양육위탁부모 서비스		친인척위탁부모 서비스		일반위탁부모 서비스		친가정 서비스		기타 서비스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계	43,017	379,319	14,613	167,499	10,072	89,725	3,944	29,223	1,686	39,850	703	8,414	11,999	44,608
	100.0	100.0	34.0	44.2	23.4	23.6	9.2	7.7	3.9	10.5	1.6	2.2	27.9	11.8
서울	3,788	19,315	1,125	8,533	1,136	4,910	568	1,840	101	2,434	36	275	822	1,323
	8.8	5.1												
부산	2,657	19,689	802	8,133	496	3,660	285	1,437	105	2,185	47	915	922	3,359
	6.2	5.2												
대구	1,167	10,825	299	2,863	181	3,368	93	631	60	1,902	17	153	517	1,908
	2.7	2.8												
인천	2,481	16,099	1,003	7,474	399	2,867	186	813	102	2,300	45	803	746	1,842
	5.8	4.2												
광주	1,353	23,266	494	12,516	259	4,885	169	2,747	46	1,599	61	334	324	1,185
	3.1	6.1												
대전	1,383	25,212	297	15,423	185	2,751	94	940	100	2,291	29	559	678	3,248
	3.2	6.6												
울산	858	41,112	186	6,475	202	17,702	97	7,716	36	4,420	18	519	319	4,280
	2.0	10.8												
경기	3,913	33,447	1,705	16,920	925	5,887	465	2,462	103	4,429	44	563	671	3,186
	9.1	8.8												
경기 북부	2,357	11,401	525	2,569	569	3,916	245	1,074	132	1,354	31	154	855	2,334
	5.5	3.0												
강원	3,538	18,791	1,586	9,855	946	4,085	231	747	187	2,447	56	377	532	1,280
	8.2	5.0												
충북	2,093	21,851	626	7,595	492	6,143	167	1,457	79	2,629	83	1,019	646	3,008
	4.9	5.8												
충남	2,155	26,008	736	10,516	574	8,620	189	2,256	77	1,848	23	518	556	2,250
	5.0	6.9												
전북	3,163	27,222	1,023	9,627	759	8,186	239	1,789	89	3,057	40	576	1,013	3,987
	7.4	7.2												
전남	3,216	14,314	920	6,423	1,234	4,207	233	612	74	1,063	44	273	711	1,736
	7.5	3.8												
경북	3,408	20,140	1,045	6,649	701	3,676	209	836	224	2,663	54	643	1,175	5,673
	7.9	5.3												
경남	4,345	41,236	1,755	29,821	772	3,368	427	1,646	135	2,962	62	625	1,194	2,814
	10.1	10.9												
제주	1,142	9,391	486	6,107	242	1,494	47	220	36	267	13	108	318	1,195
	2.6	2.5												

〈표 5-1〉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현황을 지역센터별로 나타낸 것이다. 지원서비스는 위탁아동, 위탁부모, 친부모 등에게 제공된 상담은 물론 물품, 의료, 학습, 경제적 지원 등의 서비스가 직·간접적으로 제공된 것을 포함한다.

서비스를 제공한 전체 인원과 건수는 각각 43,017명, 379,319건으로 2015년 40,963명, 292,505건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 대상 인원은 5.0% 증가한 반면 서비스 건수는 29.7% 증가하여 1인당 제공되는 서비스 건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대상자별 서비스제공 건수로 살펴보면 위탁아동 167,499건(44.2%), 대리양육위탁부모 89,725건(23.6%), 기타 44,608건(11.8%), 일반위탁부모 39,850건(10.5%)의 순으로, 위탁아동에게 가장 많은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아동과 관련된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및 가정위탁 문의, 위탁가정 신청, 위탁아동 신청 등의 일반상담까지 포괄하는 기타 서비스 건수를 제외하고는 2016년 각 항목별 서비스 제공 건수는 2015년 대비 전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부모의 유형별 서비스제공 건수가 대리양육위탁부모, 일반위탁부모, 친인척위탁부모 순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위탁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리양육위탁부모에게 가장 많은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인원 대비 서비스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위탁부모에 대한 서비스제공 비율이 타 유형의 위탁부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친가정에 대해서도 703명에게 8,414건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친가정과 위탁아동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위탁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센터 차원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경제적 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표 5-2〉 지역센터별 신규위탁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단위 : 명, %

구분	2015년 신규위탁아동			2016년 신규위탁아동		
	위탁아동 수	생계비지원아동 수		위탁아동 수	생계비지원아동 수	
계	1,615	1,439	89.1	1,447	1,335	92.3
서울	162	128	79.0	118	105	89.0
부산	89	89	100.0	84	81	96.4
대구	29	27	93.1	40	34	85.0
인천	90	69	76.7	57	54	94.7
광주	41	41	100.0	52	51	98.1
대전	25	19	76.0	28	28	100.0
울산	61	56	91.8	31	20	64.5
경기	188	187	99.5	135	132	97.8
경기북부	112	78	69.6	90	67	74.4
강원	141	123	87.2	134	132	98.5
충북	78	60	76.9	160	148	92.5
충남	100	88	88.0	70	62	88.6
전북	114	109	95.6	71	66	93.0
전남	138	130	94.2	115	105	91.3
경북	103	96	93.2	115	108	93.9
경남	115	115	100.0	119	117	98.3
제주	29	24	82.8	28	25	89.3

〈표 5-2〉는 2015년과 2016년 신규위탁 된 아동의 생계비 지원 비율을 지역센터별로 나타낸 것이다.

2016년도 신규위탁아동의 92.3%인 1,335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89.1%에 비해 다소 향상된 수치였으나 신규아동 100.0%가 생계비를 지원받는 지역은 3곳에서 1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센터별로 생계비 지원 비율이 높은 곳은 대전 100.0%, 경남 98.3%, 광주 98.1%, 경기 97.8% 순이었으며, 생계비 지원이 낮은 곳은 울산 64.5%, 경기북부 74.4%, 대구 85.0%, 충남 88.6% 순이었다.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는 35.5%p로 나타나 위탁아동 생계비 지원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유는 아동의 부모사망 후 유족연금이나 보험금 등의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거나, 양육을 거부하고 연락 두절된 친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연락 두절된 친부모의 재산은 위탁아동 양육비로 사용될 수 없어 위탁가정의 양육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위탁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및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의해 가정위탁보호 결정이 되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생계비를 지원받도록 되어있어 위탁아동의 생계비 지원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 전세임대 지원

〈표 5-3〉 지역별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 전세임대 지원

단위 : 호, %

구분	계		대리양육위탁가정		친인척위탁가정	
	호	%	호	%	호	%
계	130	100.0	72	55.4	58	44.6
서울	26	100.0	9	34.6	17	65.4
부산	15	100.0	7	46.7	8	53.3
대구	4	100.0	4	100.0	0	0.0
인천	3	100.0	1	33.3	2	66.7
광주	4	100.0	2	50.0	2	50.0
대전	5	100.0	3	60.0	2	40.0
울산	5	100.0	2	40.0	3	60.0
경기	36	100.0	22	61.1	14	38.9
강원	3	100.0	1	33.3	2	66.7
충북	4	100.0	3	75.0	1	25.0
충남	11	100.0	9	81.8	2	18.2
전북	7	100.0	4	57.1	3	42.9
전남	2	100.0	1	50.0	1	50.0
경북	3	100.0	3	100.0	0	0.0
경남	2	100.0	1	50.0	1	50.0
제주	0	0.0	0	0.0	0	0.0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기획처 2016

〈표 5-3〉은 국토교통부에서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에 임차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에 대한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현황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2016년에는 총 130세대가 지원받았으며, 2015년 167세대에 비해 지원받은 가정이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가정이 적어진 이유는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이 감소했고 신청자 수 역시 적었기 때문으로 신청한 가정의 경우는 100.0% 지원 되었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밝혔다.

지역별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36세대, 서울 26세대, 부산 15세대, 충남 11세대 순으로 조사됐다.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가정의 지원 비율은 각각 55.4%, 44.6%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친인척위탁가정보다 대리양육위탁가정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위탁가정 유형별 비율이 대리양육위탁가정 65.2%, 친인척위탁가정 27.1%인 것을 고려하면 친인척위탁가정의 지원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가정위탁보호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 현황

〈표 5-4〉 지역별 가정위탁보호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 현황

단위: 명, %, 원

구분	사업 대상 아동 수	저축 아동 수	저축률	2016년 아동 입금액	아동 1인당 월평균 입금액		매칭신청 기준금액	아동 1인당 매칭지원액		총 적립금	평균 적립금	
					저축 아동 기준	사업대상 아동 기준		저축 아동 기준	사업대상 아동 기준		저축 아동 기준	사업대상 아동 기준
서울	702	657	93.5	26,514,636	40,395	37,752	16,308,836	24,842	23,220	42,823,473	65,237	60,972
부산	472	468	99.1	17,710,583	37,886	37,534	12,007,583	25,685	25,447	29,718,167	63,571	62,982
대구	215	205	95.3	7,804,133	38,152	36,362	5,235,667	25,590	24,389	13,039,800	63,742	60,751
인천	454	436	96.1	19,730,361	45,210	43,464	11,590,000	26,559	25,529	31,320,361	71,769	68,993
광주	267	254	95.2	8,681,337	34,114	32,488	6,159,003	24,220	23,061	14,840,340	58,334	55,549
대전	183	171	93.7	6,628,375	38,769	36,352	4,389,000	25,616	24,014	11,017,375	64,385	60,366
울산	206	194	94.2	7,966,584	41,087	38,767	5,039,167	26,041	24,519	13,005,751	67,127	63,285
세종	21	20	94.6	828,583	41,186	39,043	553,333	27,922	26,440	1,381,917	69,108	65,484
경기	1,663	1,615	97.1	74,491,572	46,142	44,799	44,057,884	27,290	26,496	118,549,456	73,432	71,295
강원	911	862	94.6	31,345,592	36,352	34,423	21,396,542	24,820	23,496	52,742,133	61,172	57,919
충북	396	374	94.6	20,421,475	54,566	51,649	9,847,208	26,312	24,896	30,268,683	80,878	76,545
충남	411	389	94.7	16,326,976	41,978	39,759	10,275,833	26,425	25,031	26,602,809	68,403	64,790
전북	618	583	94.4	20,938,858	35,914	33,923	14,619,667	25,076	23,681	35,558,525	60,990	57,604
전남	904	864	95.5	28,520,028	33,029	31,569	22,210,117	25,721	24,577	50,730,144	58,750	56,147
경북	769	734	95.5	26,426,461	36,019	34,382	18,822,783	25,649	24,481	45,249,244	61,668	58,863
경남	692	664	96.1	29,184,083	43,961	42,232	17,798,417	26,803	25,748	46,982,500	70,764	67,979
제주	180	171	94.9	7,024,000	41,137	39,060	4,529,583	26,526	25,175	11,553,583	67,663	64,235

출처: 디딤씨앗지원사업단 2016

〈표 5-4〉는 가정위탁보호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적립 현황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조치 된 아동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3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아동의 적립금과 1:1로 매칭하여 추가 적립해 줌으로써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기초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디딤씨앗통장 적립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적립금은 경기 118,549,456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50,730,144원, 경남 46,982,500원, 경북 45,249,244원 순이었다. 저축률은 모든 지역이 90%를 넘었으며, 평균 95.2%의 저축률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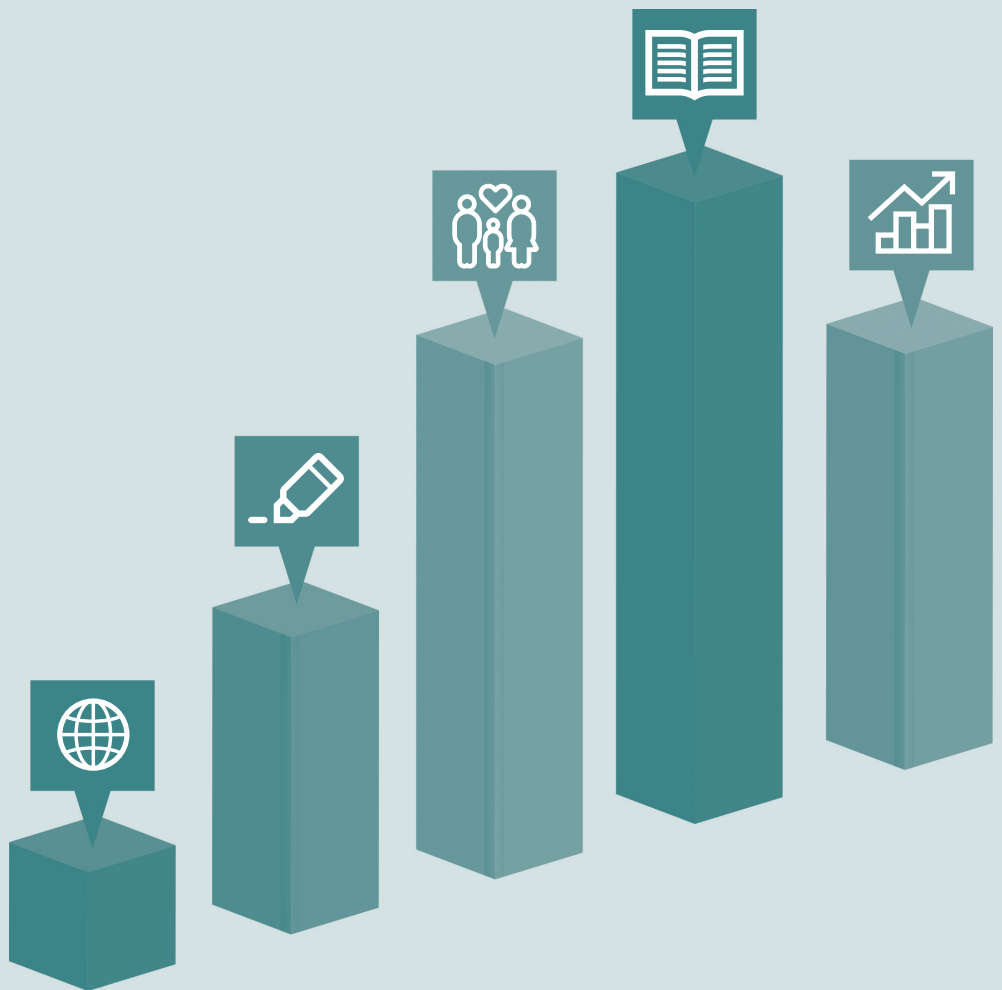
상기 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 매칭금이 미지급 된 미매칭 건수는 총 36,963건으로 나타났으며, 미매칭 금액은 958,368,855원으로 조사됐다.

해당 내역은 가정위탁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한 보호체계아동 전체를 포함하는 수치다. 이중 가정위탁보호아동의 미매칭 건수 및 금액을 세분화하여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자립정착금 배분 시 시설입소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실태로 유추해봤을 때, 매칭금도 시설입소 아동에 먼저 배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적어도 국가에서 보호체계아동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반드시 금액을 보존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보호체계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보다 강화 될 필요성이 있다.

6. 가정위탁 교육 및 홍보 현황

- 1) 교육
- 2) 홍보



6. 가정위탁 교육 및 홍보 현황

1) 교육

〈표 6-1〉 지역센터별 교육 현황

단위: 회, 명, %

구분	계		대리양육위탁부모 교육		친인척위탁부모 교육		일반위탁부모				공무원교육		기타교육	
							예비위탁부모 교육		보수교육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계	1,407	10,834	436	3,441	234	981	101	501	72	715	152	1,809	412	3,387
	100.0	100.0	31.0	31.8	16.6	9.0	7.2	4.6	5.1	6.6	10.8	16.7	29.3	31.3
서울	42	432	5	201	5	69	6	23	4	40	0	0	22	99
	3.0	4.0												
부산	27	504	5	252	3	79	8	38	3	46	2	18	6	71
	1.9	4.6												
대구	32	463	8	77	2	7	4	19	3	39	2	209	13	112
	2.3	4.3												
인천	52	915	7	117	7	36	3	7	2	52	8	180	25	523
	3.7	8.4												
광주	30	396	6	139	6	88	5	17	2	26	5	72	6	54
	2.1	3.6												
대전	45	429	6	86	2	15	5	36	2	16	1	6	29	270
	3.2	4.0												
울산	43	397	11	159	2	32	19	39	4	46	0	0	7	121
	3.1	3.7												
경기	88	1,200	14	237	14	104	5	57	4	74	14	182	37	546
	6.2	11.1												
경기북부	60	343	10	177	10	55	4	15	4	33	0	0	32	63
	4.3	3.2												
강원	231	707	154	325	50	71	6	60	2	49	18	184	1	18
	16.4	6.5												
충북	40	421	10	190	10	51	5	27	2	36	9	85	4	32
	2.8	3.9												
충남	42	313	18	186	15	44	4	27	4	36	1	20	0	0
	3.0	2.9												
전북	53	681	13	253	13	79	2	10	1	25	13	205	11	109
	3.8	6.3												
전남	89	840	22	447	22	71	4	18	10	24	22	266	9	14
	6.3	7.7												
경북	290	1,223	68	296	31	78	12	43	4	31	14	73	161	702
	20.6	11.3												
경남	176	1,126	65	278	37	97	4	19	18	97	22	288	30	347
	12.5	10.4												
제주	67	444	14	21	5	5	5	46	3	45	21	21	19	306
	4.8	4.1												

〈표 6-1〉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실적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위탁유형별 부모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교육은 3,441명, 친인척위탁부모교육은 981명이 참여했으며 2015년에 비해 대리양육위탁부모교육 참여자는 많아졌으나 친인척위탁부모교육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위탁 부모교육은 501명, 보수교육은 715명의 일반위탁부모가 참여했으며, 공무원교육과 기타교육은 각각 1,809명, 3,387명이 참여했다.

다른 교육에 비해 공무원교육과 기타교육이 2015년 대비 눈에 띄게 참여자 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위탁보호 책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기획하고,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16년 제작된 공무원용 2016년 가정위탁 업무 안내서가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책정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커리큘럼을 발굴하여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센터별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실시 횟수가 많은 지역은 경북 290회, 강원 231회, 경남 176회 순이었고, 교육 참여 인원이 많은 지역은 경북 1,223명, 경기 1,200명, 경남 1,126명 순이었다.

2) 홍보

〈표 6-2〉 지역센터별 홍보 현황

단위: 건, 부, 개, 회

구분	계	홍보물					언론매체					인터넷		홍보행사		기타
		리플렛	포스터	전단	소식지	기타 홍보물	방송 (TV)	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생활 정보지	홈페이지 운영	웹진	캠페인	기타 홍보 행사	
계	2,965,053	61,186	1,938	199,050	25,012	195,946	2,306,603	1,410	1,979	22	9,308	4,177	26,373	506	2,859	128,684
중앙	27,992	0	0	0	4,000	13,022	14	93	103	0	0	236	4,579	0	10	5,935
서울	31,442	23,319	6	621	550	3,875	2	93	33	0	205	120	7	55	2	2,554
부산	5,719	1,449	50	100	974	2,107	27	39	538	0	0	229	0	7	199	0
대구	14,127	4,946	144	0	261	4,575	0	0	0	0	1,440	78	0	15	2	2,666
인천	15,400	4,008	816	1,800	14	7,875	311	1	198	0	0	122	0	34	6	215
광주	9,085	2,858	16	0	663	4,290	365	1	445	0	231	174	0	42	0	0
대전	95,342	470	93	0	1,705	2,590	365	12	19	0	13	402	0	6	93	89,574
울산	6,684	892	83	0	1,407	3,680	84	19	6	1	243	157	1	12	98	1
경기	2,594,011	2,000	0	177,718	1,800	81,749	2,304,369	0	73	0	1,901	330	5	45	21	24,000
경기 북부	5,994	550	0	454	1,196	3,167	0	0	0	0	0	488	0	5	0	134
강원	7,747	427	0	0	2,029	2,615	693	994	70	0	804	35	38	24	18	0
충북	8,893	967	4	4,000	2	3,666	1	1	20	2	98	90	10	32	0	0
충남	3,363	1,618	0	0	0	416	0	0	29	0	1,151	111	0	38	0	0
전북	26,881	7,205	1	1,325	257	14,603	0	112	2	0	220	141	552	63	2,400	0
전남	4,554	1,658	0	0	0	2,252	3	3	23	0	278	202	0	29	0	106
경북	11,124	3,806	74	1,696	196	1,365	0	2	7	4	957	157	2,476	8	1	375
경남	56,404	3,751	95	6,842	4,244	37,279	0	35	89	1	1,542	231	5	75	1	2,214
제주	40,291	1,262	556	4,494	5,714	6,820	369	5	324	14	225	874	18,700	16	8	910

〈표 6-2〉는 지역센터별 홍보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홍보 건수는 2,965,053건으로 조사됐으며, 홍보도구 중에서는 방송(TV)이 2,306,60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홍보도구별 실적을 살펴보면 홍보물 483,132건, 언론매체 2,319,322건, 인터넷 30,550건, 홍보행사 3,365건, 기타 128,684건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주요 홍보활동은 언론매체와 홍보물 제작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정위탁지원센터 홍보활동은 2013년 219,818건, 2014년 229,635건, 2015년 2,278,041건, 2016년 2,965,05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항목에 명시된 홍보도구 외에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등의 SNS 활용, 클라우드 펀딩 등의 새로운 홍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1) 상담원의 업무량



7.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1) 상담원의 업무량

■ 지역센터별 지원서비스·교육·홍보 업무량

〈표 7-1〉 지역센터별 지원서비스·교육·홍보 업무량

단위 : 명, 회

구분	종사자 수 (관장 포함)	지원서비스		교육		홍보	
		인원	건수	횟수	인원	대중매체 홍보 등	홍보물
계	157	43,017	379,319	1,407	10,834	466,110	2,470,951
서울	8	3,788	19,315	42	432	28,371	3,071
부산	10	2,657	19,689	27	504	4,680	1,039
대구	10	1,167	10,825	32	463	9,926	4,201
인천	10	2,481	16,099	52	915	14,513	887
광주	9	1,353	23,266	30	396	7,827	1,258
대전	7	1,383	25,212	45	429	4,858	90,484
울산	7	858	41,112	43	397	6,062	622
경기	9	3,913	33,447	88	1,200	263,267	2,330,744
경기북부	9	2,357	11,401	60	343	5,367	627
강원	10	3,538	18,791	231	707	5,071	2,676
충북	10	2,093	21,851	40	421	8,639	254
충남	10	2,155	26,008	42	313	2,034	1,329
전북	10	3,163	27,222	53	681	23,391	3,490
전남	7	3,216	14,314	89	840	3,910	644
경북	10	3,408	20,140	290	1,223	7,137	3,987
경남	11	4,345	41,236	176	1,126	52,211	4,193
제주	10	1,142	9,391	67	444	18,846	21,445

〈표 7-1〉은 각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 수와 지원서비스·교육·홍보의 업무량을 나타낸 것이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총 157명이며, 2015년 153명에서 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업무량을 살펴보면, 상담·후원·학습문화·의료 등의 지원서비스는 43,017명에게 379,319건 제공되었으며, 지역센터별로는 경남이 41,236건, 울산 41,112건, 경기 33,447건 순으로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2016년 실시된 교육은 총 1,407회로 10,834명의 위탁부모, 공무원 등이 참여하였으며, 지역센터별 교육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경북 1,223명, 경기 1,200명, 경남 1,126명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홍보는 총 2,937,061건이 진행됐다.

■ 지역센터별 상담원 1인당 업무량

〈표 7-2〉 지역센터별 상담원 1인당 업무량

단위 : 명, 세대, 회, 건

구분	상담원 수	사례 수		지원서비스		교육		홍보
		위탁아동 수	위탁가정 수	인원	횟수	횟수	인원	
전국 평균	6	131	103	431	3,837	14	109	28,972
서울	5	236	190	758	3,863	8	86	6,288
부산	6	116	98	443	3,282	5	84	953
대구	6	50	40	195	1,804	5	77	2,355
인천	6	109	89	414	2,683	9	153	2,567
광주	6	59	46	226	3,878	5	66	1,514
대전	5	53	40	277	5,042	9	86	19,068
울산	5	57	43	172	8,222	9	79	1,337
경기	6	246	199	652	5,575	15	200	432,335
경기북부	7	113	87	337	1,629	9	49	856
강원	8	154	120	442	2,349	29	88	968
충북	6	99	79	349	3,642	7	70	1,482
충남	6	107	82	359	4,335	7	52	561
전북	6	141	106	527	4,537	9	114	4,480
전남	4	330	257	804	3,579	22	210	1,139
경북	6	161	125	568	3,357	48	204	1,854
경남	7	146	115	621	5,891	25	161	8,058
제주	6	48	40	190	1,565	11	74	6,715

〈표 7-2〉는 각 지역센터별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사례 수와 지원서비스, 교육 및 홍보의 업무량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에 명시된 상담원 수는 관장,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자립지원전담요원, 사무원을 제외한 수로, 2016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상담원은 평균 6명으로 조사됐다.

상담원 1인당 담당하는 위탁아동 수는 131명, 위탁가정 수는 103세대이며, 지원서비스는 431명에게 3,837건 제공, 교육은 14회에 걸쳐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 홍보는 28,972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원 수는 작년과 동일했으며, 상담원 1인당 업무량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서비스 지원 및 홍보에 투입되는 업무량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원 1인당 담당 아동 수는 143명에서 131명으로, 가정 수는 112세대에서 103세대로 감소했으며, 상담·후원·학습·문화·의료 등의 지원서비스 인원은 423명에서 431명으로 횟수는 3,014회에서 3,837회로 증가했고, 교육 횟수는 16회에서 14회로, 인원은 104명에서 109명으로 조사됐으며, 홍보 건수는 21,934건에서 28,972건으로 상승했다.

현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인력구성은 관장, 상담원,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자립지원전담요원, 사무원으로, 상담원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구성원이 사례관리, 지원서비스, 교육, 홍보 등의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이 부담해야 하는 업무가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 조사연구 협조, 종결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자립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서비스와 계획수립 등의 업무도 수

행해야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업무량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에 명시된 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적절한 사례 수가 배정될 수 있는 현실적인 상담원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현재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인력 증원 조항은 상담원에 한정되어 있으나, 2016년 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기간의 연장, 보호연장아동의 증가 등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위탁아동이 늘어나고 있고, 자립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어 자립지원전담요원 인력 증원도 현 시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미 아동양육시설(아동 30명 이상 시설 기준)의 경우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기본 인력 외에 아동 100명 초과 시 1명씩 추가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조항이 가정위탁지원센터에도 적용되어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가정보호를 받는 위탁아동들이 자립에 대한 준비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8. 결론 및 제언

- 1) 위탁아동
- 2) 위탁가정
- 3) 가정위탁 서비스
- 4) 가정위탁 교육 및 홍보
- 5)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량



8. 결론 및 제언

2016년 가정위탁보호 현황분석의 각 항목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아동

전체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2010년부터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에는 총 12,907명으로 조사됐다. 2016년 보호조치 된 아동 수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는 하락하여 보호필요아동의 가정위탁보호조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추이는 대리양육위탁, 친인척위탁, 일반위탁 모든 유형에서 나타난 동일한 현상으로 2016년의 경우 대리양육위탁 2015년 9,141명에서 8,594명으로, 친인척위탁 3,590명에서 3,339명으로, 일반위탁 990명에서 974명으로 줄어들었고, 위탁 유형별 인원비율은 대리양육위탁 66.6%, 친인척위탁 25.9%, 일반위탁 7.5%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탁아동의 성별 비율은 큰 차이 없이 남아가 51.0%, 여아가 49.0%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고, 연령은 17~19세 38.2%, 14~16세 22.5%, 20세 이상 15.7%, 11~13세 11.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5년과 마찬가지로 2016년에도 자립지원 대상인 고등학생 연령의 아동이 3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중학생 연령의 아동 22.5%, 초등학생 연령의 아동이 18.1%의 비율을 나타냈다.

위탁사유는 부모의 이혼으로 위탁된 아동이 3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부모의 별거/가출 26.6%, 부나 모의 사망 24.3% 순이었다. 위탁아동의 형제배치 현황은 위탁 중인 아동 중 형제 없이 혼자 가정위탁보호 의뢰되어 배치된 단독 배치가 52.1%, 형제가 함께 의뢰되어 같은 가정에 배치된 형제배치는 47.1%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형제가 함께 의뢰됐으나 각각 다른 위탁가정에서 양육되는 형제 분리배치는 0.8%로 형제가 함께 의뢰되는 경우 가능한 같은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탁보호결정 시 아동의 연령은 11~13세가 2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8~10세 24.0%, 14~16세 19.8%로, 8세에서 16세까지 고른 연령에서 위탁보호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아동은 위탁보호결정 시 연령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위탁아동은 다른 위탁유형에 비해 취학 전 위탁보호 책정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평균 위탁기간은 5년 6개월이고, 6년 이상 장기간 위탁된 아동이 42.2%, 1년 이상~2년 미만 10.8%, 2년 이상~3년 미만 10.4% 순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위탁유형에서 6년 이상 위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평균 위탁기간도 대리양육위탁아동 5년 5개월, 친인척위탁아동 5년 6개월, 일반위탁아동 6년 1개월로 2015년에 비해 기간이 늘어났다. 특히 일반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보호결정 시 위탁아동의 연령이 대리양육·친인척위탁아동의 연령에 비해 높지 않음에도 6년 이상 장기간 위탁보호 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높아 일반위탁가정 양육지원, 위탁부모의 법적 대리권 부여 등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전체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는 우리나라 보호필요아동의 가정위탁보호조치 되는 비율을 가능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실제로도 2016년 전체적인 조치내용 비율을 보면 가정보호 36.9%, 시설입소 63.1%로 여전히 보호필요아동의 보호조치 시

설립소에 의존하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보호필요아동이 가정위탁보호로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책정률이 낮고, 가정위탁보호 책정의 복잡한 절차 및 책정 즉시 배치 가능한 예비위탁가정의 부족현상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률을 높이고 가정위탁보호 절차 및 지원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중 일반위탁가정 양육지원과 위탁부모의 법적 대리권 부여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으로 해결방안 마련 시 가정위탁보호제도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가정위탁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아동 및 가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비위탁가정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신규위탁아동 현황

신규위탁아동은 2013년(전년대비 15.5% 증가)을 제외하고,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역시 신규위탁아동 수가 1,447명으로 전년대비 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의 경우에는 감소비율이 5.7%에 그친 반면 2016년에는 10.0% 이상의 감소율을 보여 가정위탁보호로 책정되는 아동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센터별 신규위탁아동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 160명, 경기 135명, 강원 13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규위탁아동의 성별 분포는 남아가 726명(50.2%), 여아가 721명(49.8%)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약간 많기는 하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6년 신규위탁된 아동의 연령 분포는 14~16세 25.3%, 17~19세 22.4%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의 아동이 47.7%의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위탁아동의 전체 평균연령은 12세로 일반위탁아동이 7세로 가장 낮은 반면, 대리양육위탁아동 및 친인척위탁아동은 13세로 전체 평균연령보다 높았다.

신규위탁아동의 위탁사유를 살펴보면, 부모의 이혼이 31.2%, 부나 모의 사망이 23.5%, 부모의 별거/가출이 2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이혼, 부나 모의 사망, 별거/가출 등 부모 부재와 가정해체로 인한 사유로 위탁된 아동의 경우 위탁기간도 장기화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6년에도 위탁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가정위탁보호사유를 가진 아동들이 많이 가정위탁보호로 유입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규위탁아동 중 형제없이 혼자 의뢰되어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단독배치가 57.2%, 형제가 함께 의뢰되어 형제가 같은 가정에 배치된 아동은 42.4%, 형제가 함께 의뢰되었으나 형제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가정에 배치된 아동은 0.4%였다. 또한 신규위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사유가 학대방임인 아동 55명의 위탁유형은 대리양육위탁아동이 19명, 친인척위탁아동이 19명, 일반위탁아동이 1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다른 학대를 동반한 중복학대가 20명, 신체학대 16명, 방임 및 유기 14명, 정서학대 4명, 성학대 1명으로 조사됐다.

2016년 신규위탁아동 중 학대방임의 사유로 유입되는 아동비율은 높지 않았으나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학대행위자와 피학대아동의 분리보호 판결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학대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아동을 가정 내 보호로 유입하기 위한 체계 마련과 함께 학대피해아동과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보호연장아동 현황

보호연장아동 현황은 2015년부터 별도로 분석되기 시작했으며, 2016년 전체 보호연장아동 수는 2,041명으로 전년 1,873명에 비해 9.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보호연장아동 수는 강원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16명, 서울이

206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연장아동 위탁유형비율은 대리양육위탁아동 65.8%, 친인척위탁아동 30.9%, 일반위탁아동 3.3%로, 전체 가정위탁보호 아동비율인 대리양육위탁아동 66.6%, 친인척위탁아동 25.9%, 일반위탁아동 7.5%와는 차이를 보였다.

보호연장아동의 성별은 여아가 1,271명(62.3%), 남아가 770명(37.7%)으로 성별에 따른 큰 격차를 보였다. 연령별 보호연장아동 비율은 20세가 45.3%로 가장 많았으며, 21세 28.0%, 22세 14.0%, 23세 이상 8.1% 순이었다. 보호연장사유로는 대학진학이 1,767명(8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보호연장아동 대부분이 대학진학 사유로 보호연장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호연장아동 중 2016년 신규로 보호연장이 결정된 아동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보호연장아동의 위탁기간(위탁기간과 보호연장기간 모두 포함)은 6년 이상~10년 미만 38.0%, 10년 이상 24.7%, 3년 이상~6년 미만 22.6%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는 대리양육 및 친인척보호연장아동의 위탁기간은 6년 이상~10년 미만이 각각 40.4%, 34.5%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보호연장아동의 위탁기간은 10년 이상이 47.2%로 가장 많았다.

2016년에는 대학진학, 취업준비, 직업훈련, 교육이 신규보호연장아동의 주 보호연장사유로 나타났으며 보호연장기간 동안 아동의 자립지원과 더불어 보호종료 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자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위탁종결아동 현황

2016년 종결아동 수는 2,213명으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 종결아동 비율은 대리양육위탁아동이 63.9%, 친인척위탁아동이 30.0%, 일반위탁아동이 6.1%로 2015년 대비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아동 비율은 높아지고 일반위탁아동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종결아동 중 남아가 1,267명(57.3%), 여아가 946명(42.7%)으로 남아의 종결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종결아동 중 20세 이상이 70.9%로 거의 대부분의 위탁아동들이 20세 이상 연령에서 가정위탁보호를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종결아동 연령의 상승은 보호연장 도입 후 해당 혜택을 누리는 위탁아동이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전체 종결아동 중 보호연장종결로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37.3%로 가장 많아 종결아동의 평균연령이 19세로 나타난 것과 연관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2015년에는 만 18세 이상으로 종결이 가장 높고 보호연장종결이 두 번째로 높은 사유였으나, 2016년에는 위탁아동의 연령 상승과 동반하여 종결사유도 뒤바뀌는 결과를 보였다.

위탁종결아동의 평균 위탁기간은 6년 5개월로 2015년 6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위탁아동은 6년 7개월, 친인척위탁아동은 6년 4개월로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아동은 6년 이상 위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위탁아동의 경우는 평균 5년 4개월로 조사됐으나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아동 위탁기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위탁아동의 종결 후 배치는 기타가 19.1%, 취업 18.3%, 자립준비 17.0%, 친가정 복귀가 16.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는 대리양육위탁아동 기타 19.5%, 친인척위탁아동 취업 20.0%, 일반위탁아동 친가정 복귀 38.8%가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위탁종결이 20세 이상의 연령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동의 자립지원 및 자원을 확보하여 종결 후에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지지기반 마련이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위탁아동이 친가정으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종결 이후 위탁부모의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위탁가정

2016년 위탁가정 세대는 총 10,183세대이며, 전년대비 4.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위탁아동의 감소에 따라 위탁가정의 수도 동반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위탁가정 유형별 가정 수는 2004년부터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위탁가정 순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위탁가정의 92.3%가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가정이고 일반위탁가정은 7.7%에 불과하다.

지역센터별 위탁가정 세대 수가 많은 곳은 경기도가 1,195세대, 전남 1,026세대, 강원 960세대, 서울 952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경우는 1,000세대가 넘는 곳이 경기, 전남, 강원, 서울 총 4곳이었으나 2016년에는 경기와 전남 2곳만 1,000세대 이상이었다.

위탁가정의 부모 중 주 양육자 한 명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70~79세 3,102명(30.5%), 60~69세 2,517명(24.7%), 50~59세 1,826명(17.9%), 80세 이상 1,285명(12.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위탁부모가 전체의 6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부모의 직업은 주민센터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하기 위해 방문한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업이 파악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타를 제외하고 위탁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의 경우 무직이 32.5%로 가장 높았으며, 농·어·임·축산업 5.5%, 단순노무직과 전업주부가 각각 3.5%였다. 친인척위탁부모는 전업주부 9.8%, 무직 8.9%, 사무직 5.1%, 자영업 4.4%, 서비스직 4.3%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위탁부모는 전업주부가 33.4%로 가장 높았고, 종교인 14.7%, 자영업 8.0%, 전문직 7.7% 순이었다.

위탁부모의 학력이 파악된 인원 중 고등학교 졸업이 15.1%로 가장 높았으며, 무학 14.4%, 초등학교 졸업 9.3%, 중학교 졸업 5.9%로 그 뒤를 이었다. 친인척위탁가정 부모의 대학교 졸업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반위탁부모는 다른 유형의 위탁부모에 비해 학력이 높았다. 위탁가정의 소득은 파악되지 않는 세대(6.5%)를 제외하고, 50만원 미만인 63.5%로 가장 높았으며, 50~100만원 미만인 10.8%, 100~150만원 미만 6.9%로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위탁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대리양육위탁가정 순으로 소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가정의 종교는 파악되지 않은 3,637세대(35.7%)를 제외하고 무교가 33.4%로 가장 높았고, 기타종교 15.5%, 기독교 9.6%, 불교 4.3%, 가톨릭 1.5%였다. 위탁가정 참여 동기는 최초 동기를 기준으로 조사됐으며,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가정은 당위적으로 혈연관계가 각각 92.1%, 92.2%로 나타났고, 일반위탁가정은 사회적 이타심 실현이 50.8%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 이념실천(21.0%)이었다. 그 다음은 기타(19.8%)였다.

위탁가정의 종결사유는 88.3%가 위탁아동종결로, 위탁아동이 종결되어 자연적으로 위탁가정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차이 없이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위탁가정 모두 위탁아동종결이 각각 87.9%, 89.2%, 88.1%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 신규위탁가정

신규위탁가정은 2016년 총 1,124세대이며 대리양육위탁가정이 739세대(65.7%)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위탁가정 284세대(25.3%), 일반위탁가정 101세대(9.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규위탁가정의 수는 충북이 127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108세대, 경기 103세대 순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16년 지역센터별 신규위탁아동과도 거의 일치하는데 신규위탁아동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 160명, 경기 135명, 강원 134명 순이었다.

신규위탁부모 연령은 대리양육위탁가정의 경우 고령(60세 이상)의 위탁부모가 많은 반면, 친인척위탁부모 및 일반위탁부모는 40~59세가 각각 57.1%, 81.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위탁부모의 직업은 파악되지 않는 인원(21.9%)을 제외하고, 무직이 26.6%로 가장 높았고 전업주부 11.7%, 기타 9.9%, 농·어·임·축산업 7.4%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위탁부모의 학력은 대리양육위탁부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16.4%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졸업 14.3%, 무학 14.1% 순이었다. 2015년의 경우 무학이 가장 높았던 대에 반해 대리양육위탁부모의 학력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친인척위탁부모는 고등학교 졸업이 35.9%로 가장 높았고, 일반위탁부모의 경우 대학교 이상이 5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고등학교 졸업 31.6%, 대학원 이상 10.9%로 나타났다.

신규위탁가정 1,124세대 중 소득이 파악되지 않은 가정은 179세대였으며, 150만원 미만인 가정이 731세대,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91세대였다. 신규위탁가정의 종교분포는 대리양육위탁가정 및 친인척위탁가정이 무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기독교가 52세대(51.5%)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며, 무교 25세대(24.8%), 불교 10세대(9.9%), 가톨릭과 기타종교 각각 7세대(6.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규위탁가정 중 87.6%가 혈연관계로 인해 가정위탁보호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위탁가정의 참여 동기를 살펴보면, 사회적 이타심 실현이 61세대(60.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종교적 이념실천이 20세대(19.8%), 기타가 12세대(11.9%)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위탁가정은 유형별로 뚜렷한 구분이 나타나는데 대리양육위탁부모는 연령이 높고, 학력 및 소득수준이 낮았으며, 일반위탁가정은 전체적으로 학력과 소득수준이 다른 위탁가정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위탁가정 현황과 관련하여 각 유형별 위탁가정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 12월에 개최된 제11회 가정위탁 세미나에서는 위탁가정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패널로 참여한 위탁부모들은 '전문가정위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위탁가정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전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아동 양육에 대한 전문적 기술 습득, 위탁부모 자조모임 활성화, 가족여행 기회 제공 등의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위탁가정 내 개인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위탁아동을 맡길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해당 내용은 일반위탁가정 중심의 요구사항이나 혈연관계로 인해 가정위탁보호에 참여 중인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역시 전문적인 양육기술 및 상담, 위탁아동 초기 정착지원 등 유사한 내용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양육의무를 위탁가정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가정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은 당연하며, 실질적인 혜택제공 및 대책마련을 통해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3) 가정위탁 서비스

■ 지원서비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아동, 위탁부모, 친부모 등에게 상담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한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를 제공한 전체 인원과 건수는 각각 43,017명, 379,319건으로 2015년 40,963명, 292,505건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 대상 인원은 5.0% 증가한 반면 서비스 건수는 29.7% 증가하여 1인당 제공되는 서비스 건수가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별 서비스제공 건수는 위탁아동 167,499건(44.2%), 대리양육위탁부모 89,725건(23.6%), 기타 44,608건(11.8%), 일반위탁부모 39,850건(10.5%)의 순으로, 위탁아동에게 가장 많은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부모의 유형별 서비스제공 건수가 대리양육위탁부모, 일반위탁부모, 친인척위탁부모 순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위탁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리양육위탁부모에게 가장 많은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인원 대비 서비스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위탁부모에 대한 서비스제공 비율이 타 유형의 위탁부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친가정에 대해서도 703명에게 8,414건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친가정과 위탁아동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위탁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센터 차원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제적 서비스

국가는 위탁아동양육을 위해 양육보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에는 2015년과 2016년 신규위탁 된 아동의 생계비 지원 비율 비교표를 삽입했다.

2016년도 신규위탁아동의 92.3%인 1,335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89.1%에 비해 다소 향상된 수치였으나 신규아동 100.0%가 생계비를 지원받는 지역은 3곳에서 1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센터별 생계비 지원 비율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는 35.5%p로 나타나 위탁아동 생계비 지원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유는 아동의 부모사망 후 유족연금이나 보험금 등의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거나, 양육을 거부하고 연락 두절된 친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연락 두절된 친부모의 재산은 위탁아동 양육비로 사용될 수 없어 위탁가정의 양육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탁아동의 생계비 지원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반주택의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2016년에는 총 130세대가 지원받았으며, 2015년 167세대에 비해 지원받은 가정이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가정이 적어진 이유는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이 감소했고 신청자 수 역시 적었기 때문으로 신청한 가정의 경우는 100.0% 지원되었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밝혔다. 지역별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36세대, 서울 26세대, 부산 15세대, 충남 11세대 순으로 조사됐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조치 된 아동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3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아동의 적립금과 1:1로 매칭하여 추가 적립해 줌으로써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기초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6년 월 평균 저축률은 모든 지역이 90%를 넘었고 평균 95.2%의 저축률을 나타냈다.

전체적인 가정위탁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서비스의 양은 증가되었으며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 역시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이 2015년 신규위탁아동 89.1%에서 2016년 92.3%으로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모든 위탁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탁아동 양육을 위해 위탁가정에 지급하고 있는 양육보조금은 2016년부터 150,000원으로 상향되었으나,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지자체의 예산상황에 따라 지급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통일성을 갖춘 예산 대책 및 지급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디딤씨앗통장 뿐만 아니라 보호필요아동이 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퇴소 이후 자립하는데 필요한 정착금을 제공하는 자립정착금과 관련하여 자립지원이 2005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지급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마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필요아동이 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데 필요한 정착금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 금액의 범위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별 차등적인 지원으로 아동 차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가정위탁 교육 및 홍보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교육은 3,441명, 친인척위탁부모교육은 981명이 참여했으며 2015년에 비해 대리양육위탁부모교육 참여자는 많아졌으나 친인척위탁부모교육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위탁부모교육은 501명, 보수교육은 715명의 일반위탁부모가 참여했으며, 공무원교육과 기타교육은 각각 1,809명, 3,387명이 참여했다.

홍보실적은 홍보물 483,132건, 언론매체 2,319,322건, 인터넷 30,550건, 홍보행사 3,365건, 기타 128,684건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주요 홍보활동은 언론매체와 홍보물 제작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정위탁지원센터 홍보활동은 2013년 219,818건, 2014년 229,635건, 2015년 2,278,041건, 2016년 2,965,05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항목에 명시된 홍보도구 외에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등의 SNS 활용, 크라우드 펀딩 등의 새로운 홍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교육과 기타교육이 2015년 대비 눈에 띄게 참여자 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위탁보호 책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기획하고,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16년 제작된 공무원용 2016년 가정위탁 업무 안내서가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책정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어 앞으로도 공무원교육에 다양한 콘텐츠와 커리큘럼을 발굴하여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량

전국 17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총 157명이며, 2015년 153명에서 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 수는 평균 6명으로, 상담원 1인당 담당하는 위탁아동 수는 131명, 위탁가정 수는 103세대이며, 지원서비스는 431명에게 3,837건 제공, 교육은 14회에 걸쳐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 홍보는 28,972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원 수는 작년과 동일했으며, 상담원 1인당 업무량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서비스 지원 및 홍보에 투입되는 업무량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원 1인당 담당 아동 수는 143명에서 131명으로, 가정 수는 112세대에서 103세대로 감소했으며, 상담·후원·학습·문화·의료 등의 지원서비스 인원은 423명에서 431명으로 횡수는 3,014회에서 3,837회로 증가했고, 교육 횡수는 16회에서 14회로, 인원은 104명에서 109명으로 조사됐으며, 홍보 건수는 21,934건에서 28,972건으로 상승했다.

현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인력구성은 관장, 상담원,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자립지원전담요원, 사무원으로, 상담원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구성원이 사례관리, 지원서비스, 교육, 홍보 등의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이 부담해야 하는 업무가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 조사연구 협조, 종결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자립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서비스와 계획수립 등의 업무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업무량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에 명시된 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적절한 사례 수가 배정될 수 있는 현실적인 상담원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추가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 상담원들의 업무량 과다, 서비스 부족, 지역별 편차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보호필요아동 가정 내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증대와 함께 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센터 기능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자 과제로 이러한 역할을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선행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아동복지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대표전화 1577-1406(아이사랑양육)

기관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운영법인
강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후석로379번길 27 2층	전화 : 033-255-1406 팩스 : 033-257-1407	www.foster-gangwon.or.kr	춘천YMCA
경기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4번길 9 7층	전화 : 031-234-3979 팩스 : 031-234-2353	www.gg-foster.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 북부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635 3층	전화 : 031-821-9117 팩스 : 031-840-2828	www.kgfoster.or.kr	(사)한국수양부모협회
경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 5층	전화 : 055-237-1226 팩스 : 055-237-9399	www.knfoster.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북 경산시 경산로 139 2층	전화 : 053-813-3953 팩스 : 053-812-3953	www.gbfooster.or.kr	(사)한국수양부모협회
광주	가정위탁 지원센터	광주시 북구 우치로311번길 15	전화 : 062-351-1206 팩스 : 062-351-2206	www.gjw.or.kr/foste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	가정위탁 지원센터	대구시 동구 아양로 291 3층	전화 : 053-656-2510 팩스 : 053-626-2510	dgfc.sc.or.kr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대전	가정위탁 지원센터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804호	전화 : 042-242-5240 팩스 : 042-242-5280	www.djfooster.or.kr	(사)한국수양부모협회
부산	가정위탁 지원센터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685 9층	전화 : 051-758-8801 팩스 : 051-752-8810	www.busan.sc.or.kr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서울	가정위탁 지원센터	서울시 양천구 화곡로 47 4층	전화 : 02-325-9080 팩스 : 02-325-2664	www.seoul-foster.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	가정위탁 지원센터	울산시 남구 중앙로 216 4층	전화 : 052-286-1548 팩스 : 052-286-4675	ulsan.goodneighbors.kr	굿네이버스
인천	가정위탁 지원센터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294번길 4 8층	전화 : 032-866-1226 팩스 : 032-504-1226	www.icfooster.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전남 목포시 해양대로 28	전화 : 061-279-1225 팩스 : 061-245-1524	www.jnfooster.org	공생복지재단
전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2 6층	전화 : 063-288-7770 팩스 : 063-288-7780	jbfc.sc.or.kr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제주	가정위탁 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22 3층	전화 : 064-747-3273 팩스 : 064-747-3272	www.jeju-foster.or.kr	(사)제주상담센터
충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0길 8 4층	전화 : 041-577-1226 팩스 : 041-578-7175	www.fosterservice.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66 404호	전화 : 043-250-1226 팩스 : 043-238-7757	cbfc.sc.or.kr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중앙	가정위탁 지원센터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19 2층	전화 : 02-796-1406 팩스 : 02-790-7266	www.fostercare.or.kr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2016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발행일	2017년 7월
발행인	정필현
발행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19 2층
연락처	TEL. 02-796-1406
	FAX. 02-790-7266

2016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www.fostercare.or.kr